제42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Ⅰ. 결산 개요 ····· 1

1. 세입·세출 결산 ····· 1

2. 총수입·총지출 결산 ····· 3

(1) 일반회계 ····· 3

가. 총수입 ····· 3

나. 총지출 ····· 4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

가. 총수입 ····· 10

나. 총지출 ····· 11

3. 예비비 지출 ····· 15

4. 재무결산 ····· 15

가. 재정상태 분석 ····· 15

나. 재정운영 분석 ····· 17

다. 순자산변동 분석 ····· 18

5. 성인지 결산 ····· 20

6.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 21

7. 지방교부세 결산 ····· 22

Ⅱ. 검토의견 ····· 28

【총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분석】 ····· 28

1. 개념의 구분 ····· 28

2. 2024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 31

3. 2024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분석 ····· 57

(1) 연례적 이·전용등 실시 ····· 57

(2) 연초 이·전용등 실시 ····· 64

(3) 이·전용등 번복 실시 ····· 66

【세 출】 ····· 71

【기획조정실】 ····· 71

1.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7033-301) ····· 71

가. 개 요 ····· 71

나. 시의성 있는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관리 필요 ····· 72

2. 행정안전부 정보화(정보화)(7031-500) ····· 76

가. 개 요 ····· 76

나. 예산확정 전 용역계역 체결 지양 필요 ····· 77

【의정관실】 ····· 82

3. 국경일 등 정부행사(2131-300) ····· 82

가. 개 요 ····· 82

나. 국빈방한 환영식 등 정부의전행사의 예산집행률 제고 필요 ···· 83

【디지털정부혁신실】 ····· 85

4.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2036-507) ····· 85

가. 개 요 ····· 85

나. 연례적 실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단계별 소요기간에 맞춰 사업기간의 변경 필요 ····· 87

다. 「국가재정법」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방식 시정 필요 ····· 91

5.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 ODA)(2038-501) ····· 94

가. 개 요 ····· 94

나.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파견관의 주택임차료, 선발기준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 96

다. 내역사업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기반조성'의 일회성 과제 추진 지양 필요 ····· 105

6.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1933-307) ····· 110

가. 개 요 ····· 110

나. 빈번한 세목조정을 통해 자의적 예산집행 지양 필요 ····· 112

7.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047-500),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2031-504) ····· 116

가. 개 요 ····· 116

나. '정부24' 및 '국민비서'의 알림 발송 예산 중복편성 ····· 119

다. 개별기관의 대국민 알림서비스와 연계 시 중복 알림 방지 및 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125

8.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2031-504) ····· 128

가. 개 요 ····· 128

나. 정보화예산안 편성 시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할 필요 ····· 130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2046-502) ···· 134
가. 개 요 ····· 134
나. 다음연도 이월 과다 해소 및 조기집행 필요 ····· 136
다. 전자정부법상 전문기관 제도 활용 방안 강구 및 '국가중점데이터사업'과 통합 필요 등 ····· 139
10.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047-500) ····· 147
가. 개 요 ····· 147
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149
【지방행정국】 ····· 155
11. 지자체경쟁력지원(1139-307) ····· 155
가. 개 요 ····· 155
나. 법정 개최 기준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적극 운영 필요 ···· 156
【자치분권국】 ····· 160
12.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1131-315) ····· 160
가. 개 요 ····· 160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161
13. 지방시대위원회 운영(1132-302) ····· 168
가. 개 요 ····· 168
나. 효율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집행 관리 강화 필요 169
14.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1132-300) ····· 175
가. 개 요 ····· 175

나. 국가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경우 사무 지원경비 분담기준 마련 필요 ····· 176

15.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1131-300) ····· 188

가. 개 요 ····· 188

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의 반복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189

【균형발전지원국】 ····· 198

16.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1237-501) ····· 198

가. 개 요 ····· 198

나. 국비-지방비 비율을 고려한 사업 정산 필요 ····· 199

17. 접경권발전지원(1232-300) ····· 202

가. 개 요 ····· 202

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사업 실집행 저조 ····· 203

18.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1938-301) ····· 208

가. 개 요 ····· 208

나. 빈집정비등 경관개선사업 : 체계적인 사전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집행 필요 ····· 209

19.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1131-316) ····· 216

나.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홍보영상 제작 대행비용 지급 주의 필요 ···· 217

다. 홍보비용 전액 일반수용비 편성 관행 개선 필요 ····· 219

【지방재정경제실】 ····· 221

20. 지방세정보화 추진(1333-500) ····· 221

가. 개 요 ····· 221

나. 대국민 전산시스템 도입시 사전 테스트 절차의 강화 필요 ‥223
2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1336-301) ····· 229
가. 개 요 ····· 229
나. 경영진단 불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231
다. 경영개선명령 이행점검 횟수 확대 필요 ····· 233
22.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 236
가. 개 요 ····· 236
나. 착한가격업소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요와 추가경정예산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집행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 237
【정부청사관리본부】 ····· 246
23.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2231-301) ····· 246
가. 개 요 ····· 246
나. 편의시설 정비 : 낙찰차액을 활용한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신규사업 실시 ····· 247
24.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2231-302) ····· 251
가. 개 요 ····· 251
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충족을 위한 노력 필요 ····· 252
25.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2213-303) ····· 257
가. 개 요 ····· 257
나. 사업관리 미흡으로 인한 연례적 사업 지연 ····· 25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266
26. 인건비(2501-108) ····· 266
가. 개 요 ····· 266

나. 연례적 법의관 정원 미달 해결방안 마련 필요 ····· 267
27.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2531-304) ····· 278
가. 개 요 ····· 278
나. 「집행지침」 및 내부 감사 결과에 부합하는 비목 편성 필요 279
【안전예방정책실】 ····· 284
28. 재난안전산업활성화(2631-303) ····· 284
가. 개 요 ····· 284
나. 사업 추진 일정 재검토를 통한 연례적 이월 방지 필요 ····· 285
다.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 공개 확대 및 환류체계 마련 필요 ····· 289
29. 지역안전개선 컨설팅(2632-303) ····· 291
가. 개 요 ····· 291
나.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292
30.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2731-304) ····· 295
가. 개 요 ····· 295
나. 반복적 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 구조 개편 필요 ····· 296
【자연재난실】 ····· 299
31.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2731-307) ····· 299
가. 개 요 ····· 299
나. 사업 수요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 300
32.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2635-301) ····· 305
가. 개 요 ····· 305

나.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집행부진 개선 필요 ····· 306

【재난복구지원국】 ····· 310

33. 풍수해보험(2734-302) ····· 310

가. 개 요 ····· 310

나. 사업 집행 환경을 고려한 정책수단 재검토 필요 ····· 311

【비상대비정책국】 ····· 317

34.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317

가. 개 요 ····· 317

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집행 지연 요소 최소화 노력 필요 ····· 31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322

35. 재난안전교육원운영(2633-300) ····· 322

가. 개 요 ····· 322

나. 반복적인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한 집행방식 개선 필요 ····· 323

【과거사업무관련지원단】 ····· 326

36.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 326

가. 개 요 ····· 326

나.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327

37. 제주4·3 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 331

가. 개 요 ····· 331

나. 보상금 지급속도 제고 및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연례적인 집행부진 방지 필요 ····· 332

3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2434-300) ····· 336

가. 개 요 ····· 336

나. 면밀한 추계를 통한 불필요한 이·전용 방지 필요 ····· 337

39.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2437-300) ····· 340

가. 개 요 ····· 340

나. 위원회 접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 및 부적절한 국외출장 자제 필요 ····· 341

Ⅰ.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기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없음.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3,068억 1,100만원이나 3,150억 1,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813억 7,700만원이 수납(수납률 89.3%)되었고 336억 4,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954억 1,000만원이나 1,283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107억 7,700만원이 수납(수납률 86.3%)되었고 175억 9,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13억 4,100만원이나 933억 2,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53억원이 수납(수납률 91.4%)되었고 80억 2,3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입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295,470	128,372	110,777	17,595	0	8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41	93,322	85,300	8,023	0	91.4
지역자율계정	1,861	17,801	17,771	31	0	99.8
지역지원계정	9,480	75,467	67,475	7,992	0	89.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54	54	0	0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합 계	306,811	315,016	281,377	33,641	0	89.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72조 4,473억 5,600만원, 예산현액은 72조 4,790억 2,600만원이며, 이 중 70조 1,903억 9,900만원이 지출(집행률 96.8%)되었고 261억 9,800만원이 이월, 2조 2,624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69조 7,588억 1,800만원, 예산현액은 69조 7,903억 3,600만원이며, 이 중 67조 5,059억 5,300만원이 지출(집행률 96.7%)되었고 259억 7,100만원이 이월, 2조 2,584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조 6,885억 3,800만원, 예산현액은 2조 6,886억 9,000만원이며, 이 중 2조 6,844억 4,6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2억 2,700만원이 이월, 40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출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69,758,818	69,790,336	67,505,953	25,971	2,258,412	96.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88,538	2,688,690	2,684,446	227	4,017	99.8
지역자율계정	216,684	216,684	216,684	0	0	100.0
지역지원계정	2,453,891	2,454,043	2,449,799	227	4,017	99.8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030	11,030	11,030	0	0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933	6,933	6,933	0	0	100.0
합 계	72,447,356	72,479,026	70,190,399	26,198	2,262,429	96.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총수입·총지출 결산

(1) 일반회계

가. 총수입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2,954억 7,000만원이나 1,283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107억 7,700만원이 수납(수납률 86.3%)되었고 175억 9,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관/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재산수입(11)	18,448	16,521	14,816	1,704	-	89.7
관유물대여료(51)	3,362	4,656	4,057	598	-	87.1
토지대여료(511)	424	116	84	31	-	72.4
건물대여료(512)	2,938	4,540	3,973	567	-	87.5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15,086	11,865	10,759	1,106	-	90.7
기타재산이자수입(546)	15,086	11,862	10,756	1,106	-	90.7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7)	-	3	3	-	-	100.0
경상이전수입(12)	268,038	101,153	85,681	15,473	-	84.7
벌금,몰수금및과태료(56)	-	1,206	82	1,124	-	6.8
몰수금및추징금(562)	-	48	-	48	-	0.0
징계부과금(564)	-	51	-	50	-	0.0
과징금(565)	-	1,107	82	1,026	-	7.4
변상금및위약금(57)		2,589	1,473	1,116	-	56.9
변상금(571)	-	8	-	8	-	0.0
위약금(572)	917	2,581	1,473	1,108	-	57.1
가산금(58)	-	4	1	3	-	25.0
가산금(581)	-	4	1	3	-	25.0
기타경상이전수입(59)	267,121	97,354	84,125	13,230	-	86.4
기타경상이전수입(596)	267,121	97,354	84,125	13,230	-	86.4
재화및용역판매수입(13)	994	1,712	1,294	418	-	75.6
면허료및수수료(65)	37	41	40	1	-	97.6
면허료및수수료(651)	37	41	40	1	-	97.6

(단위: 백만원, %)

관/항/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잡수입(69)	957	1,671	1,254	417	-	75.0
기타잡수입(691)	957	1,671	1,254	417	-	75.0
수입대체경비수입(14)	7,990	8,985	8,985	-	-	100.0
잡수입(69)	7,990	8,985	8,985	-	-	100.0
기타잡수입(691)	7,990	8,985	8,985	-	-	100.0
관유물매각대(15)	-	1	1	-	-	100.0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73)	-	1	1	-	-	100.0
유동자산매각대(732)	-	1	1	-	-	100.0
합 계	295,470	128,372	110,777	17,595	-	86.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지출

① 총 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69조 7,588억 1,800만원, 예산현액은 69조 7,903억 3,600만원이며, 이 중 67조 5,059억 5,700만원이 지출(집행률 96.7%)되었고 259억 7,100만원이 이월, 2조 2,584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일반·지방행정	68,738,252	68,718,362	66,438,812	25,290	2,254,260	96.7%
일반행정	995,040	969,978	950,460	10,068	9,450	98.0%
기록물관리	44,225	44,242	43,156	109	977	97.5%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317,549	295,984	294,670	241	1,074	99.6%
정부의전	14,075	13,758	12,956	97	705	94.2%
청사관리	235,910	236,621	227,052	7,504	2,065	96.0%
행정안전행정지원	383,281	379,372	372,626	2,118	4,629	98.2%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정부자원관리	752,785	758,256	738,319	14,944	4,993	97.4%
인사관리	167	167	164	0	3	98.4%
전자정부	732,630	736,939	717,487	14,944	4,508	97.4%
정부혁신조직	19,988	21,150	20,668	0	482	97.7%
지방행정·재정지원	66,990,427	66,990,129	64,750,033	278	2,239,817	96.7%
이북5도	1,900	2,134	1,955	0	179	91.6%
지방교부세	66,759,324	66,759,324	64,522,994	0	2,236,330	96.7%
지방자치분권	41,987	41,237	39,431	278	1,528	95.6%
지방자치인재개발	14,224	15,000	14,533	0	467	96.9%
지방재정경제	26,909	26,751	25,465	0	1,286	95.2%
지역발전	146,083	145,683	145,655	0	28	100.0%
공공질서및안전	1,020,566	1,071,973	1,067,141	681	4,152	99.5%
경찰	66,326	66,353	65,486	0	867	98.7%
과학수사	66,326	66,353	65,486	0	867	98.7%
재난관리	954,240	1,005,620	1,001,654	681	3,285	99.6%
안전관리	46,921	42,900	41,122	387	1,390	95.9%
재난관리	674,727	728,153	727,640	0	513	99.9%
재난안전기술개발	85,613	85,613	84,607	0	1,006	98.8%
재난안전정보화	146,979	148,954	148,285	293	377	99.6%
사회복지	-	-	-	-	-	-
취약계층지원	-	-	-	-	-	-
일자리지원	-	-	-	-	-	-
합 계	69,758,818	69,790,336	67,505,953	25,971	2,258,412	96.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이월·불용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월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불우소외계층격려’ 사업은 예산현액 19억 5,400만원 중 19억 800만원(이월률 97.7%)을 이월하였고[1],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7,700만원 중 3,800만원(이월률 49.2%)을 이월하였으며[2],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사업은 예산현액 200억 3,400만원 중 74억 5,200만원(이월률 37.2%)을 이월하였고[3],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억 5,000만원 중 1억 3,900만원(이월률 30.9%)을 이월하였으며[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245억 8,300만원 중 55억 9,300만원(이월률 22.8%)을 이월하였음[5].

---

1) 사업계획 변경(지급명의 변경)에 따른 계약연장(’24.12월말 → ‘25.1월말)
2) 무기계약직 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집행잔액 이월
3) 폭염, 기초보강 작업 등 공사기간 추가 소요 및 준공 미도래로 잔여액 이월
4)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격려 물품 준비기간 추가 확보 필요에 따른 이월
5) 전산환경 구축 및 이전 사업단계 지연으로 인한 이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사업 중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불우소외계층격려	1,954	1,954	45	1,908	1	97.7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총액)	77	77	39	38	0	49.2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17,644	20,034	12,556	7,452	26	37.2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 종사자지원	450	450	309	139	2	30.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25,150	24,583	18,982	5,593	8	22.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을 전액(불용률 100.0%)을 불용하였고[6],

‘의정관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2,900만원 중 1,200만원(불용률 42.2%)을 불용하였으며[7],

‘재난협력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1억 9,100만원 중 8,000만원(불용률 42.0%)을 불용하였고[8],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 4,100만원 중 8,200만원(불용률 33.8%)을 불용하였으며[9],

6) 예산편성 근거법령 미비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결여를 사유로 기재부에서 예산 미배정
7)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8) 사회재난 중대본 근무자 대상 특근매식비 불용 등

‘인사기획관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1,700만원 중 500만원(불용률 28.6%)을 불용하였음[10].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불용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200	200	0	0	200	100.0
의정관실(총액)	29	29	17	0	12	42.2
재난협력실(총액)	189	191	111	0	80	42.0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94	241	159	0	82	33.8
인사기획관실(총액)	17	17	12	0	5	28.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을 전액(미집행률 100.0%)을 미집행하였고,

‘불우소외계층격려’ 사업은 예산현액 19억 5,400만원 중 19억 900만원(미집행률 97.7%)을 미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7,700만원 중 3,800만원(미집행률 49.5%)을 미집행하였고,

9) 위원회 출범 지연에 따른 위원수당 등 위원회 경비(34백만원) 미지출, 민원실 위치 변경(을지로→광화문)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차비 절감

10)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의정관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2,900만원 중 1,200만원(미집행률 42.2%)을 미집행하였으며,

‘재난협력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1억 9,100만원 중 8,000만원(미집행률 42.0%)을 미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200	200	0	0	200	200	100.0
불우소외계층격려	1,954	1,954	45	1,908	1	1909	97.7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77	77	39	38	0	38	49.5
의정관실(총액)	29	29	17	0	12	12	42.2
재난협력실(총액)	189	191	111	0	80	80	42.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총수입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113억 4,100만원이나 933억 2,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53억원이 수납(수납률 91.4%)되었고 80억 2,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계정/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지역자율계정	1,861	17,801	17,771	31	-	99.8
재산수입(11)	28	851	850	2	-	99.9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28	851	850	2	-	99.9
기타재산이자수입(546)	28	851	850	2	-	99.9
경상이전수입(12)	1,833	16,950	16,921	29	-	99.8
벌금,몰수금및과태료(56)	-	49	49	-	-	100.0
과징금(565)	-	49	49	-	-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1,833	16,901	16,871	29	-	99.8
기타경상이전수입(596)	1,833	16,901	16,871	29	-	99.8
지역지원계정	9,480	75,467	67,475	7,991	-	89.4
재산수입(11)	970	3,045	2,753	292	-	90.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970	3,045	2,753	292	-	90.4
기타재산이자수입(546)	970	3,045	2,753	292	-	90.4
경상이전수입(12)	8,510	72,422	64,722	7,699	-	89.4
벌금,몰수금및과태료(56)	-	240	-	240	-	0.0
과징금(565)	-	240	-	240	-	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8,510	72,422	64,722	7,699	-	89.7
기타경상이전수입(596)	8,510	72,422	64,722	7,699	-	89.7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54	54	-	-	100.0
재산수입(11)	-	5	5	-	-	10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	5	5	-	-	100.0
기타재산이자수입(546)	-	5	5	-	-	100.0
경상이전수입(12)	-	49	49	-	-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59)	-	49	49	-	-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596)	-	49	49	-	-	100.0
합 계	11,341	93,322	85,300	8,022	-	91.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지출

① 총 괄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2조 6,885억 3,800만원, 예산현액은 2조 6,886억 9,000만원이며, 이 중 2조 6,844억 4,6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2억 2,700만원이 이월, 40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지방행정	1,647,843	1,647,880	1,644,956	183	2,742	99.8
정부자원관리	19,275	19,275	19,212	0	63	99.7
정부혁신조직	19,275	19,275	19,212	0	63	99.7
지방행정·재정지원	1,628,568	1,628,605	1,625,743	183	2,679	99.8
지방자치분권	26,987	26,987	26,640	83	265	98.7
지방재정경제	300,000	300,000	299,993	0	7	100.0
지역발전	1,301,581	1,301,618	1,299,110	100	2,408	99.8
공공질서및안전	956,164	956,164	954,972	0	1,192	99.9
재난관리	956,164	956,164	954,972	0	1,192	99.9
안전관리	948,144	948,144	946,952	0	1,192	99.9
재난안전기술개발	8,020	8,020	8,020	0	0	100.0
사회복지	84,531	84,646	84,519	44	83	99.9
취약계층지원	84,531	84,646	84,519	44	83	99.9
일자리지원	84,531	84,646	84,519	44	83	99.9
합 계	2,688,538	2,688,690	2,684,446	227	4,017	99.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이월·불용

2024회계연도 이월이 있었던 사업은 총 3개 세부사업임.

‘지방시대위원회’ 사업은 예산현액 16억 3,600만원 중 8,300만원(이월률 5.1%)을 이월하였고,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99억 6,500만원 중 1억원(이월률 1.0%)을 이월하였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예산현액 757억 6,500만원 중 4,400만원(이월률 0.1%)을 이월하였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이월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636	1,636	1,291	83	262	5.1
지역발전활성화	9,928	9,965	9,545	100	320	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5,650	75,765	75,638	44	83	0.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방시대위원회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6억 3,600만원 중 2억 6,200만원(불용률 16.0%)을 불용하였고,

‘접경권발전지역’ 사업은 예산현액 498억 4,900만원 중 20억 1,300

만원(불용률 4.0%)을 불용하였으며,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99억 6,500만원 중 3억 2,000만원(불용률 3.2%)을 불용하였고,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사업은 예산현액 715억 4,400만원 중 11억 9,200만원(불용률 1.7%)을 불용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 중 100만원(불용률 0.6%)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636	1,636	1,291	83	262	16.0
접경권발전지원	49,849	49,849	47,836	0	2,013	4.0
지역발전활성화	9,928	9,965	9,545	100	320	3.2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71,544	71,544	70,352	0	1,192	1.7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200	200	199	0	1	0.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방시대위원회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6억 3,600만원 중 3억

4,500만원(미집행률 21.1%)을 미집행하였고,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99억 6,500만원 중 4억 2,000만원(미집행률 4.2%)을 미집행하였으며,

‘접경권발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98억 4,900만원 중 20억 1,300만원(미집행률 4.0%)을 미집행하였고,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사업은 예산현액 715억 4,400만원 중 11억 9,200만원(미집행률 1.7%)을 미집행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 중 100만원(미집행률 0.6%)을 미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지방시대위원회운영	1,636	1,636	1,291	83	262	345	21.1
지역발전활성화	9,928	9,965	9,545	100	320	420	4.2
접경권발전지원	49,849	49,849	47,836	0	2,013	2,013	4.0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71,544	71,544	70,352	0	1,192	1,192	1.7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200	200	199	0	1	1	0.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예비비 지출

행정안전부는 2024회계연도에 예비비 1억 4,700만원을 배정받았음.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2024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자산총액은 11조 9,424억 7,500만원으로, 전기 말 대비 2,144억 9,200만원(1.8%)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일반유형자산의 감소(2,032억 4,200만원), 무형자산의 감소(163억 3,200만원) 등에 있음.

부채총액은 1,793억 9,20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246억 5,700만원(4.2%)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장기차입부채가 156억 3,1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7,630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91억 4,800만원(2.0%)이 감소하였음.

[2024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자산(a)	11,942,475	12,156,967	(214,492)	(1.8 %)
· 유동자산	105,225	105,347	(122)	(0.1 %)
· 투자자산	14,315	9,325	4,990	53.5 %
· 일반유형자산	11,448,867	11,652,109	(203,242)	(1.7 %)
· 무형자산	368,787	385,119	(16,332)	(4.2 %)
· 기타비유동자산	5,281	5,066	215	4.2 %
II. 부채(b)	179,392	154,735	24,657	15.9 %
· 유동부채	66,075	57,050	9,025	15.8 %
· 장기차입부채	113,316	97,685	15,631	16.0 %
· 장기충당부채	-	-	-	-
순자산(a-b)	11,763,084	12,002,232	(239,148)	(2.0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2024(A) : 2024년 12월 31일자 잔액
2023(B) : 2023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70,228,336**

2024년도 행정안전부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69조 8,572억 9,900만원 및 관리운영비 4,410억 6,300만원, 비배분비용 37억 9,800만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729억 2,400만원을 차감한 70조 2,283억 3,600만원이며, 비교환수익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와 동일한 70조 2,283억 3,600만원임.

[2024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Ⅰ. 프로그램순원가	69,857,299	72,414,834	(2,557,535)	(3.5 %)
Ⅱ. 관리운영비	440,163	426,460	13,703	3.2 %
Ⅲ. 비배분비용	3,798	1,361	2,437	179.1 %
Ⅳ. 비배분수익	72,924	132,785	(59,861)	(45.1 %)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70,228,336	72,709,871	(2,481,535)	(3.4 %)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70,228,336	72,709,871	(2,481,535)	(3.4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2024(A)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3(B)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기초순자산	전기 旣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오류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
-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행정안전부의 순자산은 2024년 말 기준 11조 7,630억 8,400만원이며, 2024년 기초순자산은 12조 22억 3,2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70조 2,283억 3,6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70조 916억 1,000만원, 조정항목은 -1,024억 2,200만원임.

[2024년도 행정안전부 순자산변동표(일반회계+특별회계)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A)	2023(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Ⅰ. 기초순자산	12,002,232	11,729,588	272,644	2.3 %
Ⅱ. 재정운영결과	70,228,336	72,709,871	(2,481,535)	(3.4 %)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70,091,610	73,034,653	(2,943,043)	(4.0 %)
Ⅳ. 조정항목	(102,422)	(52,138)	(50,284)	(96.4 %)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1,763,084	12,002,232	(239,148)	(2.0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2024(A)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3(B)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 성인지 결산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은 여성 지방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지원, 재난상황에 여성의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4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34억 7,000만원이고 집행액은 34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8.8%임.

[2024년도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2024년			2023년 지출액 (c)	전년대비 증감 (d=b-c)	전년대비 증감률 (d/c)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소계(A)		3,470	3,429	98.8	1,438	1,991	138.5
일반회계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560	557	99.5	577	△20	△3.5
	-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2]	560	557	99.5	577	△20	△3.5
	(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2]	519	499	96.1	452	47	10.3
	(3)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2,100	2,100	100.0	-	2,100	-
	(4)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2]	291	273	93.8	409	△136	△33.3
특별회계소계(B)							
성별영향평가사업소계		-	-	-	-	-	-
직접목적사업소계		2,910	2,872	98.7	861	2,011	233.6
합계(A+B)		3,470	3,429	98.8	1,438	1,991	138.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주 1) 직접목적 사업
2) 성별영향평가 사업

6.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음.

7. 지방교부세 결산

지방교부세란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11]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 편차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임. 같은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지방교부세의 구분]

(단위: 백만원, %)

구 분		목 적	재 원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내국세 정률분[주]의 97%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지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4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 협력사업 촉진	내국세 정률분의 3% × 10%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50%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주) 내국세 정률분: 내국세에서 담배개별소비세 45% 및 종합부동산세·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24%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4회계연도 지방교부세는 총 66조 7,593억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96.7%인 64조 5,229억 9,400만원이 교부(집행)되었음. 이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수입에 결손이 발생하여 그에 연동된 보통교부세는 예산대비 96.6%(예산 59조 8,439억 1,700만원 중 57조 7,932억원)만 교부되었고, 지역현안특별교부세는 예산대비 96.6%(예산 7,403억 3,700만원 중 7,150억원),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는 예산대비 96.6%(예산 1,850억 8,400만원 중 1,788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예산대비 96.6% (예산 9,254억 2,100만원 중 8,936억 9,900만원) 등이 각각 교부되었기 때문임.[12)]

12) 나머지 금액은「지방교부세법」제5조제3항에 따라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에 정산함.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024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보통교부세(1631-300)		59,843,917	57,793,200	-	2,050,717	96.6
특별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632-300)	740,337	715,000	-	25,337	96.6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32-301)	185,084	178,800	-	6,284	96.6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644-300)	925,421	893,699	-	31,722	96.6
부동산교부세(1633-300)		4,109,800	4,109,800	-	-	100.0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954,765	832,495	-	122,270	87.2
합계		66,759,324	64,522,994	0	2,236,330	96.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보통교부세 미교부의 경우, 2013년 2,500억원(예산 대비 0.7%)이 미교부된 후 2023년에 10년만에 다시 10.8% 미교부가 발생하였고, 2024년에도 3.4% 미교부가 발생한 것임.

[2013~2024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교부액 (B)	미교부액	교부율 (B/A)
2013	35,535,947	35,258,947	250,000	99.3
2014	35,698,180	35,698,180	0	100.0
2015	32,926,185	32,926,185	0	100.0
2016	35,023,661	35,023,661	0	100.0
2017	39,222,628	39,222,628	0	100.0
2018	42,469,616	42,469,616	0	100.0
2019	47,602,635	47,602,635	0	100.0
2020	44,896,524	44,896,524	0	100.0
2021	50,252,142	50,252,142	0	100.0
2022	65,517,054	65,517,054	0	100.0
2023	66,644,552	59,475,700	7,168,852	89.2
2024	59,843,917	57,793,200	2,050,717	96.6

주) 2014년 이전에 모든 유형의 지방교부세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 → 2013~2014년은 모든 지방교부세를 합산한 수치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별교부세의 경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액 전액에 교부되었으나, 2024년에는 예산액 중 633억 4,300만원(예산 대비 3.4%)이 미교부되었음.

[2013~2024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교부액 (B)	미교부액	교부율 (B/A)
2013	1,310,331	1,310,331	-	100.0
2014	986,119	986,119	-	100.0
2015	987,407	987,407	-	100.0
2016	1,083,206	1,083,206	-	100.0
2017	1,213,070	1,213,070	-	100.0
2018	1,313,493	1,313,493	-	100.0
2019	1,472,247	1,472,247	-	100.0
2020	1,389,478	1,389,478	-	100.0
2021	1,554,190	1,554,190	-	100.0
2022	2,026,300	2,026,300	-	100.0
2023	2,061,172	2,061,172	-	100.0
2024	1,850,842	1,787,499	63,343	96.6

주) 1) 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
2) 교부액은 정산분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보통교부세 미교부가 발생한 2013년, 2023년 및 2024년 국세수입은 예산액 대비 각각 96.0%, 85.9%, 91.6%만 수납되는 결손이 발생하였음.

[2013~2024년 국세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예산액	수납액	수납율
2013	210.4	201.9	96.0
2014	216.5	205.5	94.9
2015	215.7	217.9	101.0
2016	232.7	242.6	104.2
2017	251.1	265.4	105.7
2018	268.1	293.6	109.5
2019	294.8	293.5	99.5
2020	279.7	285.5	102.1
2021	314.3	344.1	109.5
2022	396.6	395.9	99.8
2023	400.5	344.1	85.9
2024	367.3	336.5	91.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Ⅱ. 검토의견

【총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분석】

1. 개념의 구분

예산의 '이용(移用)'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및 장·관·항(분야·부문·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13]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승인 이용)[14]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자체 이용) 이용을 할 수 있음[15].

---

13)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4) **「2024년도 예산 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산의 ‘전용(專用)’은 행정과목 중 가장 상위 범주인 세항(단위사업) 또는 목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승인 전용),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음[16].

예산의 ‘내역변경’과 ‘세목조정’은 각각 행정과목 중 세세항(세부사업)과 세목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국가재정법」 등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재량하에 실시할 수 있으나, 일부 예산 유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협의절차를 두고 있음[17].

---

15) 그 밖에 「국가재정법」 제47조제2항은 정부 조직변경 시에도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실무상으로 예산을 이체(장·관·항, 목·세목 등을 그대로 유지한채 소관만 변경)만할뿐 이용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16)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17)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2.**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일용임금 근로자를 상용임금(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일용임금(110-04목)에서 상용임금(110-03목)으로 세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6.

“주요사업비 내 유류비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타 비목으로 전용 시(세목조정 포함) 기획재정

이러한 예산의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이하 “이·전용등”)은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18]’의 예외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 등을 할 때에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사유·변동내역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2024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집행 결과, 총 92개 세부사업 863억 8,500만원 규모의 이·전용등이 실시되었음. 2024년도 행정안전부 전체 예산은 28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1.8%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에서 이·전용등이 실시된 것임.

구체적으로 예산의 이용은 총 2개 세부사업 530억 9,300만원, 전용은 41개 세부사업 202억 8,900만원, 내역변경은 4개 세부사업 8,300만원, 세목조정은 81개 세부사업 129억 3,000만원 규모임.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요약]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수	금액
이용	2	53,093
전용	41	20,289
내역변경	4	83
세목조정	81	12,930
합계	**128**	**86,385**

주 1) 증액 사업 기준으로 집계

2) 이·전용등이 중복 실시된 사업이 있어 세부사업수 합계는 단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예산의 이·전용등 전체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재난대책비(보조)	330-03	이용	40	-	-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210-02	11.16.	7.8.~19. 호우, 9.19.~21.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 확보
			250	-	-		210-05		
			2,300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	210-15		
			1,000	-	-		420-03		
			28,800	-	-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310-02		
			103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10-01		
			700	-	-		310-01		
			4,000	-	-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330-03		
			140	-	-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110-04	12.27.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 확보
			102	-	-		210-02		
			120	-	-		220-01		
			155	-	-	지자체경쟁력지원	210-07		
			350	-	-		210-14		
			104	-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220-01		
			8	-	-		210-07		
			500	-	-	한국섬진흥원지원	350-01		
			183	-	-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320-02		
			1,660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	210-15		
			1,000	-	-		430-01		
			390	-	-	범정부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정보화)	430-01		
			290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420-03		
			137	-	-		420-04		
			140	-	-		430-01		
			341	-	-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신축(정보화)	430-01		
			143	-	-	국경일등정부행사	210-01		
			250	-	-	정부포상	210-01		
			100	-	-	정부청사노후 시설등정비	260-01		
			609	-	-		420-03		
			1,100	-	-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10-03		
			399	-	-	대일항쟁기강제 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210-14		
			121	-	-	대일항쟁기강제 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310-04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220	-	-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310-01		
			800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420-03		
			243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10-01		
			898	-	-		310-01		
			450	-	-		330-03		
			136	-	-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310-01		
			700	-	-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110-01		
			968	-	-	인건비(기록)	110-01		
			450	-	-	인건비(청사)	110-02		
			600	-	-	인건비(국가정보자원관리원)	110-01		
			425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인건비	110-01		
			350	-	-	인건비(대통령기록관)	110-01		
			150	-	-		110-02		
			118	-	-	중앙안전상황실운영	430-01		
			119	-	-	재난안전산업활성화	320-02		
			120	-	-	승강기안전관리개선	330-03		
			641	-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210-15		
	소계		52,923	-	-				
	330-03	전용	800	-	-	지진대비인프라구축	330-03	12.27.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 확보
	소계		800	-	-				
	합계		53,723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10-02	이용	170	-	-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110-01	10.16.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소계		170	-	-				
	210-02	세목조정	35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10-01	9.5.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210-09		15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10-01		시설유지보수 비용 재원 마련
	210-02		16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10-01	10.2.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210-02		21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10-01	11.26.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15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10-15		
	소계		102	-	-				
	합계		272	-	-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지자체 경쟁력지원	260-01	전용	49	-	10.8	지자체경쟁력지원	210-01	8.5.	행정안전복지센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49	-	10.8				
	330-01	세목 조정	449	-	5	지자체경쟁력지원	330-03	3.7.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 공모결과에 따른 경상보조 재원마련
	210-16		1	-	-	지자체경쟁력지원	210-01	6.17.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과운영비 재원 마련
	210-07		4	-	1	지자체경쟁력지원	210-01	7.8.	2024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개최를 위한 임차료 확보
	210-07		15		9	지자체경쟁력지원	210-01	9.30.	2024 한일내정관계자 회의시설 임차비용 확보
	210-01		2	-	-	지자체경쟁력지원	210-07	12.27.	다산목민대상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확보
	소계		471	-	15				
	합계		520		25.8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220-02	전용	11	-	-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210-01	9.19.	K-주소 확산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확보를 위해 예산집행지침에 맞는 세목으로 전용
	소계		11	-	-				
	210-07	세목 조정	2	-	-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210-01	11.5.	정부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임차료 확보를 위해 동일사업내 세목조정
	210-07		4	-	-		210-01	12.9.	주소정책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확보를 위해 동일사업내 세목조정
	소계		6	-	-				
	합계		17	-	-				
지방세정보화 추진(정보화)	250-02	전용	8	-	-	지방세정보화추진 (정보화)	210-01	10.30.	추진단 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8						
	210-05	세목 조정	1	-	1	지방세정보화추진 (정보화)	210-01	12.6.	추진단 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충당 후 집행잔액
	210-07		33	-	-	지방세정보화추진 (정보화)	210-01	12.6.	추진단 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34	-	1				
	합계		42	-	1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220-02	전용	5	-	-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210-14	7.25.	이북도민 후세대 중국지역 역사탐방 사업의 인솔 등을 담당할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재원 마련
	소계		5	-	-				
	210-07	세목 조정	4	-	-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210-01	9.23.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한 버스 임차료 재원마련
	210-01		2	-	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210-07	12.12.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 회의추진비 재원마련
	소계		6	-	2				
	합계		11		2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14	전용	130	-	17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60-01	5.3.	민원서식을 다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130	-	17				
	210-14	세목 조정	70	-	12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01	1.17.	정부혁신 홍보콘텐츠 제작 및 뉴미디어 운영을 위한 전문업체 대행 용역 수행
	260-02		240	-	65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60-01	1.31.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세목조정
	210-07		3	-	-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01	2.22.	2030자문단 회의·행사 추진을 위한 장소 임차
	260-01		130	-	-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60-02	5.1.	민원서식 다국어 번영 용역 추진을 위해 세목조정
	210-14		10	-	-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01	9.11.	국무조정실 주관 행사인 「청년의날」 기념행사 참여를 위해 홍보부스 운영 용역 추진
	210-01		7	-	10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07	12.11.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홍보영상 제작 및 정부광고비 지급
	소계		460	-	87				
	합계		590	-	104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정보화)	210-02	전용	215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	210-15	11.27.	모바일신분증 확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220-01	전용	3	-	-	정보보호 인프라확충(정보화)	210-05	12.3.	주요정책과제 추진에 따른 관외출장 증가로 국내여비 부족
	합계		218	-	-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 (정보화)	260-01	전용	200	-	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	210-15	1.31.	공통행정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비 지원
	소계		200	-	20				
	420-02	세목 조정	26	-	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	420-03	5.8.	UPS 배터리 화재 대응시설 구축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설계비 지원
	210-06		30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	210-07	5.23.	4개 센터 관제업무의 본원 통합에 따른 광주·대구센터 당직수행 일·숙직비 지원
	210-02		2,832	-	9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	210-15	12.9.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부족분 지원
	220-01		6	-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	220-02	12.18.	국내여비 부족분 지원
	소계		2,894	-	97				
	합계		3,094	-	117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420-03	전용	1,000	385	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신축(정보화)	210-14	7.22.	ISMP 및 총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른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비 마련
	420-04		147	110	-				
	430-01		196	-	1				
	합계		1,343	495	5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운영(정보화)	210-02	전용	207	-	45	범정부신규 도입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210-07	7.5.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678			범정부신규 도입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430-01	7.5.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소계		885	-	45				
	220-02	세목 조정	1	-	-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운영(정보화)	220-01	3.22.	제12회 아세안(ASEAN) 국제 컨퍼런스 참석 (정부24 운영사례 발제)
	소계		1	-	-				
	합계		886	-	45				
청사시설 유지보수	210-02	전용	638	-	541	정부청사 노후시설등정비	260-01	9.12.	정부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재원 마련
			58	-			420-01		
			194	-			420-02		
			70	-			420-04		
			4,800	-		청사시설관리및위탁	110-03		
			1,740	-			320-09		
			503	-		공무원통근버스운행	210-07		
	소계		8,003	-	541				
	210-09	세목 조정	40	-	32	청사시설유지보수	210-05	10.8.	대전 민원동 개청 필수사업 및 청사 누수 보수 등 긴급사업추진 부족재원 마련
			84	-			210-07		
			232	-			210-11		
	소계		356	-	32				
	합계		8,359	-	573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전자기록관리 체계구축(정보화)	430-01	전용	52	-	-	기록물보존복원	430-01	7.25.	시스템 암호장비 교체 관련 재원 마련
	합계		52	-	-				
기록관보존 시설관리	210-02	전용	90	-	-	기록관보존시설관리	110-03	11.15.	공공요금 부족 재원 마련
			180	-	-	기록관보존시설관리	320-09	11.15.	
	소계		270	-	-				
	210-09	세목 조정	18	-	-	기록관보존시설관리	210-14	8.13.	사무실 공간 배정 변경 관련 네트워크 공사
	210-09		4	-	-	기록관보존시설관리	210-14	9.30.	사무실 공간 배정 변경 관련 원상복구 공사
	소계		22	-	-				
	합계		292	-	-				
대통령 기록관리	320-09	전용	120	-	-	대통령기록관리	110-03	12.20.	퇴직연금 은행적립액 부족
	소계		120	-	-				
	210-02	세목 조정	100	-	4	대통령기록관리	210-01	2.27.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14		4	-	51	대통령기록관리	210-01	6.5.	기획전시 용역사업 추진비용 부족분 충당
			43				210-09		
	210-07		1	-	-	대통령기록관리	210-05	11.22.	복합기 임차 필요
	210-01		33	-	3	대통령기록관리	210-02	12.16.	소송대리인 착수금 등 필요
	소계		181	-	57				
	합계		301	-	57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420-03	전용	317	-	116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310-04	8.7.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용 재원마련
	420-03		19	-		과거사관련업무지원 단운영	110-03	8.7.	공사비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 증가
	420-03		195	-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320-02	8.8.	공사비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 증가
	420-04		68	-	5				감리비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
	소계		599		121				
	420-03	세목 조정	140	-	-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420-04	7.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관리 용역기간 연장 금액 충당
			50				420-04	8.8.	
	420-04		633	-	-		420-03	1.16.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관리 용역기간 연장 금액 충당
	420-05		63	-	21		420-03	3.7.	분야별 공사계약 및 관급자재구매 등에 따른 조달수수료 납부비용 충당
	소계		886		21				
	합계		1,485	-	142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여수·순천10·19 위원회 지원	250-02	전용	2	-	-	여수·순천10·19 위원회 지원	210-01	12.3.	직책수행경비 부족재원 마련
	소계		2	-	-				
	210-14	세목 조정	7	-	-	여수·순천10·19 위원회 지원	210-01	5.7.	여순사건 진상조사기획단 현장회의 용역비 확보
	210-14		14	-	-	여수·순천10·19 위원회 지원	210-01	8.19.	여순사건 담당자 워크숍 추진 용역비 확보
	210-02		2	-	-	여수·순천10·19 위원회 지원	210-01	12.16.	공공요금 부족분 확보
	소계		23	-	-				
	합계		25	-	-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2	전용	864	-	1	인건비(국과수)	110-01	8.26.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2		285	-	-	인건비(국과수)	110-01	12.24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소계		1,149	-	1				
	210-07	세목 조정	5	-	-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1	3.22.	본원 69주년 기념행사 관련 물품 임차료 부족
	210-16		0.4	-	2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1	5.1.	직제개편(독성화학과의 독성마약과,화학분석팀으로의 이원화)에 따른 과운영비 지급액 증가
	210-05		7	-	2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1	5.20.	시간외 근무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
	210-04		0.01	-	-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1	5.28.	사회복무요원 5월분 급식비 부족
	210-09		10	-	2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1	6.7.	조직변경 등에 따른 시설유지비 부족
	210-05		2	-	-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1	6.13.	감정량 증가에 따른 특근 및 석식이용자 증가
	210-11		8	-	6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1	7.24.	청사 시설 및 환경.위생관리 소모품 구입비 부족
	210-07		1.8	-	-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1	8.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무인경비시스템 임차료 부족으로 인한 조정
	210-02		1	-	1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1	8.21.	공공요금 부족분(전기요금) 보충
	210-02		3	-	-		210-08	8.21.	
	210-03		0.2	-	-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1	8.29.	민방위복 구매에 따른 지급 부족액 보충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210-11		2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1	9.24.	청소용품 및 시설관리 소모품 구매
	210-02		5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1	10.14.	공공요금 부족분(전기요금) 보충
	210-02		0.01	-	-		210-03	10.14.	공공요금 부족분(전기요금) 보충
	210-02		0.1	-	-		210-07	10.14.	공공요금 부족분(전기요금) 보충
	210-02		1	-	-		210-08	10.14.	공공요금 부족분(전기요금) 보충
	210-09		1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8	10.22.	동절기 대비 차량 타이어 교체
	210-09		1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1	11.7.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부족
	210-11		1.5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1	12.2.	재료비 부족에 따른 조정
	210-09		2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1	12.3.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210-09		2.5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8	12.10.	공용차량 관리비 부족으로 조정
	210-11		0.1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9	12.16.	기본경비 재료비 부족
	220-01		2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20-02	12.17.	국내 출장여비 부족
	220-01		0.8	-	-		220-03	12.17.	국내 출장여비 부족
	210-09		1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8	12.18.	공용차량 유지관리 비용 등 지급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확보
	210-01		0.5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1	12.20.	일반수용비 부족에 따른 조정
	210-01		0.2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1	12.20.	제주출장소 물품관리 용역대금 부족으로 인한 세목 조정
	210-09		10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2	12.23.	연구원 바닥 청소 등 시설유지보수비 부족
	210-08		8.8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16	12.23.	공무원 채용 시험관리비 부족
	220-09		16.5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1	12.24.	UPS배터리 교체, 본관동 지하통로 렉산설치작업
	210-05		1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2	12.24.	12월 특근매식비 부족 예산 충당
	210-06		0.5	-	-		210-02	12.24.	12월 일숙직비 지급을 위한 부족 예산 충당
	210-09		1.7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7	12.26.	청사 시설유지보수비 부족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210-01		1.7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7 210-08	12.31.	연구원 기본 운영 소모품 구입비 부족
	210-11		0.3	-	-		210-07 210-08	12.31.	연구원 기본 운영 소모품 구입비 부족
	210-05		1.4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7 210-08	12.31.	12월 특근매식비 부족 예산 충당
	210-09		2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7 210-08	12.31.	공용차량 수리비 부족
	210-08		0.06	-	-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1	12.31.	무안 긴급출장 유류비 지급
	소계		103	-	15				
	합계		1,252	-	16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운영	220-01	전용	47	-	-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210-01	9.30.	지역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부족재원 마련
	소계		47	-	-				
	210-15	세목 조정	30	-	1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210-01	8.23.	착오로 인한 세목조정 후 원상복구
	210-01		30	-	2		210-15	8.30.	
	소계		60		3				
	합계		107		3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220-01	전용	4	-	1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210-01	11.21.	국민안전의식 함양 업무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4	-	1				
	210-14	세목 조정	40	-	1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210-01	9.30.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에 따른 세목조정
	소계		40	-	1				
	합계		44		2				
재난안전교육원 운영	220-02	전용	14	-	-	재난안전교육원운영	210-01	3.26.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국외업무여비 부족재원 마련
	소계		14	-	-				
	210-09	세목 조정	16	-	2	재난안전교육원운영	210-15	5.14.	시설관리 수요증가에 따른 조정
	210-09		80	-	2	재난안전교육원운영	210-15	7.15.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따른 조정
	210-02		50	-	6	재난안전교육원운영	210-01	11.11.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조정
	소계		146	-	10				
	합계		160	-	10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사회재난교육 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220-01	전용	26	-	7	사회재난교육 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210-01	12.13	사회재난 관련 정책협의, 현장점검 등으로 인한 출장 소요 증가
	합계		26	-	7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220-01	전용	13	-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210-02	12.03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10-01	세목 조정	5	-	-		210-02	08.14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합계		18	-	-				
인건비(이북)	110-01	전용	170	-	7	인건비(본부)	110-01	12.19.	정현원 차이 등으로 인한 보수 부족재원 마련 필요
	소계		170	-	7				
	110-01	세목 조정	17	-	-	인건비(이북)	110-02	12.18.	정현원 차이 등으로 인한 보수 부족재원 마련 필요
	소계		17	-	-				
	합계		187	-	7				
기관운영(총액)	250-02	전용	18	-	3	기관운영(총액)	210-05	12.19.	기관 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18	-	3				
	210-06	세목 조정	0.4	-	-	기관운영(총액)	210-05	12.10.	일·숙직비 지급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10-07		4	-	3	기관운영(총액)	210-12	11.22.	파견근무자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4	-	3				
	합계		22						
기관운영	220-01	전용	50	-	-	기관운영	210-01	7.16.	현장대응 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50	-	-				
	210-01	세목 조정	3	-	-	기관운영	210-07	12.27.	부서 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10-07		20	-	-	기관운영	210-14	10.23.	조직화합 행사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10-09		91	-	-	기관운영	210-01	5.8.	사무공간 이전 재배치를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114	-	-				
	210-08	내역 변경	25	-	-	지방재정경제실	210-01	12.3.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10-09		15	-	-				
	소계		40	-	-				
	합계		204	-	-				
대변인실	220-01	전용	15	-	-	대변인실	210-01	10.16	정책현장 취재 등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합계		15	-	-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기획조정실	220-01	전용	35	-	-	기획조정실	210-01	12.27.	예산·법안 심사 국회대응 및 현안 대응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마련
	220-01		4	-	-	전자정부국	210-01	12.27.	
	소계		39	-	-				
	210-07	세목조정	20	-	1	기획조정실	210-01	3.20.	정책자문위원회 집중토론회 운영을 위한 임차료 부족분 마련
	210-07		18	-		기획조정실	210-01	9.23.	회의 대응,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임차료 부족분 마련
	210-02		11	-	4	기획조정실	210-01	10.10.	공공요금 부족분 마련
	소계		49	-	5				
	210-02	내역변경	2	-	-	대변인실	210-02	1.31.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부족재원 마련
	210-02		3.2	-		기관운영	210-02	1.31.	
	210-02		3.2	-		지방자치분권실	210-02	1.31.	
	210-02		1.6	-		지방재정경제실	210-02	1.31.	
	210-02		0.8	-		안전정책실기본경비	210-02	1.31.	
	210-02		0.8	-		재난관리실기본경비	210-02	1.31.	
	210-02		0.4	-		재난협력실기본경비	210-02	1.31.	
	210-02		0.8	-		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210-02	1.31.	
	210-02		1.2	-		전자정부국	210-02	1.31.	
	소계		14	-	-				
	합계		102		5				
전자정부국	220-01	전용	53	-	9	전자정부국(256)	210-01	12.26.	행정망 전산 대책 마련 등 출장요소 증가
	소계		53	-	-				
	210-02	세목조정	1	-	1	전자정부국(256)	210-01	10.18.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 예산 부족
	소계		1	-	1				
	합계		54	-	10				
지방자치분권실	220-01	전용	50	-	3	재난협력실 기본경비	210-01	12.22.	민생현장 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서별 출장소요 증가, 부족해진 국내여비 재원 마련
	소계		50	-	3				
	210-14	세목조정	105	-	2	지방자치분권실	210-07	3.19.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재원 마련
	210-07		35	-	2	지방자치분권실	210-01	11.21.	지자체 계획인사교류자 주거지원비 지급을 위한 임차료 재원 마련
	210-07		49			지방자치분권실	210-01	12.17.	차관보실 업무 수행을 위한 임차료 재원 마련
	210-07		9			지방자치분권실	210-02	12.17.	차관보실 업무 수행을 위한 임차료 재원 마련
	소계		198	-	4				
	합계		248		7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지방재정경제실	220-01	전용	44	-	-	지방재정경제실	210-01	8.5.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및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개통 안정화 지원 등 현장점검 수요 증가
	220-01		9	-	-	지방재정경제실	210-07	.8.5.	
	220-01		72	-	-	지방재정경제실	210-01	12.14.	
	소계		125						
	220-01	세목 조정	4	-	-	지방재정경제실	220-02	12.9.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및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개통 안정화 지원 등 현장점검 수요 증가
	210-01		1	-	-	지방재정경제실	210-07	12.26.	임시부서 폐지로 인한 사무실 환경정비
	소계		5	-	-				
	합계		130	-	-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	220-01	전용	24	-	-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	210-01	10.16.	재난관리 업무 감찰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20-01		24	-	-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	210-01	12.20.	안전감찰 추가소요에 대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48						
	210-07	세목 조정	3	-	-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	210-01	10.16.	안전감찰 확대에 따른 단기 임차차량 임차비 부족재원 마련
	210-08		0.5	-	-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	210-01	10.16.	안전감찰 확대에 따른 단기 임차차량 유류비 부족재원 마련
	210-07		1.25	-	-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	210-01	12.17.	안전감찰 확대에 따른 단기 임차차량 임차비 비 부족재원 마련
	210-08		0.25	-	-	안전감찰관실 기본경비	210-01	12.17.	안전감찰 확대에 따른 단기 임차차량 유류비 부족재원 마련
	소계		5	-	-				
	합계		53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20-01	전용	20	-	3	사회재난실 기본경비	210-01	12.10.	국내여비 부족분 조정
	소계		20	-	3				
	220-02	세목 조정	14	-	1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20-01	1.15.	OECD 고위급 위험 포럼 정부대표 참석 재원 마련
	220-02		6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20-01	1.16.	OECD 고위급 위험 포럼 정부대표 참석 재원 마련
	210-07		7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1	1.26.	신규부서 사무실 운영에 대한 임차료 지급
	210-02		0.5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1	2.20.	행정전화요금 부족분에 대한 세목 조정 필요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210-08		1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1	3.20.	정부합동안전점검 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유류비 지급
	210-07		0.3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2	5.1.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제주, 부산) 관련 차량 임차
	210-07		0.15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1	5.27.	정부합동안전점검 관련 차량 임차
	220-02		4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20-01	6.21.	OECD 잠재위험관리 워크숍 참석 재원 마련
	220-02		4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20-01	7.26.	G20 재난위험경감 실무그룹 2차회의 참석 재원 마련
	210-03		0.6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1	9.19.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 민방위복 구매
	220-02		23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20-01	10.11.	2024년 G20 재난위험경감 기술 및 장관회의, 제14회 OECD 고위급 위험관리포럼 참석 재원 마련
	210-07		2.5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1	10.16.	서울상황센터 PC 임차료 지급
	210-01		0.4	-	3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9	11.27.	일반수용비 부족분 조정
	210-01		0.4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2	11.27.	일반수용비 부족분 조정
	210-07		0.6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2	11.27.	임차료 부족분 조정
	210-08		0.05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1	12.10.	공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조정
	210-08		0.4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2	12.10.	공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조정
	210-08		0.1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2	12.10.	공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조정
	210-09		5.6	-	-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2	12.10.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전기통신공사 등 수요 발생
	220-01		4	-	3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20-02	12.17.	국내여비 부족분 조정
	소계		75	-	7				
	220-01	내역 변경	27	-	-	감사관실 기본경비	220-01	12.12.	국내여비 부족분 조정
	소계		27	-	-				
	합계		122	-	10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재난협력실 기본경비	220-01	전용	20	-	-	재난협력실 기본경비	210-01	8.13	긴급 사회재난 현장 대응을 위한 여비 마련
			56	-	9			12.13	
	소계		76	-	9				
	210-01	세목 조정	9	-	4	재난협력실 기본경비	210-08	9.20	일반경비 지출
	210-02		0.2	-	4		210-01	1.23	우편요금 등 지출
	210-03		4.8	-	-		210-01	1.24	현장상황관리관 신형 민방위복 구입
								12.18	현장상황관리관 근무복 구입
	210-07		19	-	29		210-01	1.23	재난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용
								1.24	
								4.16	
								9.11	
	210-08		14	-	3		210-01	1.23	재난현장 출동차량 유류비용
								1.24	
								4.8	
								4.16	
								9.20	
	소계		47	-	40				
	합계		123	-	49				
재난협력실 (총액)	110-03	내역 변경	2	-	-	지방재정 경제실(총액)	110-03	12.3.	긴급 사회재난 대응 및 현장 방문 등으로 공무직 시간외근무가 계획 대비 초과 발생
	합계		2	-	-				
재외주재관지원	210-07	전용	54	-	1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12.20.	재외주재관의 법적경비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20-02		30	-	-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12.20.	재외주재관의 법적경비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84	-	1				
	210-01	세목 조정	0.3	-	-	재외주재관지원	210-02	12.16.	재외주재관의 법적경비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0.3	-	-	재외주재관지원	210-07	12.16.	재외주재관의 법적경비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1	-	-				
	합계		85	-	1				
청사기본경비 (총액)	320-09	전용	67	-	1	인건비(청사)	110-02	12.3.	전문임기제 및 청원경찰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부족재원 마련
	합계		67	-	1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기본경비(총액)	250-02	전용	3	-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기본경비	220-01	12.19.	공무원 보수지급 등 기관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합계		3	-	1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210-07	전용	40	-	-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220-01	1.31.	청년인턴 채용누리집 및 정책현장방문 버스 등 임차료 부족 재원 마련
	210-01		10	-	-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220-01	7.16.	청년인턴 업무수첩 등 운영물품 재원 확충
	소계		50	-	-				
	210-01	세목 조정	10	-	3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210-07	9.19.	청년인턴 연구소모임 등 행사 운영비 확충
	210-07		4	-	-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210-01	9.19.	과장급 역량강화교육 현장방문 이동수단 및 교육장소 임차
	소계		14	-	3				
	합계		64	-	3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220-01	전용	40	-	3	지방시대위원회운영	210-01	7.22.	위원회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출장 급증으로 국내여비 부족재원 마련
	220-01		53					12.13.	
	소계		93	-	3				
	210-09	세목 조정	11	-	1	지방시대위원회운영	210-01	7.25.	위원회 자료실 환경개선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소계		11	-	1				
	합계		104	-	4				
지역발전활성화	260-01	전용	300	-	-	지역발전활성화	210-14	7.8.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용역 관련 전문적 연구를 위하여 일반용역비를 일반연구비로 조정
	소계		300	-	-				
	210-01	세목 조정	3	-	0	지역발전활성화	210-07	7.25.	고향사랑의 날 행사 관련 임차료를 일반수용비 세목조정
	210-07		10	-	0	지역발전활성화	210-01	4.16.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공무원 워크숍 등 개최를 위한 회의실 대관 임차료 세목조정
	220-01		10	-	0	지역발전활성화	220-02	9.25.	고향사랑기부제 현안업무 추진 관련 국외업무여비를 국내여비로 세목조정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220-01		30	-	2	지역발전활성화	220-02	11.7.	지역활력제고 사업 추진 관련 국외업무여비를 국내여비로 세목조정
	210-01		1	-	0	지역발전활성화	210-07	12.9.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임차료를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
	210-01		3	-	0	지역발전활성화	210-07	12.9.	옥외광고 안전관리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임차료를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
	소계		57	-	2				
	합계		357	-	2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330-01	전용	5,000	-	31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210-14	5.31.	빈집정비 및 활용 등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경상보조로 전용
	합계		5,000	-	3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60-01	전용	80	-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10-01	9.2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과분석 및 정책대안 발굴 필요
	합계		80	-	3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운영	210-07	세목 조정	7	-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운영	210-01	9.27.	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부족분 충당
	합계		7	-	-				
공직선거관리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210-01	세목 조정	28.9	-	-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210-02 210-05	2.28.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2		1.4	-	-		210-01	3.5.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1		0.8	-	-		210-05	3.27.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2		0.1	-	-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1		0.6	-	-		210-05	4.2.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2		0.1	-	-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1		0.6	-	-		210-05	4.3.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2		0.1	-	-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2		0.1	-	-		210-01	4.8.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1		0.2				210-02	4.8.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2		6	-	-		210-01	4.14.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2		0.7	-	-		210-01 210-05	4.15.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1		1	-	-		210-02	4.15.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2		0.3	-	-		210-01	4.15.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1		1.5	-	-		210-05	4.15.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210-02		0.2	-	-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2		0.1	-	-		210-05	4.16.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1		0.2	-	-		210-05	4.18.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2		0.4	-	-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1		0.1	-	-		210-01	4.18.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2		1	-	-		210-01	4.22.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2		1.2	-	-		210-05	4.22.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2		0.8	-	-		210-01	4.24.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합계		46.3	-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210-07	세목 조정	1	-	-	비영리민간 단체지원	210-01	11.19.	설명회 개최에 따른 임차료 부족
	합계		1	-	-				
생활공감 정책추진	210-07	세목 조정	2	-	1	생활공감정책추진	210-01	1.9.	운영위원회 개최장소 임차비용 마련
	210-01		10	-	-	생활공감정책추진	210-14	7.12.	중앙연찬회 개최비용 추가
	합계		12	-	1				
지방자치인재 개발원교육운영	210-02	세목 조정	2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210-01	5.1.	교육생 단체보험료 재원 마련
	210-07		4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210-01	10.23.	교육과정 확대 운영으로 강의장 등 임차료 재원 마련
	합계		6	-	-				
지방자치인재 개발원 수입대체경비	220-02	세목 조정	8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220-01	9.20.	KOICA 위탁과정 경비 집행주체 변경(KOICA→인재원)에 따른 교육생 체재비 재원마련
	210-01		5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210-16	12.10.	교육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교육운영경비 재원 마련
	210-02		2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210-16		
	합계		15	-	-				
이북도민관련 단체 및 행사지원	210-14	세목 조정	123		10	이북도민관련단체 및 행사지원	210-01	6.27.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지방도민 지원을 위한 용역규모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합계		123		10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210-14	세목 조정	55	-	-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210-01	9.2.	민원봉사대상 행사대행 용역 총액계약 추진
	210-14		30	-	-		210-07		
	합계		85	-	-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온라인 청원 시스템 구축(정보화)	210-02	세목 조정	10	-	-	온나라 청원 시스템 구축(정보화)	210-15	1.13.	법인인증, 금융인증 등 비용 지출
	210-02		10	-	-		210-15	5.14.	법인인증, 금융인증 등 비용 지출
	210-15		3	-	-		210-02	12.4.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조달수수료 부족분 3백을 세목조정 후 납부
	합계		23	-	-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210-15	세목 조정	193	-	1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210-01	2.15.	PC등 전산장비 운영비 충당
			9	-			210-01	4.5.	PC등 전산장비 운영비 충당
	210-02		70	-	1		210-01	10.15.	임차건물 관리비 부족분 충당
			1	-			210-01	12.27.	임차건물 관리비 부족분 충당
	210-07		25	-	20		210-01	12.5.	회의장 임차료 충당
	합계		298		31				
국경일등 정부행사	210-14	세목 조정	11	-	19	국경일등 정부행사	210-01	10.16.	국빈방한 공식 환영식 행사장 설치 용역계약
	합계		11	-	19				
정부포상	210-14	세목 조정	30	97	61	정부포상	210-01	1.19.	제14기 국민추천포상 홍보용역의 원활한 진행 및 계약 의뢰
			86				210-01	9.13.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의 원활한 운영 및 계약 의뢰
			68				210-01	10.18.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식 행사의 원활한 운영 및 계약 의뢰
	합계		184	-					
국가상징선양	210-14	세목 조정	18	-	-	국가상징선양	210-01	5.28.	용역으로 영상물 제작
	합계		18	-	-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02	세목 조정	282	-	78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15	1.24.	정부청사 공무직 장애인고용부담금 부족재원 마련
	합계		282	-	78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420-05	세목 조정	22	-	-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420-03	10.23.	조달수수료 납부를 위한 부족 재원 마련
	합계		22	-	-				
기록정보서비스	210-09	세목 조정	2	-	-	기록정보서비스	210-01	2.19.	서울기록정보센터 임차공간 반환 관련 소방공사 및 원상복구 용역 재원 마련
	210-14		12	-	-	기록정보서비스			
	210-14		48	-	-	기록정보서비스	210-01	4.12.	기록동영상콘텐츠 제작
	합계		62	-	-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운영	210-09	세목 조정	20	-	-	과거사관련업무지원 단운영	210-01	1.24.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재배치 비용 마련
	210-01		5	-	-		210-09	1.24.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재배치 비용 마련(금액정정)
	210-09		4	-	-		210-15	7.1.	위로금등지급관리시스템 등 기능개선 비용 마련
	210-09		3	-	-		210-15	10.22.	지원단 홈페이지 기능개선 비용 마련
	210-07		5	-	1		210-02	11.20.	지원단 운영경비 마련 등
			5	-			210-05		
	210-01		4	-	4		210-02	12.6.	지원단 운영경비 마련 등
			6	-			210-05		
	합계		52	-	5				
대일항쟁기강제 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210-07	세목 조정	4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조사지원 및 운영	210-01	8.13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업무 관련 국외출장 현지 차량 임차료 소요 발생
	210-07		4	-	-		210-01	11.26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업무 관련 국외출장 현지 차량 임차료 소요 발생
	합계		8	-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210-14	세목 조정	11	-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210-01	6.13.	출범식 행사 준비를 위한 용역비용 마련
	210-14		3	-	1		210-07	6.13.	
	합계		14	-	1				
과학수사 감정지원	210-14	세목 조정	0.43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9	1.9.	청사관리에 필요한 용역대금 부족
	210-15		100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9	1.17.	감정지원 유지보수 계약건의 감사관실 일상감사시 권고 사항으로 조정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210-14		11	-	6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9	2.5.	시설장비유지비>일반용역비 세목변경
	420-04		2	-	-	과학수사감정지원	420-05	7.10.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실 이설 공사에 따른 감리 용역 시행을 위한 부족 예산 보충
	210-14		1.6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3	9.3.	부검폐수관 긴급 처리 용역 시행을 위한 부족 금액 보충
	210-09		5.6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15	9.6.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폐수, 폐기물 등 안정적 처리비 부족
	210-14		22.5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15	9.6.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폐수, 폐기물 등 안정적 처리비 부족
	210-01		0.02	-	1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3	9.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구급함 구매)을 위한 부족 금액 보충
	210-01		0.0004	-	2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3	9.13.	실험실 안전용품 구매를 위한 부족 금액 보충
	210-09		0.3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3	9.13.	연내 각종 시설 긴급수리를 위한 부족 금액 보충
	210-14		4.2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1	9.20.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
	210-01		2	-	2	과학수사감정지원	210-11	10.23.	실험실 안전 개선 및 감정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
	210-09		7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15	10.31.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조정
	210-14		3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15	10.31.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조정
	210-09		58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11	11.13.	감정지원 시설장비유지비 부족
	210-01		29.4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9	12.19.	코라스 현장심사비 등 부족으로 조정
	210-14		0.4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9	12.19.	세출예산 세목조정 (시설장비유지비->일반용역비)
	210-09		4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14	12.24.	본관동 배기닥트 공사 부족예산 충당
	210-01		42.4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3 210-09	12.25.	부검 촉탁비 및 특수건강검진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210-01		13.8	-	-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3 210-09 210-11 210-07	12.31.	부검 촉탁비 및 특수건강검진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합계		308	-	14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과학수사 감정장비현대화	210-15	세목 조정	946.5	-	-	과학수사감정장비 현대화	210-09	1.4.	감정장비 유지보수 계약 건의 감사관실 일상감사시 권고 사항으로 조정
	210-09		27	-	-	과학수사감정장비 현대화	210-15	6.28.	감정장비 수시수리비 부족으로 조정
	210-09		3.7	-	-	과학수사감정장비 현대화	210-15	12.18.	감정장비 수리비 부족으로 조정
	합계		977	-	-				
재난안전사업평가	260-01	세목 조정	90	-	11	재난안전사업평가	260-02	3.5.	사회재난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맞춤형 컨설팅 사업 추진
			30	-	0.6			4.22.	안전신문고 AI기술 적용 방안 타당성 검토 연구 추진
	210-07		3	-	-		210-01	11.22.	재난안전예산, 재난안전관리 계획 담당자 워크숍 임차료 지출
	합계		123	-	11.6				
승강기안전 관리개선	210-07	세목 조정	10	-	-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10-01	2.19.	지자체 승강기 담당자 워크숍 임차 비용 증액
	220-01		21	-	-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20-02	9.10.	국외출장 감소 및 국내여비 부족
	합계		31	-	-				
비상대비훈련	210-09	세목 조정	8	-	-		210-01	11.6.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4				210-07		
	합계		12						
동원자원관리	210-01	세목 조정	15	-	1	동원자원관리	210-14	10.4.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대금 지급을 위한 세목조정
	합계		15	-	1				
민방위교육훈련 및시설장비확충	220-01	세목 조정	6	-	-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220-02	11.14.	국내여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합계		6	-	-				
비상대비담당자 선발	210-01	세목 조정	0.5	-	-	비상대비담당자선발	210-14	3.27.	시험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10				210-16	3.27.	시험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7.5				210-07	12.10.	시험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0.4				210-16	12.10.	시험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210-14		2	-	-		210-07	1.23.	시험 지원인원 증가에 따른 일반용역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210-04		0.3	-	-		210-16	12.10.	급식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합계		21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210-01	세목 조정	12	-	-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10-08	12.1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 논의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함에 따라 회의실 등 임차 비용 필요
	210-08		19	-	-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10-01	12.11.	
	합계		31	-	-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	210-14	세목 조정	160	-	8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10-01	1.15.	재난대비훈련 홍보 용역사업 추진
	합계		160	-	8				
국가핵심 기반 관리	220-01	세목 조정	2	-	-	국가핵심 기반 관리	220-02	12.5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국내여비 재원 마련
	합계		2	-	-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210-01	세목 조정	44	-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210-07	12.4.	무선국 허가·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부족액 충당
	210-02		40	-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210-07	12.20.	기지국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액 충당
	합계		84	-	-				
인건비(본부)	110-01	세목 조정	260	-	381	인건비(본부)	110-02	12.26.	본부 12월 명예퇴직수당 지급
	110-01		291			인건비(본부)	110-05	12.30.	본부 12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합계		551	-	381				
인건비(청사)	110-02	세목 조정	1,710	-	65	인건비(청사)	110-01	12.16.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재원 마련
	합계		1,710	-	65				
인건비(국가정보 자원관리원)	110-02	세목 조정	102	-	-	인건비(국가정보자 원관리원)	110-01	11.6.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충당
	합계		102	-	-				
전자정부국(총액)	210-16	세목 조정	2	-	-	전자정부국(총액)	201-05	12.9.	기타운영비 부족분 충족
	합계		2	-	-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지방재정경제실(총액)	210-05	세목조정	1	-	-	지방재정경제실(총액)	210-16	12.3.	민생경제 안정 및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급량비 증가
	210-05		6	-	-	지방재정경제실(총액)	210-16	12.11.	
	합계		7	-	-				
의정관실	210-01	세목조정	6	-	-	의정관실	210-07	'24.11	일반수용비 부족분 조정
	합계		6	-	-				
감사관실	210-01	세목조정	8	-	-	감사관실	210-07	2.5.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1		1	-	-		210-02	7.23.	
			5	-	-		210-07		
			5	-	-		210-08		
	210-01		1.4	-	-		210-02	12.6.	
			2.4	-	-		210-07		
			4	-	-		210-08		
	합계		27	-	-				
인사기획관실	210-07	세목조정	3	-	-	인사기획관실	210-01	8.22.	인사현안추진(신규직원 워크숍 등)
	220-03		13	-	-	인사기획관실	220-01	9.19.	장기교육훈련 운영
	210-07		0.2	-	-	인사기획관실	210-01	12.10.	사무집기 임차물품 운영
	합계		16	-	-				
재난안전상황실 기본경비	210-03	세목조정	3	-	-	재난안전상황실기본경비	210-01	6.17.	24시간 상황근무자 복무환경 유지 위한 근무복 지급
	210-03		5	-	-	재난안전상황실기본경비	210-01	7.11.	24시간 상황근무자 복무환경 유지 위한 근무복 지급
	210-03		5	-	-	재난안전상황실기본경비	210-01	11.15.	24시간 상황근무자 복무환경 유지 위한 근무복 지급
	합계		13	-	-				
재난관리실기본경비	210-08	세목조정	1	-	-	재난관리실기본경비	210-07	12.5.	자연재난 현장점검 실시에 따른 공용차량 사용횟수 증가로 유류비 부족분에 대한 세목조정
	합계		1	-	-				
비상대비정책국 기본경비	210-01	세목조정	0.45	-	5	비상대비정책국 기본경비	210-02	10.25.	일반수용비,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인한 세목조정
	210-08		0.3	-	2				
	210-09		0.25	-	-				
	합계		1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경찰국기본경비	220-02	세목조정	0.4	-	-	경찰국기본경비	220-01	10.10.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210-07		0.5	-	-		210-02	12.13.	프린트 복합기 임차료 부족분 마련
	합계		1	-	-				
이북5도 기본경비	210-15	세목조정	5	-	5	이북5도 기본경비	210-03	3.26.	2024년 1분기 RFID 물품관리시스템 및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기성금 지급
	210-09		15	-	3		210-07	4.18.	이북5도 천장재 노후에 따른 교체작업
	220-02		14	-	0		220-01	10.15.	통일 및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확보, 국외이탈주민 협력 관련 출장재원 확보
	210-02		18	-	6		210-07	12.18.	행정자문위원회 회의개최 추진비 등
	210-03		25	-	0				
	210-01		17	-	2		210-07	12.12.	일반수용비 부족분 배정
	210-01		20	-			210-03	12.20.	피복비 재배정
	210-01		13	-			210-07	12.23.	일반수용비 부족분 배정
	210-03		3	-	0		210-07	12.12.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부족재원 마련
	합계		130	-	16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210-01	세목조정	9	-	2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210-07	12.6.	언론매체 모니터링 저작권료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 재원마련
	합계		9	-	2				
세종청사 이전 지원	210-07	세목조정	26	-	-	세종청사이전지원	210-02	12.10.	임차료 지급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210-09		44	-	-	세종청사이전지원	210-07	11.04	서울청사 재배치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합계		70	-	-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운영	210-07	세목조정	19	-	-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210-01	6.12.	2024년 유엔공공행정포럼 임차비용 증가로 부족분 충당
	합계		19	-	-				
국민안전방송 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210-07	세목조정	0.5	-	-	국민안전방송 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210-01	6.7.	출입기자단 현장 정책설명회 버스 임차료 부족분 충당
	210-09		0.5	-	-		210-01	12.5.	취재 공용차량 노후화로 인한 정비 항목 증가
	합계		1	-	-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중앙안전 상황실운영	210-15	세목 조정	679	-	-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9	1.8.	유지관리사업 적정비목 집행
	210-01		10	-	-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7.30.	회의 지원, 소모품 교체 등
	210-07		8	-	4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8.22.	임차기기 임차료 지급
	210-01		30	-	-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10.2.	회의 지원, 소모품 교체 등
	210-09		6	-	-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11.20	상황실 긴급 장비 정비
	210-01		16	-	-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11.28	회의 지원, 소모품 교체 등
	합계		749		1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3. 2024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분석

(1) 연례적 이·전용등 실시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든 재정적·행정적 변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일정 정도의 이·전용등은 용인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전용등이 실시되고 있다면, 담당 부서의 집행관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연례적으로 이·전용등이 실시된 것은 예산규모 산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전용등을 통한 증액이 자주 실시되었다면 과소편성, 이·전용 등을 통한 감액이 자주 실시되었다면 과다편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예산안 심의 시 환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겠음.

아래와 같이 최근 5년(2020～2024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전용등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총 63개 사업임. 구체적으로 5회(매년) 이·전용등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은 33개 사업, 4회는 30개 사업임.

[2020~2024회계연도 4회 이상 이·전용등 사업별 증액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4	2023	2022	2021	2020
5회	일반회계	감사관실	29	11	7	11	7
	일반회계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9	5	6	136	26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3,094	2,663	3,582	1,245	1,056
	일반회계	국경일등정부행사	11	106	278	107	1,264
	일반회계	국과수기본경비(총액)	1,252	1,633	839	489	157
	일반회계	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1	4	29	38	16
	일반회계	기관운영	204	135	455	62	119
	일반회계	기관운영(총액)	22	1,310	171	198	183
	일반회계	기록관보존시설관리	292	658	14	5	304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102	119	71	187	71
	일반회계	대통령기록관리	301	245	132	150	207
	일반회계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7	302	80	125	70
	일반회계	동원자원관리	15	64	170	123	87
	일반회계	비상대비담당자선발	21	29	3	4	3
	일반회계	세종청사 이전 지원	70	62	1,160	397	150
	일반회계	안전정책실기본경비	122	75	21	31	71
	일반회계	의정관실	6	13	31	34	10
	일반회계	이북5도기본경비	130	167	195	84	126
	일반회계	인사기획관실	16	6	125	146	6
	일반회계	재난관리실기본경비	1	17	20	2	2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	53,723	18,419	62,652	5,877	39,375
	일반회계	재난안전교육원운영	160	173	25	22	11
	일반회계	재난협력실기본경비	123	47	32	48	35
	일반회계	재외주재관지원	85	107	2	5	5
	일반회계	정부포상	184	106	109	84	195
	일반회계	중앙안전상황실운영	749	498	602	22	45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실	347	188	5	209	18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72	177	32	81	32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15	64	690	74	43
	일반회계	지방재정경제실	129	95	202	15	109
	일반회계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82	101	51	420	873
	일반회계	청사시설유지보수	8,359	9,631	2,140	1,332	1,320
	일반회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886	26	51	111	25
4회	일반회계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46	0	151	68	262
	일반회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	52	10	14	101	0
	일반회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총액)	3	2	3	1	0
	일반회계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85	85	85	85	0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	0	1	2	7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4	2023	2022	2021	2020
	일반회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84	0	249	1,164	10,402
	일반회계	전자정부국	54	39	0	38	25
	일반회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7	2	8	0	67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6	45	21	0	1
	일반회계	청사기본경비(총액)	67	61	0	114	151
	일반회계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19	46	0	14	53
	일반회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8	4	0	814	900
	일반회계	대변인실	15	15	2	0	13
	일반회계	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1	12	2	22	0
	일반회계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218	100	0	87	98
	일반회계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590	35	80	0	1,035
	일반회계	지자체경쟁력지원	520	13	0	69	64
	일반회계	과학수사감정지원	0	363	122	165	162
	일반회계	국가기록물정리	0	61	54	325	134
	일반회계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242	15	55	337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5	8	61	247
	일반회계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10	22	11	559
	일반회계	정부혁신조직실		1	6	17	23
	일반회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2	13	106	30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207	18	30	1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8	18	8	2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		6	40	44	87
	일반회계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31	23	76	1,603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총액)(R&D)		28	17	2	6
	지특회계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1	8	10	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역변경·세목조정은 제외하고 최근 5년(2020~2024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용·전용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6개 사업임. 이 중 5회(매년) 증액된 것은 재난대책비(보조), 기관운영(총액) 등 2개 사업, 4회 증액된 것은 국가정보관리원 운영(정보화), 국과수기본경비(총액), 청사기본경비(총액), 청사시설유지보수 등 4개 사업임.

[2020～2024회계연도 4회 이상 이·전용 사업별 증액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4	2023	2022	2021	2020
5회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	53,723	18,419	62,652	5,877	39,375
	일반회계	기관운영(총액)	18	1,310	171	198	183
4회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00	2,516	1,540	1,245	-
	일반회계	국과수기본경비(총액)	1,149	1,378	786	372	-
	일반회계	청사기본경비(총액)	67	61	-	114	145
	일반회계	청사시설유지보수	8,003	8,748	2,140	-	77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최근 5년(2020～2024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전용등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75개 사업임. 이 중 5회(매년) 이·전용등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은 42개 사업, 4회는 33개 사업임.

[2020～2024회계연도 4회 이상 이·전용등 사업별 감액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4	2023	2022	2021	2020
5회	일반회계	감사관실	-56	-11	-7	-11	-7
	일반회계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9	-8	-6	-136	-26
	일반회계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698	-151	-806	-68	-622
	일반회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71	-4	-14	-40	-74
	일반회계	과학수사감정지원	-308	-363	-122	-250	-381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9,269	-164	-3,582	-1,332	-7,769
	일반회계	국경일등정부행사	-154	-106	-278	-107	-1,264
	일반회계	국과수기본경비(총액)	-103	-255	-53	-123	-328
	일반회계	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1	-6	-29	-38	-8
	일반회계	기관운영	-167	-70	-303	-62	-119
	일반회계	기록관보존시설관리	-292	-428	-14	-330	-1,069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84	-187	-62	-187	-61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438	-920	-800	-61	-200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4	2023	2022	2021	2020
	일반회계	대통령기록관리	-301	-245	-132	-150	-689
	일반회계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7	-302	-80	-125	-339
	일반회계	동원자원관리	-15	-64	-170	-123	-87
	일반회계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20	-913	-22	-11	-359
	일반회계	비상대비담당자선발	-21	-29	-3	-4	-3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	-156	-1	-2	-923
	일반회계	세종청사 이전 지원	-70	-33	-160	-397	-310
	일반회계	안전정책실기본경비	-76	-75	-21	-31	-71
	일반회계	의정관실	-6	-28	-40	-34	-75
	일반회계	이북5도기본경비	-130	-130	-195	-84	-126
	일반회계	인건비(국과수)	-1,149	-1,378	-1,345	-1,872	-2,294
	일반회계	인건비(본부)	-721	-1,349	-775	-2,728	-5,160
	일반회계	인사기획관실	-16	-6	-125	-146	-6
	일반회계	재난협력실기본경비	-194	-81	-32	-48	-35
	일반회계	재난관리실기본경비	-1	-50	-20	-2	-103
	일반회계	재난안전교육원운영	-160	-173	-25	-22	-262
	일반회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725	-2,000	-6,749	-1,164	-12,002
	일반회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22	-2,500	-1,000	-121	-480
	일반회계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1,669	-2,374	-481	-150	-3,540
	일반회계	정부포상	-434	-106	-109	-84	-474
	일반회계	중앙안전상황실운영	-951	-715	-602	-22	-283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실	-300	-54	-5	-209	-18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102	-22	-32	-81	-95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15	-64	-690	-74	-43
	일반회계	지방재정경제실	-171	-129	-202	-15	-195
	일반회계	지자체경쟁력지원	-1,025	-435	-320	-69	-201
	일반회계	지진대비인프라구축	-800	-232	-1,565	-102	-120
	일반회계	청사시설유지보수	-356	-416	-2,762	-1,332	-1,062
	일반회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1	-26	-51	-111	-25
4회	일반회계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	-31	-23	-76	-1,603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총액)(R&D)	-	-28	-17	-2	-1
	일반회계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	-210	-3,227	-2,619	-814
	지특회계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	-1	-8	-10	-8
	일반회계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85	-85	-85	-85	-
	일반회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	-3	-10	-6	-	-12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4	2023	2022	2021	2020
	일반회계	기관운영(총액)	-22	-13	-7	-	-57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407	-4	-4	-	-633
	일반회계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123	-14	-48	-	-374
	일반회계	인건비(이북)	-17	-25	-10	-	-307
	일반회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7	-2	-8	-	-67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6	-45	-21	-	-43
	일반회계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7,922	-4,801	-4,754	-	-2,355
	일반회계	전자정부국	-60	-39	-	-38	-25
	일반회계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19	-46	-	-14	-1,491
	일반회계	기록정보서비스	-62	-	-47	-10	-28
	일반회계	인건비(기록)	-968	-	-600	-202	-546
	일반회계	재외주재관지원	-1	-	-2	-5	-5
	일반회계	공무원통근버스운행	-503	-	-556	-420	-660
	일반회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8	-4	-	-814	-254
	일반회계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341	-1,314	-12	-4,980	-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11	-7	-1	-	-16
	일반회계	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2	-12	-	-22	-
	일반회계	인건비(청사)	-2,227	-122	-	-179	-280
	일반회계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590	-435	-610	-	-1,567
	일반회계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	-242	-15	-55	-337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	-35	-8	-61	-363
	일반회계	자치분권위원회운영	-	-480	-113	-79	-186
	일반회계	정부혁신조직실	-	-1	-6	-17	-33
	일반회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	-22	-13	-56	-30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	-130	-18	-30	-97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	-4	-8	-8	-2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	-	-6	-40	-44	-8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역변경·세목조정은 제외하고 최근 5년(2020~2024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용·전용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15개 사업임. 이 중 5회(매

년) 감액된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인건비(국과수), 인건비(본부),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지진대비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 4회 감액된 것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기록관보존시설관리, 자치분권위원회운영,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등 9개 사업임.

[2020~2024회계연도 4회 이상 이·전용 사업별 감액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4	2023	2022	2021	2020
5회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6,375	-8	-1,540	-1,332	-7,763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438	-920	-800	-61	-200
	일반회계	인건비(국과수)	-1,149	-1,378	-1,345	-1,872	-2,294
	일반회계	인건비(본부)	-170	-1,349	-775	-2,727	-5,160
	일반회계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652	-151	-655	-18	-360
	일반회계	지진대비인프라구축	-800	-232	-1,565	-102	-120
4회	일반회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3	-4	-	-814	-254
	일반회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641	-2,000	-6,500	-	-12,002
	일반회계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341	-1,314	-7	-4,980	-
	일반회계	기록관보존시설관리	-270	-398	-	-325	-765
	일반회계	자치분권위원회운영	-	-432	-38	-33	-87
	일반회계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1	-300	-	-60	-269
	일반회계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20	-903	-2	-	-340
	일반회계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1,669	-2,315	-	-164	-3,540
	일반회계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7,640	-4,200	-4,703	-	-3,54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연초 이·전용등 실시

통상 연초는 예산안의 국회 심의·확정 시점과 가깝다는 점에서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이·전용등의 소요도 크지 않을 것임. 이에 연초에 이·전용등이 실시된 사업은 당초 예산안 편성이 신중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중 2월 이전에 이·전용등을 실시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기획조정실' 등 총 13개 세부사업이 있었음.

[2024회계연도 2월 이전에 이·전용등 실시 사업]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14	세목조정	70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01	1.7.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용역 수행 추진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60-02	세목조정	240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60-01	1.31.	정책연구용역 추진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60-01	전용	200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1.31.	공통행정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비 지원
기획조정실	210-02	내역변경	2	대변인실	210-02	1.31.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부족 재원 마련
	210-02		3.2	기관운영	210-02	1.31.	
	210-02		3.2	지방자치분권실	210-02	1.31.	
	210-02		1.6	지방재정경제실	210-02	1.31.	
	210-02		0.8	안전정책실기본경비	210-02	1.31.	
	210-02		0.8	재난관리실기본경비	210-02	1.31.	
	210-02		0.4	재난협력실기본경비	210-02	1.31.	
	210-02		0.8	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210-02	1.31.	
	210-02		1.2	전자정부국	210-02	1.31.	

증액(~으로)		유형	금액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20-02	세목 조정	14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20-01	1.15	OECD 고위급 위험 포럼 정부대표 참석 재원 마련
	220-02		6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20-01	1.16	OECD 고위급 위험 포럼 정부대표 참석 재원 마련
	210-07		7	안전정책실 기본경비	210-01	1.26	신규부서 사무실 운영에 대한 임차료 지급
재난협력실 기본경비	210-02	세목 조정	0.2	재난협력실 기본경비	210-01	1.23	우편요금 등 지출
	210-03		4.8			1.24. 등2회	현장관리관 민방위복 구입 등
	210-07		19			1.23. 등4회	재난현장 출동차량 임차 등
	210-08		14			1.23. 등5회	재난현장 출동차량 유류비용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210-07	전용	40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220-01	1.31.	청년인턴 채용누리집 및 정책현장방문 버스 등 임차료 부족 재원 마련
생활공감 정책추진	210-07	세목 조정	2	생활공감 정책추진	210-01	1.9	운영위원회 개최 장소 임차비용 마련
온라인 청원 시스템 구축(정보화)	210-02	세목 조정	10	온라인 청원 시스템 구축(정보화)	210-15	1.13	법인인증 및 금융인증 등 비용지출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02	세목 조정	282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15	1.24	정부청사 공무직 장애인고용부담금 부족재원 마련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 운영	210-09	세목 조정	20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 운영	210-01	1.24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
과학수사 감정장비현대화	210-15	세목 조정	846.5	과학수사 감정장비현대화	210-09	1.4.	감정장비 유지보수 계약건의 감사관실 일상감사시 권고사항으로 조정
비상대비 담당자선발	210-14	세목 조정	2	비상대비 담당자선발	210-07	1.23	예산집행 효율화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	210-14	세목 조정	160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	210-01	1.15	재난대비훈련 홍보 용역사업 추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이·전용등 번복 실시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정 세부사업·세목으로부터 이·전용등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세부사업·세목으로 이·전용등을 하여 주거나, 다른 세부사업·세목으로 이·전용등을 한 후 해당 예산이 부족하여 이를 다시 이·전용등 받는 사례(이하 “이·전용등 번복”)도 발생하였음. 이는 해당 세부사업·세목 예산의 향후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전용 등을 실시한 것을 의미함.

‘국과수기본경비(총액)’ 세부사업의 경우 총 3개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는데,

①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의 경우 8월 21일 세목조정으로 400만원, 8월 26일 전용으로 8억 6,400만원, 10월 14일 세목조정으로 610만원을 각각 받은 후, 12월 23일 1,00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 주었고, 12월 24일 2억 8,500만원을 전용받은 후, 12월 31일 다른 세목으로 150만원을 세목조정해 주었음.

② 임차료(210-07)의 경우 3월 22일과 8월 8일 각각 500만원과 180만원을 세목조정 받은 후, 10월 14일, 12월 26일, 12월 31일에 각각 10만원, 170만원, 54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하여 주었음.

③ 유류비(210-08)의 경우 8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5회에 걸쳐 85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준 후, 12월 23일 880만원, 12월 31일 6만원을 각각 세목조정 받았고, 12월 31일 다른 세목으로 540만원을 조정해 주었음.

[2024회계연도 국과수기본경비(총액) 이·전용등 번복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8.21.	세목조정	4	공공요금(전기요금) 부족분 충당	-	-
	8.26.	전용	864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	-
	10.14	세목조정	6.1	공공요금(전기요금) 부족분 충당	-	-
	12.23.	-	-	-	세목조정	10
	12.24.	전용	285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	-
	12.24	-	-	-	세목조정	1
	12.24	-	-	-	세목조정	0.5
임차료(210-07)	3.22.	세목조정	5	본원 69주년 기념행사 관련 물품 임차료 부족	-	-
	8.8.	세목조정	1.8	제주출장소 무인경비시스템 임차료 충당	-	-
	10.14.	-	-	-	세목조정	0.1
	12.26.	-	-	-	세목조정	1.7
	12.31.	-	-	-	세목조정	5.4
유류비(210-08)	8.21.	-	-	-	세목조정	3
	10.14.	-	-	-	세목조정	1
	10.22.	-	-	-	세목조정	1
	12.10.	-	-	-	세목조정	2.5
	12.18.	-	-	-	세목조정	1
	12.23.	세목조정	8.8	공무원채용 시험관리비 부족	-	-
	12.31	세목조정	0.06	무안 긴급출장 유류비 지급	-	-
	12.31.	-	-	-	세목조정	5.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세부사업의 경우 두 개의 세목에서 이·전용 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는데,

① 일반연구용역(260-01)의 경우 1월 31일 2억 4,00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주고, 5월 1일 1억 3,000만원을 세목조정 받은 후, 5월 3일 1억 3,000만원을 동일 사업 일반용역비(210-14)로 다시 전용해 주었음.

② 정책연구용역(260-02)의 경우 1월 31일 2억 4,000만원을 세목받은 후, 5월 1일 다른 세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세목조정해 주었음.

[2024회계연도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이·전용등 번복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일반연구용역 (260-01)	1.31	-	-	-	세목조정	240
	5.1.	세목조정	130	민원서식 다국어 번역 용역 추진	-	-
	5.3.	-	-	-	전용	130
정책연구용역 (260-02)	1.31.	세목조정	240	행정서비스 사각시대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	-
	5.1.	-	-	-	세목조정	13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통령기록관리 세부사업의 경우 두 개의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는데,

① 일반수용비(210-01)의 경우 2월 27일 1억원을 다른 세목에 조정해 주고, 12월 16일 3,300만원을 세목조정 받았음.

②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의 경우 2월 27일 1억원을 세목조정 받은 후, 12월 1일 다른 세목으로 3,300만원을 조정해 주었음.

[2024회계연도 대통령기록관리 이·전용등 번복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일반수용비 (210-01)	2.27		-	-	세목조정	100
	12.16.	세목조정	33	소송대리인 착수금 충당	-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27	세목조정	100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	-
	12.16.	세목조정	-	-	세목조정	3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두 개의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는데,

① 공사비(420-03)의 경우 1월 16일, 3월 7일 각각 6억 3,300만원, 6,300만원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조정해 주었고, 7월 3일, 8월 8일 각각 1억 4,500만원, 5,000만원을 세목조정 받았음.

② 감리비(420-04)의 경우 1월 16일 6억 3,300만원을 세목조정 받은후, 7월 3일, 8월 8일 각각 1억 4,000만원, 5,000만원을 공사비로 조정해 주었음.

[2024회계연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지원 이·전용등 번복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공사비(420-03)	1.16.	-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관리 용역 비용	세목조정	633
	3.7.	-	-	조달수수료 납부를 위한 비용	세목조정	63
	7.3.	세목조정	140	총사업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조정	-	-
	8.8.	세목조정	50	총사업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조정	-	-
감리비(420-04)	1.16.	세목조정	63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관리 용역 비용	-	-
	7.3.	-	-	총사업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조정	세목조정	140
	8.8.	-	-	총사업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조정	세목조정	5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지방자치분권실 세부사업의 경우 임차료(210-07) 세목에서 이·전용 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는데, 3월 19일 다른 세목으로 1억 500만원을 조정해 준 후, 11월 21일과 12월 17일 각각 3,500만원, 5,800만원을 각각 세목조정 받았음.

[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분권실 이·전용등 번복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임차료(210-07)	3.19.	-	-	-	세목조정	105
	11.21	세목조정	35	지자체 계획인사교류자 주거지원비 지급을 위한 임차료 재원 마련	-	-
	12.17.	세목조정	58	차관보실 업무 수행을 위한 임차료 재원 마련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세　　출】

【기획조정실】

1.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7033-301)

○ 행정안전부는 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작업이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가. 개　요

□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사업은 고객중심 행정을 위해 정책만족도 조사, 행안부 전담 콜센터 지원 및 기타 고객만족사업 등을 운영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홍보 및 정책광고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7억 6,900만원 중 16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100만원을 불용[19]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1,769	-	-	-	1,769	1,638	-	131	1,777

19) 불용사유: 인건비 잔액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 사업의 내역사업 중 ‘정책홍보 사업’은 언론매체, 동영상 제작 및 SNS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홍보하는 것임.

나. 시의성 있는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관리 필요

□ 내역사업인 ‘정책홍보 사업’에서 일반용역비로 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역은 ① 행정안전부 SNS 컨텐츠를 기획·운영지원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제작 및 확산’사업, ② 행정안전부 정책홍보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게재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 영상 제작 및 운영지원’사업 및 ③ 국정과제 등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홍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정책홍보 사업 중 일반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공고액	집행
행정안전부 디지털제작 및 확산	160	
행정안전부 디지털 영상 제작 및 운영지원 사업	190	
행정안전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홍보	150	
합 계	**500**	

자료: 행정안전부

□ 그 중, ‘2024년 행정안전부 디지털 영상 제작·운영지원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유튜브 숏폼 26개, 롱폼 10개를 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홍보, 산사태・집중호우・폭염・교통안전 등의 재난대비 정보제공 등 각종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에 게재하는 것임.

[2024년 행정안전부 디지털 영상 제작 내역]

연번	분류	영상의 주요내용	게재일(비고)
1	[숏폼] 인플루언서	착한가격업소 플러팅(EP.01) 세탁소편	2024. 3.22
2	[숏폼] 인플루언서	착한가격업소플러팅 EP.02 미용실편	2024. 3.22
3	[숏폼] 인플루언서	착한가격업소플러팅 EP.03 식당편	2024. 3.22
4	[숏폼] 인플루언서	착한가격업소플러팅 EP.04 카페편	2024. 3.22
5	[숏폼] 정책,정보	[1분PR] 생활인구란 무엇일까요?	2024. 3.22
6	[숏폼] 정책,정보	[1분PR] 빈집 철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4.03
7	[숏폼] 정책,정보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가 더 편해졌어요! -	2024. 4.04
8	[숏폼] 정책,정보	[1분PR]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모집	2024. 5.27
9	[숏폼] 정책,정보	[1분PR]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를 만들었어요	2024. 6.11
10	[숏폼] 정책,정보	[1분PR] 어벤저스가 아니어도 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2024. 6.11
11	[숏폼] 인플루언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순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꼭 기억해주세요!	2024. 6.25
12	[숏폼] 인플루언서	내가 늘 소개팅에서 거절당한 이유가 궁금하다면!? 행정서식 간편이름	2024. 6.24
13	[숏폼] 정책,정보	[1분 PR] 우리 모두 산사태를 대비해요!	2024. 7.16
14	[숏폼] 정책,정보	[1분 PR] 집중 호우의 계절! 하천 재해를 대비해요!	2024. 7.16
15	[숏폼] 정책,정보	[1분 PR] 지하공간에 물이 차오른다면 꼭! 대피해요	2024. 7.23
16	[숏폼] 인플루언서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2024. 7.29

연번	분류	영상의 주요내용	게재일(비고)
17	[숏폼] 인플루언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송 댄스 챌린지 이벤트	2024.10.18
18	[숏폼] 인플루언서	착한가격업소_미용실편	2025. 7.30.
19	[숏폼] 인플루언서	착한가격업소_사진관편	2025. 7.30.
20	[숏폼] 인플루언서	착한가격업소_식당편	2025. 7.30.
21	[숏폼] 인플루언서	착한가격업소_목욕탕편	2025. 7.30.
22	[숏폼] 정책,정보	착한가격업소 간판교체_민속집	2025. 7.24
23	[숏폼] 정책,정보	착한가격업소 간판교체_고향한식뷔페	2025. 7.24
24	[숏폼] 정책,정보	착한가격업소 간판교체_석교세탁소	2025. 7.24
25	[숏폼] 정책,정보	착한가격업소 간판교체_교대헤어매직	2025. 7.24
26	[숏폼] 정책,정보	착한가격업소 간판교체_삼미관	2025. 7.24
27	[롱폼] 인플루언서	짧고 쉬워서 기분 좋은 행정서식 간편이름	2024. 6.12
28	[롱폼] 인플루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편)	2024. 6.12
29	[롱폼] 인플루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편)	2024. 6.12
30	[롱폼] 인플루언서	"AI가 보고서를!?" 이제부턴 나도 일잘러	2024. 7.03
31	[롱폼] 인플루언서	주소를 알면! 드론 배송이 되고- 주차 자리가 보인다?! ! (1편)	2024. 7.04
32	[롱폼] 인플루언서	주소를 알면! 드론 배송이 되고- 주차 자리가 보인다? (2편)	2024. 7.04
33	[롱폼] 인플루언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근무하는 곳이!?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사람들 (1편)	2024. 7.30
34	[롱폼] 인플루언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근무하는 곳이!?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사람들 (2편)	2024. 7.30
35	[롱폼] 인플루언서	7말 8초 33주의! 폭염에도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비법 전수!	2024. 8.06
36	[롱폼] 정책,정보	착한가격 업소 종합편	2025. 7.30.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제작된 유튜브 숏폼 26개 중 9개의 동영상은 2024년에 제작만 되었고, 2025년 7월 말이 되어서야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으

며, 롱폼 10개 중 1개의 동영상은 2025년에 제작되고, 2025년 7월 말에 업로드 되었음.

업로드가 지연된 10개의 동영상은 모두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착한가격업소 간판교체 시리즈’에 대한 것으로, 미용실, 사진관, 목욕탕, 식당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해당 착한가격업소 홍보영상 컨텐츠를 2024년 11월말 업로드 예정이었으나, 2024년말 각종 재난 참사 및 사건·사고(폭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계엄, 탄핵정국 등)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희망적인 메시지의 내용이 담긴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게재시기를 다소 늦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20)]

□ 다만, 동 사업의 목적이 시의성 있게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홍보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작된 홍보영상을 반년 이상 지연하여 게재하는 것은 사업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고, 정책홍보 동영상 제작 예산이 매년 편성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는 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작업이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 한편, 행정안전부는 계엄 이후 SNS 등에서 행안부 관련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밝고, 희망적 메시지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했다고 설명함

2. 행정안전부 정보화(정보화)(7031-500)

○ ‘행정안전부 정보화(정보화)사업’의 일부 용역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계약)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예산확정 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정보화 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가. 개 요

□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업무관리 시스템, 웹사이트, 정보시스템 등을 유지·보수하고,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4억 9,100만원 중 44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을 불용[21]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행정안전부 정보화(정보화)	4,491	-	-	-	4,491	4,433	-	58	5,792

21) 불용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나. 예산확정 전 용역계역 체결 지양 필요

□ 동 사업에서 2024년 하모니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등 총 13개의 정보화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일부 계약들이 2024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이전에 체결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년 행정안전부 정보화(정보화)사업의 용역 계약 내역]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백만원)	계약체결일
1	2024년 하모니시스템 등 통합유지관리	509.3	'23.12.27.
2	2024년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품질 제고	5.7	'24. 4. 9.
3	2024년 행정안전분야 정책현안 데이터 분석	212.7	'24. 6. 3.
4	2024년 행정안전부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운영(장기2차)	1,161.5	'23.10.19.
5	2024년 정보보안 강화 사업	294	'24. 3. 5.
6	2024년 행정안전부 PC·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장기2차)	554	'24. 1.19.
7	2024년 부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장기1차)	155	'23.11.29.
8	2024년 개인정보 점검 솔루션 유지보수	21.8	'23.11.21.
9	2024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점검 및 컨설팅	133.2	'24. 3.18.
10	2024년 행정안전부 정보화교육 사업	19.8	'24. 3.13.
11	2024년 행정안전부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190	'24. 1.22.
12	2024년 행정안전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8.2	'23.12. 7.
13	2024년 전자관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90	'24. 1. 9.

주: 노란색으로 표시한 용역계약은 2024년도 예산확정(2023. 12. 21)전에 체결된 계약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예산의 지출원인행위(계약 등)의 시기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국가재정법」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고금관리법」 제20조[22]에서는 지출원인행위[23]는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24]에 따라 배정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즉, 지출원인행위(계약 등)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다만, 국가계약법 제20조[25]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를 두어,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는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

22)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3) **「국고금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4) **「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상을 종합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후 이루어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이라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임.

□ 그런데, 동 사업의 각 용역계약의 체결일을 보면, 몇 개의 사업은 2024년 예산 확정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계약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운영(장기2차)' 사업은 2023년 10월 19일, '2024년 부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장기1차)' 사업은 2023년 11월 29일, '2024년 개인정보 점검 솔루션 유지보수' 사업은 2023년 11월 21일, '2024년 행정안전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2023년 12월 7일에 계약이 체결되는 등, 202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2023.12.21.)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음.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들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단 할 수 없는 계속 사업으로 국가계약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26]에 따라 회계연도

---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개시 전 계약 체결하였고,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부서에서의 지출원인행위는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고 승인·처리되었으므로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그러나, 용역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입찰공고, 평가, 사업자 선정 등의 사전절차를 예산안을 기초로 추진하여 예산확정 이전에 계약체결의 직전단계까지 완료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실행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고금관리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임.

또한, 국가계약법 제20조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내부적 승인이 예산 확정 후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예산확정 전의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도 가능하다는 해석은 법문의 문리적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한편, 예산 확정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계약법 제20조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기초한 예산집행을 담보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함.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정보화 사업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의정관실】

3. 국경일 등 정부행사(2131-300)

○ 국빈방한 환영식 등 정부의전행사 사업은 일반수용비 집행률이 매년 50% 미만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과거 집행실적 점검과 집행관리 강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경일 등 정부행사' 사업은 국경일 행사, 국빈방한 환영식, 신년 인사회 등 정부 차원의 주요 의전 행사를 지원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6억 6,200만원 중 15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경일 등 정부행사	1,805	-	△143	-	1,662	1,546	-	116	4,924
국빈방한환영식 등 정부의전행사	365	-	△143	-	222	202	-	20	365

나. 국빈방한 환영식 등 정부의전행사의 예산집행률 제고 필요

□ 국빈방한 환영식 등 정부의전행사는 신년인사회, 시무식, 국빈방한 환영행사, 대통령·국무총리의 해외순방 환송·환영 등 주요 의전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3억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억 4,300만원이 재난대책비로 이용되고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특히 일반수용비의 경우, 예산 2억 5,600만원 중 1억 100만원(39.5%)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집행률도 2022회계연도에는 22.8%(2억 600만원 중 4,700만원), 2023회계연도에는 39.9%(3억 2,100만원 중 1억 2,800만원)로, 지속적으로 저조하였음.

[최근 3년간 국빈방한 환영식 등 정부의전행사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2년	206	△159	47	47	-	22.8
2023년	321	△88	233	128	105	39.9
2024년	256	△154	102	101	1	39.5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일반수용비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국빈방한, 대통령·국무총리 순방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인하여 재정소요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최근 3년간 행사 개최 횟수가 연 14~26회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

고, 국빈방한 환영행사도 연 1~3회씩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매년 50%를 하회하였음.

[최근 3년간 국빈방한 환영식 등 정부의전행사 진행 횟수]

구분 (연도)	총계	국빈방한 환영행사	대통령 해외순방 환송·영	국무총리 해외순방 환송·영	신년 인사회	정부 시무식	신년 국립묘지 참배
2022년	14회	1회	4회	6회	1회	1회	1회
2023년	26회	2회	13회	8회	1회	1회	1회
2024년	14회	3회	5회	3회	1회	1회	1회

※ 자료: 행정안전부

□ 이러한 집행부진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일부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과거 집행실적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는 실제 수요에 부합하도록 집행 관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정부혁신실】

4.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2036-507)

○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사업과제 선정 및 설계 등 구축에 앞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본사업단계인 전환 예산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이월 또는 재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행정안전부는 사업단계별 실제 소요되는 평균기간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정하고 추진단계별로 관리하는 등 국가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과도하게 불일치하거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집행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출연금을 과도하게 오랜 기간 집행하지 않고 보유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출연금(350-02목)이 기관운영 소요경비로 집행되어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한바, 향후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통합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기관(중앙부처·공공기관)의 주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장비를 클라우드 및 고성능서버를 기반으로 통합·구축하며, 백본 통신장비 및 백업장비의 노후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대국민 및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하

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552억 7,200만원 중 1,506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151,814	3,462			155,276	150,601	4,513	162	173,334
클라우드기반 노후장비통합 구축	146,377	3,394			149,771	145,177 [132,712]	4,493	101	162,744
클라우드 전환용역	2,173	68			2,241	2,163	20	58	2,173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509				509	506		3	509
국정자원 노후 백본장비 교체	2,232				2,232	2,232			7,380
국정자원 노후 백업장비 교체	523	-	-	-	523	523	-	-	528

나. 연례적 실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단계별 소요기간에 맞춰 사업기간의 변경 필요

□ 내역사업인 ‘클라우드기반 노후장비통합구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운영 중인 중앙부처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서버 및 관련 전산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중앙부처 노후장비 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공공에서 활용가능한 SaaS[27](Software as a Service)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내내역사업, 사업출연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에 출연하여 수행되고 있음.

□ 2024년도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내내역사업)은 전년 대비 116.4%(397억 6,100만원)가 증액된 739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15억 6,700만원이 실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83.3%에 그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4년간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불용액 제외한 실집행률은 2021년 52.5%, 2022년 82.5%, 2023년

27) 행정안전부는 SW(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구축·제공한 SW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구축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정부서비스 제공, 실시간 자원용량 확대로 긴급 수요에 탄력적 대응, 사용량 기반의 요금지불 방식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55.0%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28] 이월액을 다시 재이월한 사례도 있음.

[최근 4년간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지원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 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 제외		재이월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1	54,935	-	54,935	28,815	52.5	26,119	28,816	52.5	-
2022	178,628	26,119	204,747	165,751	81.0	31,182	147,446	82.5	-
2023	34,171	31,182	65,353	40,889	62.6	15,383	18,788	55.0	60
2024	73,932	15,383	89,315	75,903	85.0	12,365	61,567	83.3	-

자료 : 행정안전부

□ 이처럼 실집행실적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기관별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예산에 사업 물량을 계상함으로써 출연 규모가 적절하지 못하였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제 선정 및 설계·구축 등 일련의 사업절차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28)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 내역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는 사업 초기인 2021년부터 매년 반복되어 온 사항으로 지적받았음.

□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1년 내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실제 사업단계별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적용효과 등 검토, 과제의 선정부터 설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고 전환 단계에만 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설계 및 전환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1년 내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임.

[사업단계별 평균 소요기간]

사업단계	평균 소요기간(개월)
기관별 수요조사	1
적용효과 등 검토	0.5
과제 선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설계	7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8

자료: 행정안전부

□ 2024년도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수요 파악(2023.12월) → 시스템별 네이티브 적용 효과 등 검토(2024.1월) → 2024년 사업 과제 선정(2024.2월) → 사업대상 21개 시스템에 대한 설계 작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이 중 12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을 연도 말에 이르러서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예산을 같이 계상하여 다음연도 이월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경우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과 함

께 전년도 이월액까지 모두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이로 인해 완결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액을 또다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계획 수립 시 직전 연도의 사업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투입되지 못하게 되는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클라우드기반 노후장비통합구축 사업은 사업대상 과제 수요조사, 대상과제 선정 및 설계 등 전환에 앞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본사업단계인 전환 예산을 동시에 계상하여 반복적으로 이월 또는 재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수요조사, 설계 및 전환 등 사업단계별 실제 소요되는 평균기간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정하고 추진단계별로 관리하는 등 국가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국가재정법」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방식 시정 필요

□ 첫째, 내역사업인 ‘클라우드기반 노후장비통합구축’의 2024년도 과제별 추진기간을 살펴보면,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과도하게 불일치한 문제가 있음.

2024년도 동 내역사업의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회계연도가 당초 출연기간과 과도하게 불일치는 사례(19건)가 464억 5,200만원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연금의 회계연도를 초과한 사례(16건)는 66억 6,100만원으로 전체의 10.0%, 특히 출연금의 2회계연도를 초과한 사례[29]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24년도 회계연도 불일치 및 회계연도 초과 집행내역]

구분	‘24년 완료	‘25년 완료		‘26년 완료 (2회계연도 초과)	계
		회계연도 불일치	1회계연도 초과		
계약건수 (건)	14	19	15	1	49
계약금액 (백만원)	14,467	46,452	5,817	844	67,474

주) 1회계연도 초과는 계약기간이 2025년 0월부터 0월까지, 2회계연도 초과는 계약기간이 2025년 0월부터 2026년 0월까지를 말함.
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9) 출연금의 2회계연도 초과사례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계약(8억 4,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3.10.~2026.2.15.까지임.

집행부진 사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연도말 계약 체결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기간 확보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30]과 이월의 금지 원칙[31]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가 NIA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출연된 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유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출원인행위 없이 미집행된 출연금을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동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예산을 분담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는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어긋난 집행방식의 시정이 요구됨.

예를 들어, NIA 본원 전기요금(1·2·7월분) 3,508만원, 외국어 교육비 323만원 등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하여 NIA는 통상적으로 사업출연금에서 기관운영 소요경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기관운영 소요경비를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집행한 것은 일반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

30)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1)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목)으로 구분하여 출연금의 비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2]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사업출연금의 편성 취지에 반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과도하게 불일치하거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집행과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출연금을 과도하게 오랜 기간 집행하지 않고 보유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예산을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2) 동 지침은 일반출연금 중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간의 비목 변경, 또는 연구개발 출연금 중 인건비(360-01목)와 경상경비(360-02목)의 비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5.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 ODA)(2038-501)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파견관의 주택임차료를 파견국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반영하여 파견국별 지급한도기준을 설정하고 실비정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파견관 선발 시 자격요건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출연금은 다른 비목에 비하여 집행상 재량범위가 넓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예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과제 선정에 있어 민간과 연계를 통해 후속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수요기관의 과제 단계별 후속조치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 ODA)’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디지털정부 협력활동,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59억 4,900만원 중 59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자정부국가간 협력강화	5,949	-	-	-	5,949	5,941 [5,561]	-	8	6,391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5,022	-	-	-	5,022	5,022 [4,653]	-	-	5,573
디지털정부 협력활동	222	-	-	-	222	214 [214]	-	8	222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기반조성	705	-	-	-	705	705 [694]	-	-	594

□ 내역사업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운영’은 중요 협력국가와 공동으로 현지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50억 2,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나.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파견관의 주택임차료, 선발기준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 행정안전부는 NIA에 출연을 통해 2013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페루, 케냐 등 중요 협력국에 전문가(이하 “파견관”)를 파견하여 협력국 정부와 공동으로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디지털정부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공무원 역량개발 등을 지원해 오고 있음.

□ 협력센터는 1개국당 3년간 협력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04호) 제10조[33]에 따라 전담기관인 NIA에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되고 있고, 파견 직원은 동 규정 제3조제3항[34]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2013년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2016년 인도네시아, 2017년 페

---

33)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04호) 제10조(센터장 임명)** ① 전담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센터장을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전담기관 소속의 인력을 임명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이 합의하는 경우 외부 인력을 임명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협력센터 설립·운영 실무를 위임한 기관**을 말한다.

34)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04호) 제3조(수행체계)** ③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사업의 발주, 계약, 관리 업무
2. 협력기관 또는 협력국 대상 디지털정부 관련 기술 및 정책 자문 제공
3. 디지털정부 관련 경험 및 정보의 상호 공유
4.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분야 역량개발 지원
5. 협력국 디지털정부 사업 관련 민관협력 및 기업 지원
6. 협력국 디지털정부 관련 현황 파악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양해각서 등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

루·케냐, 2020년 우즈베키스탄·세르비아·튀니지, 2021년 페루·인도네시아·캄보디아·파라과이, 2023년 라오스·코스타리카, 2024년도 온두라스에 현지 협력센터가 신규 설치되었고, 이 중 세르비아·튀니지·페루·캄보디아의 협력센터는 당초 3년의 운영 기간 완료 후 3년이 더 연장되었음.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현황]

연도	2013	2016	2017~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영센터 (신설)	1개 (1개)	1개 (1개)	3개 (2개)	3개 (3개)	7개 (4개)	7개 -	8개 (2개)	8개 (1개)
센터 소재 국가명	우즈벡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페루, 케냐	우즈벡 세르비아, 튀니지	우즈벡 세르비아, 튀니지, 페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라과이	우즈벡 세르비아, 튀니지, 페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라과이	우즈벡, 세르비아, 튀니지,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라오스	세르비아, 튀니지,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라오스, 온두라스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처럼 동 내역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ODA 추진절차의 적절성 측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사업 예산 추이]

연도	2013~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백만원)	4,865	2,217	3,383	3,383	4,747	5,022	5,573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첫째, 파견관 주택임차료는 1인당 월 2,100불 지급한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바, 파견국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반영하여 파견국별 지급한도기준을 설정하고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2025년 7월말 현재 파견관 주택임차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임차료는 최소 월 1,450불(온두라스)㎡에서 최대 월 2,300불(세르비아)까지, 주택면적은 최소 60㎡(페루)에서 최대 263㎡(세르비아)까지로 파견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NIA는 모든 파견관에 대하여 월 2,100불 내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실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반면, 파견관의 주재경비는 파견국별 등급(「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장규칙」[별표 4][35])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

35) [별표 4] 국외주재경비정액표

(단위: 미불화)

구 분	주재경비 (월별)			비 고
	1급	2급	3급 이하	
갑 지	4,000	3,500	3,100	"갑지"는 별표 3의 가 또는 나 등급, "을지"는 별표 3의 다 또는 라 등급 해당지역으로 한다.
을 지	3,500	3,100	2,800	

으므로,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도 주재경비와 마찬가지로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더하여 파견국별 임차주택 면적에 대한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무상협력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경우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국가별 주택임차료 상한선을 정하여 실비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별표 3]

가등급	생 략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남수단,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협력센터 파견관 주거비 및 주재경비 지원현황]

국가명 (등급)	파견기간	주거비			주재경비	
		월지원액	월임대료 (불)	주택면적 (침실 수)	총액 (개월수)	월지원액
코스타리카 (다)	'23.4.~'25.12. (2년 9개월)	2,100불	2,100	98㎡ (2)	83,700불 (27개월)	3,100불 (2급/을지)
라오스 (라)	'23.7.~'25.12. (2년 6개월)		2,140	80㎡ (1)	84,000불 (24개월)	3,500불 (1급/을지)
이집트 (나)	'25.4.~'27.12 (2년 9개월)		-	-	12,000불 (3개월)	4,000불 (1급/갑지)
페루 (라)	'24.3.~'26.12. (2년 10개월)		7,700sol (≒2,050불)	60㎡ (2)	49,600불 (16개월)	3,100불 (2급/을지)
캄보디아 (라)	'24.5.~'26.12. (2년 8개월)		2,100	125㎡ (2)	43,400불 (14개월)	3,100불 (2급/을지)
세르비아 (다)	'24.4.~'26.12. (2년 9개월)		1,970uro (≒2,300불)	263㎡ (3)	42,000불 (15개월)	2,800불 (3급/을지)
튀니지 (라)	'24.3.~'25.12. (1년 10개월)		1,850	70㎡ (3)	44,800불 (16개월)	2,800불 (3급/을지)
온두라스 (라)	'24.7.~'26.12. (2년 6개월)		1,450	159㎡ (1)	33,600불 (12개월)	2,800불 (3급/을지)

주) 이집트 파견관의 경우 파견시 현지사정으로 주택임차를 하지 못해 숙박시설에 거주 중임. (주거비는 월지원액 한도에서 지급)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둘째,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04호) 및 업무편람에 파견관의 선발요건 및 자격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정은 전담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또는 NIA 소속 인력 중에서 파견관을 임명하도록 하되,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이 합의를 통해 외부인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어떠한 경우가 단서에 따른 외부인력 선발에 해당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우선 NIA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절차를 실시하여 응모직원이 없는 경우 외부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실제 2021년 2명(페루·파라과이), 2024년 1명(온두라스) 등 총 3명의 파견관은 외부인력으로 임명된바, 이에 대해 NIA는 소속 직원 중 응모자가 없어 외부 공고 절차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협력센터 파견관의 외부 선발 현황]

국가명 (등급)	파견기간		지원액(주택임차료+주재경비)	
	기간	개월수	총액	월평균
온두라스 (라)	'24.7.~'26.12.	30	-	4,250불
페루 (다)	'21.10.~'23.12.	27	165,019,280원	6,111,825원
파라과이 (라)	'21.10.~'23.12.	27	161,679,906원	5,991,100원

주) 파견관의 임금은 별도 지급됨.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처럼 파견관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NIA 직원 중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외부인력 선발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두 차례 내부공모 절차 진행 후 외부 선발이 진행됨으로 인해 선발 시점에 따라 부임 일정이 지연되고, 파견관의 업무인 해당 국가에 대한 협력사업은 파견관이 현지에 부임 후 남은 회계연도 기간 내에 완료 가

능한 과제[36]가 추진되는 경향이 있고, 외부인력의 경우 한시적 운영으로 인해 해당 사업에 대한 환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등 사업의 지속성 및 성과관리에 있어 적절한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고로, 한국국제협력단은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코디네이터 제외)을 내부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파견관 자격요건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동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예산을 분담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예를 들면, 동 내역사업에서 NIA 전기요금(2월분) 799만원이 3회에 걸쳐 집행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NIA는 통상적으로 사업출연금에서 기관운영 소요경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기관운영 소요경비를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집행한 것은 일반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구분하여 출연금의 비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

36) 2024년도 온두라스 파견관 선발절차를 살펴보면, 1차 내부 공고 및 2차 내부 공고(23.12.8., 23.12.20.)를 거쳐 외부 선발 공고는 2024.3.11., 채용은 4.15., 현지 부임은 24.7.15.에 완료됨. 이에 따라 온두라스 협력사업(3억 8,000만원)은 사업기간이 2개월(2024.10.23.~12.20.) 내 완료 가능한 사업(자궁경부암 진단장비 도입)으로도 추진됨. 이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디지털정부 분야의 과제로서 보기에 어려울 수 있음.

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7]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향후 행정안전부는 출연금은 다른 비목에 비하여 집행상 재량범위가 넓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목적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협력센터 설치·운영 국가의 선정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38]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ODA 사업 간 유사·중복을 막고 시너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중점협력대상국은 정부가 수원국 국가발전전략과 우리 국가협력전략의 적용 주기를 일치시킴으로써 ODA 사업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은 27개국(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앙아시아 4개국)으로 구성되고 국가별 협력전략이 이미 수립되어 있음.[39]

그런데 2025년 7월말 현재 동 내역사업에 따라 협력센터가 설치

37) 동 지침은 일반출연금 중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간의 비목 변경, 또는 연구개발 출연금 중 인건비(360-01목)와 경상경비(360-02목)의 비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3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 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할 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주관기관에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39) ODA 정책·평가 > 주요정책문서 > 국가협력전략(CPS) 참조

된 8개 국가 중 중점협력대상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는 코스타리카, 세르비아, 튀니지, 온두라스 등 4개국이 있음.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는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총괄·조정하에 무상 ODA 사업은 외교부가 주관[40] 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바, 동 내역사업도 이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운영 국가 선정에 있어 중점협력대상국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함으로써 정부 부처 간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다. 내역사업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기반조성’의 일회성 과제 추진 지양 필요

□ 동 내역사업은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별 우수시스템의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해외 홍보용 콘텐츠 제작, 디지털정부 수출실적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NIA에 출연[41]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7억 5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음.

□ 동 내역사업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과제 선정, 선정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

[해외진출 기반사업의 추진 절차]

① 수요 조사	⇨	② 과제 선정	⇨	③ 결과 통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과제 선정		선정결과 공문 시행
(행정안전부)		(과제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자료: NIA

□ 이에 따라 2016년 몽골 과학수사정보시스템, 키르시스스탄 헌법재판시스템 등 10개 컨설팅 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베트남 수입식품시스템 등 3개 사업, 2019년 인도네시아 예금보험지급시스템 등 5개 사업, 2020년 말레이시아 전자수입인지관리시스템 등 5개 사업, 2021년 탄자니아 디지털재난안전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

41) 출연근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4항임.

등 5개 사업, 2022년 에티오피아 주민등록시스템 등 5개 사업, 2023년 탄자니아 도로명주소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 2024년 잔지바르 토지등록체제 개선 컨설팅 등 5개 사업이 추진되었음.

[최근 5년간 해외진출 기반사업의 추진현황]

연도	과제명	수원국명	수요기관명	사업금액 (백만원)
'24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컨설팅	우즈베키스탄	예금보험공사	428 ※개별 사업비 약 1억원 내외
	온비드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베트남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소정보체계 현대화 및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에티오피아	행정안전부	
	잔지바르 토지등록체계 개선 컨설팅	잔지바르	국토교통부	
	몽골 디지털 ID 전환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몽골	한국조폐공사	404
'23	우즈베키스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우즈베키스탄	인사혁신처	422 ※ 개별 사업비 약 1억원 내외
	온라인수출플랫폼 구축 및 SICA-Pavilion 구축 컨설팅	S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자니아 국가주소시스템 개선 컨설팅	탄자니아	행정안전부	
	캄보디아 국회(상원의회) 디지털아카이빙 구축 컨설팅	캄보디아	국가기록원	
	라오스 스마트양식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라오스	NIA	자체 수행
'22	토지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MP 수립	파라과이	한국국토정보공사	410 ※ 개별 사업비 약 1억원 내외
	주민등록시스템 및 D-ID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F/S)	에티오피아	행정안전부	
	스마트농업 도입을 위한 구축 사전타당성(F/S)	세네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예금보험지급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F/S)	키르기스스탄	예금보험공사	
	우리나라 클라우드(NAVER/NHA)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홍보 브로셔	-	NIA	자체 수행

연도	과제명	수원국명	수요기관명	사업금액(백만원)
'21	콜롬비아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FS) 조사	콜롬비아	국민권익위원회	120
	탄자니아 디지털 재난안전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MP) 수립	탄자니아	대구광역시	136
	인도네시아 차세대 재정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F/S) 사업	인도네시아	한국재정정보원	120
	보츠와나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사업	보츠와나	NIA	398
	데이터센터 유상차관 카탈로그 개발	-	NIA	자체 수행
'20	말레이시아 전자수입인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사업	말레이시아	기획재정부	107
	베트남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사업	베트남	국토교통부	935
	알바니아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사업	알바니아	예금보험공사	107
	코스타리카 전자세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코스타리카	국세청	107
	리모팅센싱을 이용한 캄보디아 국토환경모니터링 컨설팅사업	캄보디아	대한원격탐사학회	683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동 내역사업은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NI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진과제 중 후속과제가 추진된 경우는 2021년 콜롬비아 반부패신고시스템 구축, 2022년 토지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관련 초청연수, 2024년 베트남 온라인 NPL 거래

플랫폼 고도화 등 총 3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과제는 사전타당성 및 컨설팅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5년간 후속사업 추진현황]

국가 (년도)	과제명 (수요기관명)	후속사업 추진현황
베트남 ('24)	온비드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베트남 온라인 NPL 거래 플랫폼 고도화사업 ('25~'26/187만불(≒25억)/KOICA)
파라과이 ('22)	토지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MP 수립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부 ODA 초청연수 ('23/1억 5천/국토부)
콜롬비아 ('21)	콜롬비아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콜롬비아 반부패신고시스템 구축사업 ('25~'27/540만불(≒75억)/KOICA)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이와 관련해서 2024년도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KOICA 공공협력 사업으로 제출 예정이거나 부처 ODA 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동 내역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과제는 대부분 컨설팅이나 사전 타당성 조사로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단계에 해당되므로, 후속사업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임.

예를 들면, 2023년 탄자니아 도로명주소 현대화 과제의 경우, 후속사업으로 행정안전부 ODA 사업으로 신청되었으나 미선정되는 등 수요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예산투입과 사업의 성과관리가 연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해외진출 기반조성 사업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과제 선정에 있어 민간과 연계를 통해 후속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수요기관의 과제 단계별 후속조치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부처 자체 ODA 사업 시 동 내역사업과 연계를 통해 내실 있게 수행해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1933-307)

○ 내역사업인 ‘범정부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추진’은 세목조정을 통해 당초 국회가 심사하지 않은 예산 미반영 사업이 추진된바, 향후 행정안전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세목조정을 통해 부족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라도 집행가능성에 비해 과도한 예산조정이 이루어져 불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사업은 정부혁신추진기반구축, 정부혁신 확산·홍보, 정부혁신 평가·컨설팅, 공공서비스디자인과제운영, 범정부 협업활성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방행정혁신역량강화, 조직문화 개선 범정부 확산, 범정부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추진, 2030자문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4억 6,500만원 중 42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4,420	45	±330	-	4,465	4,241	-	224	5,492
정부혁신추진 기반구축	1,278	-	-	-	1.278	1,227	-	51	1,278
정부혁신확산·홍보	887	36	±70	-	923	901	-	22	1,157
정부혁시평가·컨설팅	359	-	-	-	359	355	-	4	359
범정부 협업 활성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153	-	-	-	153	145	-	8	138
공공서비스 디자인과제운영	300	9	-	-	309	305	-	4	300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213	-	-	-	213	210	-	3	213
조직문화 개선 범정부 확산	95	-	-	-	95	81	-	14	95
2030자문단 운영	67	-	±13	-	67	63	-	4	67
범정부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추진	430	-	±247	-	430	325	-	106	109

나. 빈번한 세목조정을 통해 자의적 예산집행 지양 필요

□ 내역사업인 ‘범정부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추진’은 기관 간 모순되거나 관례적인 답습 등 불합리한 행정·민원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행정·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억 3,000만원 중 3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동 내역사업 예산액의 57.4%에 달하는 2억 4,7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를 받지 않은 과제를 임의로 추진한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 신규 추진 집행사례를 살펴보면, 정책연구비로 ‘행정서비스 이용, 수급의 사각지대 유형 연구’,[42] 일반용역비로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감수’, 일반수용비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홍보영상 광고’ 등을 각각 추진하였음.

42) 「행정서비스 이용, 수급의 사각지대 유형 연구」, 2024.3.19.~2024.7.16., (사)한국정책학회, 45,454,540원, 제한경쟁

[2024년 예산조정을 통한 신규 추진 vs 예산계획 미집행 내역]

세목조정 비목(코드)	신규 추진	예산계획상 미집행
일반수용비 (210-01목)	· 제도혁신 정책화 우수사례 영상 (22백만원)	-
일반용역비 (210-14목)	·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감수 (163백만원)	· 제도혁신 정책화 우수사례 영상 등 제작(50백만원)
일반연구비 (260-01목)	-	· 240백만원(총액계상)
정책연구비 (260-02목)	· '행정서비스 이용, 수급의 사각지대 유형 연구'(45백만원)	· 예산 미편성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기획단[43](한시조직)이 제안한 정책연구 수행,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홍보영상 제작 및 정부광고비 지급을 위해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세목조정으로 증액된 정책연구비 중 1억 3,000만원을 다시 일반연구비로 세목조정(2024.4.30.)하였다가 다시 이를 일반용역비로 전용(2024.5.3.)하고, 일반수용비는 세목조정 결과 증액된 금액(700만원)보다 많은 불용액(1,000만원)을 발생하였으며, 세목조정으로 증액된 정책연구비 1억 1,000만원의 59.1%에 해당하는 금액(6,500만원)도 불용처리된 점을 감안할 때,

43)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총리훈령, '23.4.4.)에 따라 설치된 한시조직으로서, 기관 간 모순되거나 현실과 괴리된 제도·서비스를 조사·분석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등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정비·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함.

세목조정을 통해 추진한 사업들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필요성 및 시급성이 미흡해 보임.

[2024회계연도 세목조정·전용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목-세목	금액	~으로 목-세목	사유
세목조정 (1.31.)	260-01	240	260-02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세목조정
세목조정 (4.30.)	260-02	130	260-01	민원서식 다국어 번역 용역 추진을 위해 세목조정
전용 (5.3.)	260-01	130	210-14	민원서식 다국어 번역 추진을 위해 일반연구비를 일반용역비로 전용
세목조정 (12.11.)	210-07	7	210-01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홍보영상 제작 및 정부광고비 지급

자료 : 행정안전부

[2024회계연도 세목조정 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목-세목 코드	목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210-01	**일반수용비**	75	75	-	7	82	71	-	**10**	19
210-07	임차료	24	24	-	△7	17	15	-	2	5
260-01	일반연구비	240	240	-	△240	-	-	-	-	62
260-01	**정책용역비**	-	-	-	110	110	45	-	**65**	-

자료 : 「2024회계연도 공통요구자료(Ⅱ-1)」. 행정안전부, 744쪽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세목조정을 통해 당초 국회가 심사하지 않은 예산 미반영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세목조정을 통해 부족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집행가능성에 비해 과도한 예산조정이 이루어져 불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047-500),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2031-504)

○ 정부24 알림서비스를 다른 세부사업의 국민비서 예산을 사용하여 당초 예산액의 44.4%(1억 7,300만원)를 불용처리한 것은 국민비서 시스템에 정부24를 연계하면서 알림 발송 관련 예산을 중복·편성한 데 기인하고 국회가 심사·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시 중복되는 예산 항목을 조정·편성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및 국민비서 등 대국민 알림서비스와 개별기관의 알림서비스를 상호 연계 시 행정안전부와 개별기관 간 중복 알림을 방지하고 알림 발송 채널의 통합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사업은 정부24 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범정부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정부24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SW 유지관리, 서비스·콘텐츠 현행화 및 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 정부24 안내·상담 헬프데스크(콜센터) 및 교육과정 운영, 정부24 운영 관련 공공요금 납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71억 3,600만원 중 157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운영	16,251	-	885	-	17,136	15,793 [15,793]	1,022	321	24,999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구축	8,270	-	885	-	9,155	8,040 [8,040]	1,022	93	13,330
통합포털 유지보수 및 운영	5,280	-	-	-	5,280	5,257 [5,257]	-	23	7,664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산	2,104	-	-	-	2,104	2,095 [2,095]	-	9	3,031
행정서비스 통합운영지원	597	-	-	-	597	401 [401]	-	196	674
통합창구 대상기관 연계지원	-	-	-	-	-	-	-	-	300

□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국민비서 운영,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및 개선,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정부 디지털지갑 서비스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NIA에 출연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99억 8,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9,984	-	-	-	9,984	9,984 [9,304]	-	-	11,605
국민비서 운영	2,584	-	-	-	2,584	2,584 [2,549]	-	-	2,917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및 개선	744	-	-	-	744	744 [738]	-	-	744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지원	100	-	-	-	100	100 [93]	-	-	100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484	-	-	-	484	484 [74]	-	-	69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3,376	-	-	-	3,376	3,376 [3,346]	-	-	5,313
정부 디지털지갑서비스 구축	2,696	-	-	-	2,696	2,696 [2,504]	-	-	2,462

나. ‘정부24’ 및 ‘국민비서’의 알림 발송 예산 중복편성

□ 내역사업인 ‘행정서비스통합 운영지원’은 정부24 운영, 행정서비스 통합추진단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5억 9,700만원 중 4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비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210-02목)의 집행률은 55.6%에 불과한바, 이는 동 내역사업의 집행률(67.2%)에 못미치는 수준임.

[2024년도 행정서비스 통합운영지원 사업의 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행정서비스 통합운영지원	597	597	-	597	401 [401]	597	401 [401]	196	67.2
일반수용비 (210-01목)	87	87	-	87	79 [79]	87	79 [79]	8	90.8
공공요금및제세 (210-02목)	390	390	-	390	217 [217]	390	217 [217]	173	55.6
특근매식비 (210-05목)	10	10	-	10	3 [3]	10	3 [3]	7	30.0
임차료 (210-07목)	21	21	-	21	20 [20]	21	20 [20]	1	95.2
기타운영비 (210-16목)	6	6	-	6	4 [4]	6	4 [4]	2	66.7
국내여비 (220-01목)	36	36	△1	35	35 [35]	35	35 [35]	-	97.2
국외업무여비 (220-02목)	-	-	1	1	1 [1]	1	1 [1]	-	100.0
관서업무추진비 (240-02목)	20	20	-	20	20 [20]	20	20 [20]	-	100.0
직책수행경비 (250-02목)	27	27	-	27	22 [22]	27	22 [22]	5	81.5

자료 : 행정안전부

□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 내역사업의 공공요금 집행액은 매년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해 왔고, 이러한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1.3%(8,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44)]

[최근 5년간 행정서비스통합 운영지원(내역사업)의 공공요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6월말 기준
예산액	250백만원	300백만원	390백만원	390백만원	473백만원
집행액	264백만원	331백만원	413.5백만원	217백만원	103백만원
비고	14백만원 세목조정*	31백만원 세목조정*	23.5백만원 세목조정*	173백만원 불용	-

자료 : 행정안전부

□ 2024년도 공공요금 불용사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신규회원 가입이 둔화[45)]되고,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 수단을 기존 장문메시지(단가 26.4원)에서 알림톡(4.95원)으로 전환에 따른 차액 발생, 본인확인(KCB) 모듈 보안취약점 발견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약 3개월)으로 인한 비용 감소 등이라고 설명함.

□ 하지만 2024년도 공공요금 예산액의 44.4%에 해당하는 1억 7,300만원이 불용된 주요 원인은 다른 세부사업 '지능형 서비스 확대

44)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국민비서와 연계시킨 2023년 하반기(6월~12월)의 국민비서를 통한 이용실적을 토대로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국민비서로 대체될 수 있는 정부24 알림서비스 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24 알림서비스 예산을 증액 편성함.

45) 정부24 회원 증가 추이: ('21년) 1,733만명 → ('22년) 1,961만명(228만명↑) → ('23년) 2,225만명(264만명↑) → ('24년) 2,370만명(146만명↑)

및 운영(정보화)(2031-504)'의 내역사업인 '국민비서 운영'[46]에서 2억 3,100만원이 정부24 알림 발송 이용료에 충당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이는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국민비서 운영'의 공공요금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정부24 알림서비스가 제공된 2023년 및 2024년도 공공요금 실집행액(실집행률)은 8억 8,100만원(91.9%) 및 8억 800만원(98.7%)로, 2022년도 5억 1,200만원(50.9%)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나타냄.

[2022년~2024년 '국민비서 운영'의 공공요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2022	국민비서 운영 (350-02목)	1,610	-	1,610	1,610 [1,382]	1,610	1,610 [1,382]	-	85.8
	-공공요금(사업비)	1,006	-	1,006	1,006 [512]	1,006	1,006 [512]	-	**50.9**
2023	국민비서 운영 (350-02목)	2,842	-	2,842	2,842 [2,734]	2,842	2,842 [2,734]	-	96.2
	-공공요금(사업비)	959	-	959	959 [881]	959	959 [881]	-	**91.9**
2024	국민비서 운영 (350-02목)	2,584	-	2,584	2,584 [2,549]	2,584	2,584 [2,549]	-	98.6
	-공공요금(사업비)	819	-	819	819 [808]	819	819 [808]	-	**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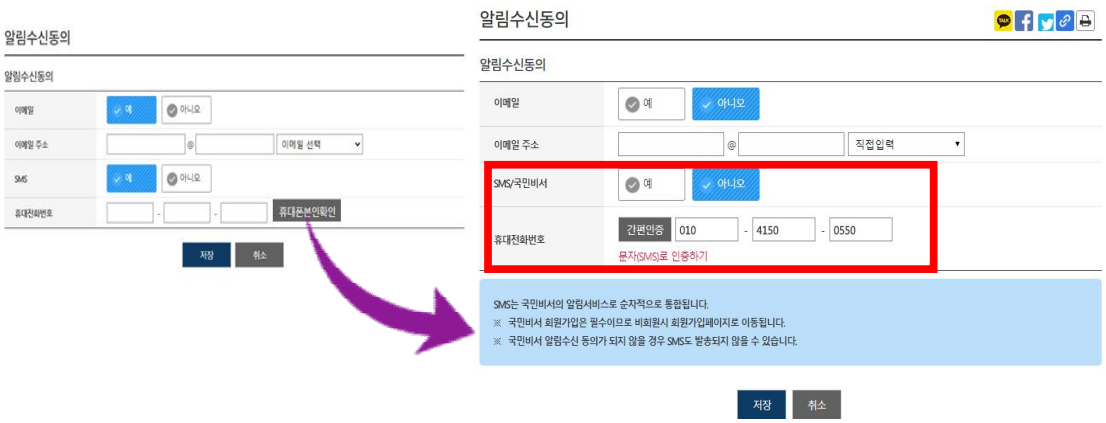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46) 내역사업인 '국민비서 운영'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국민이 익숙한 민간채널(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로 알림서비스를 제공 하고 궁금한 행정정보를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는 상담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NIA에 출연하여 수행되고 있고, 2024회계연도 동 내역사업 예산액은 25억 8,400만원으로 국민비서 시스템 유지보수 9억 1,200만원, 국민비서 서비스 운영 16억 7,200만원으로 구성됨.

□ 행정안전부는 2023년 6월에 정부24를 포함한 67종 공공서비스, 예를 들어 경찰청의 교통범칙금/교통과태료 납부기한 안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서비스 등을 연계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정부24(민원신청, 보조금24) 이용자에게는 알림 수신 경로를 정부24 또는 국민비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47]

이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6월~12월) 및 2024년도에 정부24 사용자 중 국민비서로 알림을 수신한 건수는 각각 20,323천건 및 16,224천건인 반면, 정부24로 알림을 수신한 건수는 각각 2,579천건 및 6,186천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24 사용자 대다수는 국민비서를 통해 알림을 수신한 것을 알 수 있음.

47) 국민비서 알림수신동의 방법



자료: 행정안전부

【 2024년도 정부24 알림서비스 중 국민비서 vs 정부24 이용내역 】

(단위: 건, 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발송건수	단가	금액	발송건수	단가	금액
국민비서	전체	38,326,000		387,552,511	31,278,424		211,972,851
정부24	계	14,538,540		231,821,513	1,685,373		10,455,953
	장문(LMS)	7,415,956	26.4	195,781,238	73,029	26.4	1,927,966
	카카오톡	4,978,385	5.06	25,190,628	960,597	5.06	4,860,621
	네이버	2,144,199	5.06	10,849,647	724,776	5.06	3,667,367

주) '23년 국민비서 연계 알림 건수: 국민비서 총 76,976,800건 / 정부24 20,323,708건(23.6.~12.)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상반기에 국민비서를 통한 정부24 알림서비스 급증으로 국민비서 운영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7월부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메시지 발송서비스를 병행·이용하였고, 국민비서 비회원 또는 정부24 비회원에 한해서는 정부24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이처럼 정부24 알림서비스를 위해 유사한 목적의 다른 세부사업 예산을 사용하고 본예산의 44.4%를 불용처리한 것은 정부24 알림 발송에 필요한 예산을 소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한 것이고, 국회가 심사·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알림서비스를 국민비서 예산으로 사용하고 당초 예산액의 44.4%를 불용하여 국회가 심사·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시 중복되는 예산 항목은 조정·편성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다. 개별기관의 대국민 알림서비스와 연계 시 중복 알림 방지 및 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국민비서 및 혜택알리미에서는 정부 지원서비스를 민간채널(앱) 및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민간채널(앱)에는 (2020년) 네이버, 카카오, 토스에서 (2021년) 국민은행, 국민카드, 신한은행, 신한페이, (2022년) 페이코, 하나원큐, 하나페이,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등 다양함.

□ 행정안전부 소관 대국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별 추진은 소관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데, 정부24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고, 국민비서 및 혜택알리미는 NIA에 출연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알림 발송 소요비용은 운영내용 및 알림방식에 따라 이용단가가 정해지고 있는바,

2024년도 정부24[48]을 이용한 대국민 알림 발송은 카카오톡 4.95원, SMS 8.03원, 문자 26.4원(LMS)이 적용된 반면,

국민비서를 이용한 알림 발송은 카카오톡 및 네이버 5.06원, 문자 26.4원이, 혜택알리미는 이용요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48) 【정부24 대국민 알림 발송 연도별 단가】

연도	SMS	LMS	카카오톡
2020~2022	8.03원	26.40원	-
2023·2024	8.03원	26.40원	4.95원

자료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및 혜택알리미의 채널별 이용현황 】

(단위: 건, 원)

구분	채널명	누적 건수	단가	누적 요금	제공정보	비고
국민비서	카카오톡	99,157,319	5.06	505,632,379	행정정보	개시일~'24.12월
	네이버	87,590,841		371,164,870		
	문자	44,995,309	26.4	1,203,676,040		
혜택알리미	A은행	2,987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황변화에 따른 정부 혜택 알림	민간에 서비스 개방
	B은행	8,539				
	C은행	37				
	D은행	162				
	E사	-				

주) 문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더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대국민 알림서비스는 개별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국민 알림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24 또는 국민비서와 별개로 기존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수신으로 인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행정안전부 및 해당 기관에서는 자칫 중복 발송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보임.

예를 들어 국민비서[49]의 경우 2025년 4월 기준 해외직구 물품통관 안내 등 89종 알림서비스[50]와 연계하고 있는데, 일부 해당 기

49) 국민비서 가입자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339만, 2022년 1,525만, 2023년 1,626만, 2025.4월 기준 1,728만명으로 5년 새 29.1% 급증함.

50) 국민비서 알림종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8종, 2022년 52종, 2023년 67종, 2025.4월 기준 89종으로 5년 새 10.1배 증가함. 2024년도 국민비서 이용량이 많은 상위 5위 알림서비스는 정부24 민원처리 알림(3,315만 건), 건강검진 대상 기간 안내(2,475만 건),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

관들에서도 별개 시스템을 통해 앱·문자·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림을 제공하고 있어 유사한 알림이 중복적으로 발송될 우려가 있는 것임.[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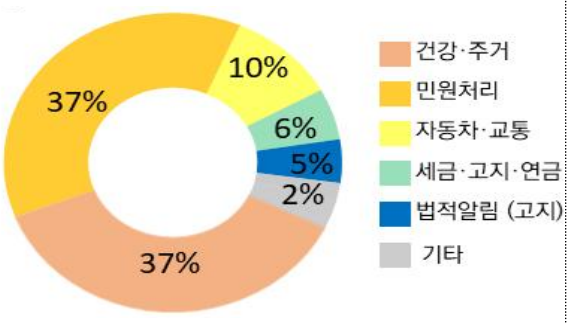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부24, 국민비서 등 대국민 알림서비스에 개별기관의 대국민 알림서비스 연계 시 행정안전부와 개별기관 간 중복 알림을 방지하고 알림 발송 채널의 통합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역(1,581만 건), 교통과태료 납부기한(423만 건), 전기요금 납기 안내(342만 건)임.

서비스별 알림건수 TOP5('24년)



분야별 알림 현황('24년)



자료 : 행정안전부

51) 실제 경찰청 과태료 고지서가 경찰청 및 국민비서를 통해 중복적으로 발송된 데 대한 국민제안이 제출된 바 있었음(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참조, 2023.8.).

8.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2031-504)

○ 내역사업인 “공공분야 인공지능정책 수립 및 제도운영”은 당초 ISP 수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출연하였다가 사업기간 중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ISP 결과에 부합하게 사업계획을 구체화, 유관기관 간 사전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과다한 이월이 발생한바, 향후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정보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화예산안 편성 시 유관 기관 간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가. 개 요

□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국민비서 운영,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및 개선,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정부 디지털지갑 서비스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NIA에 출연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99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	9,984	-	-	-	9,984	9,984 [9,304]	-	-	11,605
국민비서 운영	2,584	-	-	-	2,584	2,584 [2,549]	-	-	2,917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및 개선	744	-	-	-	744	744 [738]	-	-	744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지원	100	-	-	-	100	100 [93]	-	-	100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제도운영	484	-	-	-	484	484 [74]	-	-	69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3,376	-	-	-	3,376	3,376 [3,346]	-	-	5,313
정부 디지털지갑서비스 구축	2,696	-	-	-	2,696	2,696 [2,504]	-	-	2,462

나. 정보화예산안 편성 시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할 필요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출연사업의 특성상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출연연도 사업과제 6건 중 다음연도 이월과제가 3건(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제도운영,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정부디지털지갑 서비스 구축)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음.

[2024년 이월과제별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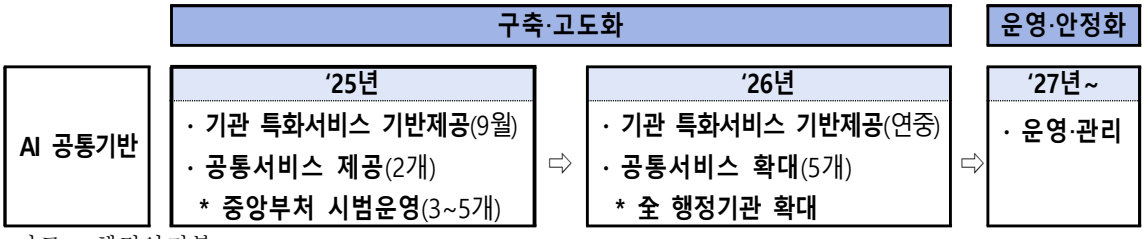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A)	예산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예산현액	집행액(B)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제도운영	**484**	**484**	**74**	**484**	**74**	**410**	**-**	**15.3**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3,376	3,376	3,346	3,376	3,346	30	-	99.1
정부 디지털지갑 서비스 구축	2,696	2,696	2,504	2,696	2,504	192	-	92.9

□ 이 중 내역사업 “공공분야 인공지능정책 수립 및 제도운영”은 공공분야 민원상담 원천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학습데이터(튜닝용)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모델 개발용 데이터 구축 및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교부액 4억 8,400만원 중 7,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집행률은 15.3%에 불과함.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술·정책 현황에 맞게 사업 추진내용 구체화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른 세부사업인 “전자문서 소통시스템(정보화)”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사업’[52]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동 내역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ISP가 수립(2024.10.31.)된 후인 11월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본사업계약은 출연연도를 초과한 2025년 1월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됨.

52)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은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전용 공통 인프라 및 개발환경을 구현하고, 민간 AI 모델 도입, 데이터 구축 등 공공 AI 서비스 제공, 기관별 데이터를 융합한 특화서비스 기반 제공, 민간 AI 모델 사용에 따른 보안정책 및 과금체계 마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중 **범정부 AI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 문서 초안 작성(정책 기획보고서, 보도자료 등) 및 연관자료 검색(부처별 종합계획, 법령, 연구자료 등)의 2개 공통서비스를 시범 제공(중앙부처 3~5개)을 거쳐 **2026년도에 민원상담 지원, 전문 통·번역 등 5개 공통서비스**(全 행정기관 확대)가 확대 제공되는 계획임.



자료 :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 계획 vs 추진경과]

구분	계획	추진경과
BPR·ISP 조달청 입찰공고	-	2024.1.31.~2024.3.6. * 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ISP
정보화전략계획(ISP) 계약 완료 및 착수	-	(제안평가) 2024.3.8. (ISP 수립) 2024.4.26.~10.31.
관련 기관 협의	2023.5.~12.	2023.5.31.~2024.9.11. * 민간기업(SKT·LG), 권익위 등과 협의
사업계획 구체화	2024.3. 최종계획	2024.11.20. 최종계획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2024.4.	2024.11.27.
조달청 입찰공고	2024.5.~6.	2024.12.2.~2025.1.14.
사업 계약	2024.6.	2025.1.23.
사업 종료 및 잔금지급	(사업종료) 2024.9. -	(사업종료) 2025.4.23. (잔금지급) 2025.4.29.

자료 : 행정안전부

□ 이렇듯 행정안전부가 당초 계획에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교부 후 해당 사업의 ISP 수립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연도 중에 사업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사업계획을 미흡하게 수립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동 내역사업은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원천데이터 제공 등 협조가 요구되므로 본사업에 앞서 기관 간 사전협의를 완료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사업예산을 출연기관에 교부한 이후에 기관 간 협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9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53]를 초래한 것은

「전자정부법」상 정보화사업의 연계 및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과다한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정보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화예산안 편성시 유관 기관 간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53)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문화재청, 농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17개 기관 상담콜센터의 민간클라우드 IaaS 인프라 구축, 상담사용 AI기반 민원상담 도움 서비스 제공, 통합콜센터 상담AP시스템(공통, 특화)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AI기반 통합콜센터 구축사업’(114억 2,800만원)을 2024.4.3.부터 2024.10.30.까지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야 행정안전부와 동 내역사업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됨.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2046-502)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다음연도 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4분기에 계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출연금 교부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전자정부법」상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근거가 미흡하고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불일치한 문제, 국가중점데이터 사업과 유사한 측면 등이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전국통합데이터 위탁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필요하다면 「전자정부법」상 전문기관 제도를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데이터 및 국가중점데이터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사업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처리, 사무국 운영 등 민·관 협의체 운영 추진,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융합·분석, 공동활용 등의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 설계 추진,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창업·성장 패키지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49억 2,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44,925	-	-	-	44,925	44,925 [39,606]	-	-	41,634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출연)	1,452	-	-	-	1,452	1,452 [1,307]	-	-	1,640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현(출연)	6,819	-	-	-	6,819	6,819 [6,165]	-	-	5,120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출연)	7,580	-	-	-	7,580	7,580 [6,827]	-	-	6,316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출연·위탁)	26,410	-	-	-	26,410	26,410 [22,906]	-	-	26,410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출연)	1,784	-	-	-	1,784	1,784 [1,608]	-	-	1,268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출연)	880	-	-	-	880	880 [793]	-	-	880

나. 다음연도 이월 과다 해소 및 조기집행 필요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집행(집행률 88.2%)은 출연사업[54]의 특성 및 2024년도 재정당국의 선금지급한도 확대[55]시책 등으로 양호해 보이나,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이월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사업과제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62개 사업과제 중 34개 이월(54.8%), 2021년도 70개 사업과제 중 47개 이월(67.1%), 2023년도 85개 사업과제 중 14개 이월(16.5%), 2024년도 79개 사업과제 중 43개 이월(54.4%) 등 과제 이월률은 16.5%~67.1%로 상당 규모의 사업과제들이 출연된 연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

54) 동 사업은 5개 내역사업의 사업출연금(350-02), 1개 내역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320-02) 등으로 구성됨.

내역사업명	비목	예산액(백만원)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사업출연금(350-02)	1,452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현	사업출연금(350-02)	6,819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출연금(350-02)	23,622
	민간위탁사업비(320-02)	2,788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사업출연금(350-02)	7,580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직접 수행	1,784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	사업출연금(350-02)	880

55)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안내”에 따라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가 기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 시행됨(※ 2024.12.31.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최근 5년간 사업과제 이월현황]

회계연도	사업과제수	과제 완료연도						과제 이월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	62	28	34	-	-	-	-	54.8
2021	70	-	23	47	-	-	-	67.1
2022	81	-	-	81	-	-	-	-
2023	85	-	-	-	71	14	-	16.5
2024	79	-	-	-	-	36	43	54.4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구체적으로 2024년도 분기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하반기에 전체 사업과제(79건)의 91.1%, 특히 4분기에 전체의 67.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분기별 계약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계약과제수 (이월과제)	1 (-)	6 (-)	19 **(16)**	53 **(27)**	79 (43)
계약금액 (이월계약)	1,455 (-)	8,663.1 (-)	17,004 **(16,593)**	11,619 **(9,028)**	38,741.1 (25,621)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국가재정법[56]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

56)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

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예외적으로 이월을 허용하고 있고 적정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의 불가피성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겠으나, 이처럼 매년 사업과제들이 완료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 기관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물량을 계상하고 편성된 예산액을 모두 교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이 출연된 연도에 완료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과제 선정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4분기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출연금 교부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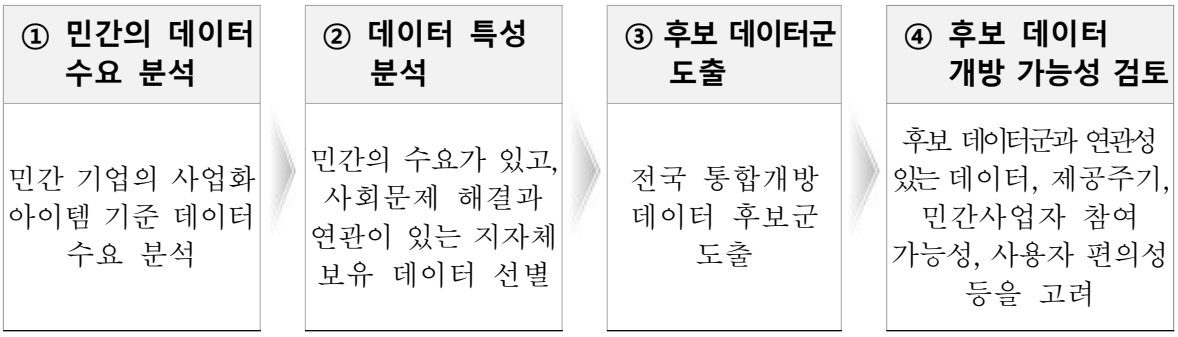
다. 전자정부법상 전문기관 제도 활용 방안 강구 및 ‘국가중점데이터사업’과 통합 필요 등

□ 내역사업인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는 국민수요기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신산업분야 핵심 데이터 발굴 개방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NIA에 출연(236억 2,200만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27억 8,800만원)하고 있음.

□ 이 중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이하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지자체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개방형태(상세 항목·내용, 서비스 방식 등) 등이 다양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신규사업임.

□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협약을 통해 1년간 추진되고, 사업의 범위는 국민 선호도 조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방 후보과제의 발굴 및 개방과제 선정, 통합개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임. 다만, 서버 등 인프라 구축은 2023년도에 국가중점데이터 사업예산을 사용하여 기추진된 것으로 파악됨.

【 통합개방 후보 데이터(안) 도출 절차 】



자료 : 행정안전부

□ 전국통합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적 위탁근거가 미흡한 문제,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불일치한 문제, 국가중점데이터 사업과 통합 필요, 전자정부법상 전문기관 제도 활용 필요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보임.

「전자정부법」 제71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57]에서 열거되고 있는바,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지역정보화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80개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서버 구축이 필요한바 지역정보화사업에 포함되며, 실제 2023년도에 ‘국

57)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중점데이터 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2억 2,100만원을 돌려 사용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웹서버 1대, 중계서버 1대, 게이트웨이서버 2대, 수집서버 2대, 서비스서버 2대, DB서버 2대, 기타 4대를 구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도 사업예산은 시스템 구축이기보다는 대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개방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제·가공하여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기 위한 비용, 즉 지자체가 보유하는 데이터 중 선호도가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파일[58] 또는 오픈API[59])하여 개방하는 데 소요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내용을 전자정부법상 지역정보화사업의 범위(정보시스템 구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전국통합데이터 개방확대 위탁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필요하다면 「전자정부법」상 전문기관 제도를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행정안전부는 전국통합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회계연도와 사업수행기간이 불일치한 문제가 있는바, 사업관

58) 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
59)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7억 8,800만원 중 14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집행률은 5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전국통합데이터 사업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위탁기간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전국통합데이터 개방확대	2024.5.~2025.4. (12개월)	2,788	1,491	1,297

자료: 행정안전부

업무위탁 협약 체결이 지연된 사유는 사업실행계획 수립이 늦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에 대국민 설문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민간업체 인터뷰, 시도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회계연도를 초과한 예산집행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계획 수립 시 직전 연도의 사업실적 평가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회계연도와 사업수행기간이 상당히 불일치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특성에 부합하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의 목적, 개방과제의 선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가중점데이터 사업과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중점데이터 사업은 동 내역사업 중 NIA 출연예산(236억 2,2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절차는 매년 민간·기업 등 수요조사를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타당성 심의위원회[60]에서 개방 대상을 선정하여 표준화를 거쳐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2024년 말 기준 총 217개 데이터가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됨.[61]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인 공영자전거 통합데이터(서울·대전·세종)를 시작으로 2024년 공영자전거 대여현황(광역 4개, 기초 7개),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보(광역 5개, 기초 75개), 공공도서관 열람실 가용 좌석 확인서비스(광역 1개, 기초 20개), 공

60) 국가중점데이터 타당성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후보과제의 **국가중점데이터로서의 부합 여부, 데이터 개방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많은 활용이 예상되는지, 활용 서비스와 데이터와의 상호 연관성이 높은지 등을 검토,** 개방과제를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61) **【국가중점데이터 주요 개방 현황】**

연번	연도	개방데이터
1차	**'15~'16**	■ 건축물정보, 부동산실거래가정보, 상권정보 등 33개 데이터
2차	**'17~'19**	■ 공간융합정보, 의료영상정보, 다국어음성정보 등 63개 데이터
3차	**'20~'22**	■ 자율주행통합관제, 119구급정보, 산재심사결정문 등 73개 데이터
4차	**'23~'25**	■ 여권진위확인 서비스,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 30개 데이터('23) ■ **법령유권해석, 헌법재판소 판례, 교통카드 이용내역, 여객선 교통정보, 홍수위험지도 등 19개 데이터('24)**

자료 : 행정안전부

영 물품보관함 대여 현황(광역 1개, 기초 11개) 정보를 개방하였는데, 추진절차는 국민수요 조사 등을 통해 개방과제를 발굴하고, 과제 보유기관인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타당성 검토 및 개방과제를 선정 후 표준화(오픈 API)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음.

전국통합데이터 및 국가중점데이터는 모두 수요자인 국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개방과제를 발굴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같고, 국민수요 조사를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절차도 서로 유사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함.[62)]

【전국통합데이터 vs 국가중점데이터】

구분	전국통합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목적	공공데이터 활용성 증대 및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개방 관리로 민간서비스 창출** 도모	**개방·활용 시**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 데이터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품질개선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
제공 절차	수요조사(국민, 기업 등) ⬇ 의견수렴(기업, 전문가 대상) ⬇ **지자체 수요조사 및 개방과제 선정** ⬇ 사업추진(**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요조사(국민, 기업 등) ⬇ **타당성 심의위원회 검토(전문위원)** ⬇ 후보과제 확정 ⬇ 사업추진(NIA) ⬇

62) 국가중점데이터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제2208034호, 2025.2.10.)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

구분	전국통합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 전국통합데이터 이용(국민, 기업 등)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 국가중점데이터 이용(국민, 기업 등)
실적	5건(2023·2024)	217건(2015~2024)
제공 형태	**파일**(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또는 **오픈API** *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 최근 국가중점데이터의 오픈API 제공 확대 노력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따라서 전국통합데이터 및 국가중점데이터는 데이터 생성·보유기관이 개방여부를 결정하는 공공데이터와 달리 국민 수요를 통해 개방과제를 선발하고 데이터 제공방식도 오픈API로 유사하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데이터 및 국가중점데이터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전자정부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바,[63]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한

63)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업무**
※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2025년 현재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64]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전문기관에 지역정보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반영하여 전문기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4) 「전자정부법」 제71조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조폐공사(모바일신분증 관련)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10.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047-500)

○ 내역사업인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구축’은 다수 정부부처 시스템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예산도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행정안전부가 사업수행단계에 이르러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예산안 편성 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행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ISP 완료 이후 요구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사업은 정부24 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범정부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정부24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SW 유지관리, 서비스·콘텐츠 현행화 및 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 정부24 안내·상담 헬프데스크(콜센터) 및 교육과정 운영, 정부24 운영 관련 공공요금 납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71억 3,600만원 중 157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운영	16,251	-	885	-	17,136	15,793 [15,793]	1,022	321	24,999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구축	8,270	-	885	-	9,155	8,040 [8,040]	1,022	93	13,330
통합포털 유지보수 및 운영	5,280	-	-	-	5,280	5,257 [5,257]	-	23	7,664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산	2,104	-	-	-	2,104	2,095 [2,095]	-	9	3,031
행정서비스 통합운영지원	597	-	-	-	597	401 [401]	-	196	674
통합창구 대상기관 연계지원	-	-	-	-	-	-	-	-	300

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내역사업인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구축’은 국민이 한 곳에서 각종 정부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91억 5,500만원 중 80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내역사업의 비목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4년 7월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사업의 임차료(2억 700만원) 및 자산취득비(6억 7,800만원) 등 총 8억 8,500만원이 전용 증액되었고,[65] 일반연구비(260-01목)는 예산액(50억 7,000만원)의 20.2%에 해당하는 10억 2,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65) **[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7.5.)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 (2036-503)	210-07	207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2047-500)	210-02	민간클라우드 사용 부족 재원 마련
		430-01	678			

자료 : 「2024회계연도 공통요구자료(Ⅱ-1)」. 행정안전부, 1159쪽

[2024년도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구축 사업의 비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구축	8,270	8,270	885	9,155	8,040 [8,040]	9,155	8,040 [8,040]	1,022	93
공공요금및제세 (210-02목)	-	-	885	885	840 [840]	885	840 [840]	-	45
일반연구비 (260-01목)	5,070	5,070	-	5,070	4,048 [4,048]	5,070	4,048 [4,048]	1,022	-
자산취득비 (430-01목)	3,200	3,200	-	3,200	3,152 [3,152]	3,200	3,152 [3,152]	-	48

□ 전용 사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을 당초 G-클라우드 전환으로 계획하였다가 민관협력형(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클라우드 전환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민간클라우드 이용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G-클라우드에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사업'에 편성된 G-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차료 2억 4,500만원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시스템의 분석기능강화[66]를 위한 자산취득비 6억 7,80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민간클라우드 이용료로 사용되었고, 일반연구비(50억 7,000만원)는 사업기간 확

66)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동 사업은 일상생활 속 모든 안전 및 생활불편 요인을 신고·처리·분석하는 지능형 안전신문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3032-501)의 내역사업임.

보를 위해 10억 2,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같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 첫째, 동 내역사업은 다수 부처의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에 비해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등 총사업비 규모가 높고, 이로 인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예산안 수립 단계에서는 ISP(정보화전략계획) 중간 결과를 반영하여 G-클라우드로 결정하였다가 사업수행단계인 2024년 3월에 이르러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ISP(정보화전략계획) 수행(2023.4월～10월)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ISP 완료 이후에 요구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도입 방침은 ISP 수행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ISP 결과에 따르면, 1안 G-클라우드, 2안 민관협력형 클라

우드의 도입 방안으로 검토되었고, 2024년도 예산도 G-클라우드 도입을 전제로 편성되었음.[67]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사업에 앞서 민관협력클라우드존에 입주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 선정 및 CSP 컨테인먼트 할당 등 사전준비에 8개월이 소요됨으로써 1차 구축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고, CSP의 서버 등 인프라 구축 및 검증과 1차 구축사업이 병행 추진된 것으로 파악됨.

【2024년도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추진 일정】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12">2024년</th></tr>
<tr><th>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h>11월</th><th>12월</th></tr>
<tr><td>• '24년 1차 구축사업 ('24년 예산 - 82.7억 : 일반연구비 50.7억, 자산취득비-SW구매 32억)</td><td colspan="3"></td><td colspan="2">사전협의 등 정보화사업 준비</td><td colspan="2">조달공고 및 사업자 선정</td><td colspan="5">분석, 설계 및 구축 ('24.8.1~'25.3.29.)</td></tr>
<tr><td>• '24년 민간클라우드 이용 (전용 8.85억)</td><td colspan="2"></td><td>CSP* 낙찰 (3.29)</td><td colspan="4">CSP* 견적의뢰 이전용 및 사업준비 ('24.4월~7월)</td><td colspan="5">인프라 구축 및 검증 ('24.8.30~12.31)</td></tr>
</table>

자료 : 행정안전부

□ 둘째,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의 경우 시스템의 장애, 보안 문제 등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민관 협조체계가 원

67) 행정안전부 '24년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사업계획'(2024.3월)에 따르면, 사업예산은 총 13,170백만원으로, 개발용역비 5,070백만원(감리비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399백 포함), 상용SW 3,200백만원, HW 및 시스템SW 4,900백만원(HW는 G클라우드 도입 전제)임.

활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대응 및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할 및 책임을 구체화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G-클라우드는 초기구축(2년) 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보다 비용부담이 있고 이후에는 유지보수 비용만 소요되는 반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는 매년 운영이용료 및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고 물가상승률 및 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할 경우 누적비용에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이용료가 G-클라우드를 앞서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 집행에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G-클라우드 노후장비 교체기간을 7년으로 감안할 때, 8년 차에는 동등 수준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68]

하지만, 동 내역사업의 ISP 수립결과에 따르면, G-클라우드의 경우 초기 투자비 소요 대비 통합유지운영 체계 등에 따라 향후 예산절감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는 반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는 민간지원서비스 추가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지속적 장비 증설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 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68) 행정안전부는 7년 누적비용을 G-클라우드의 경우 22,442백만원,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의 경우 22,865백만원(물가상승률 및 사용량 등 미반영, 민간CSP 상면임대료 수익 고려)으로 추정하고 있음.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ISP 결과: 클라우드 방안별 '비용' 예시】

클라우드 방안별 비교 — 클라우드 도입 검토 방안별 특장점 검토 결과(1/2)

분류	(1안) G 클라우드	(2안) 민간클라우드_민관혼합형(PPP)
비용	• 초기 투자비 소요에 비해 통합유지운영 체계 등에 따라 향후 예산절감 효과 뛰어남 • 국정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유지운영 부담 감소효과 • 전기료, 공조 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	• 계약한 PPP 인프라 사용량 만큼만 월 비용(미터리빌링)으로 청구 • 민간지원서비스 추가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민간↔공공 연계 전용망 비용 발생 • 초기 구축 비용 최소화

자료 : 행정안전부

□ 넷째,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성 측면에서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PPP에는 3개 CSP[69](삼성SDS,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가 입주해 있어 공공기관들은 해당 사업자의 인프라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 향후 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 전환 등 관련 사업이 민간 CSP를 활용하기보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70]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PPP 수요기관에 '상'등급 업무만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PPP 이용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69)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보안기준에 따라 '상'에 해당하는 인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70) "공공 클라우드 산업 '정체'…주무 부처별 정책 혼선 탓", IT DAILY, 2024.11.30., "李정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공약 속 'PPP' 딜레마", 디지털데일리, 2025.6.9., "행안부 센터로 모이는 생성형 AI…민관협력형 클라우드 뜬다", 지디넷코리아, 2025.8.17. 등 참조

【지방행정국】

11. 지자체경쟁력지원(1139-307)

○ 중앙지방협력회의 예산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 및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법정 개최 기준에 따라 적극 운영하고,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은 중앙-지방 간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8억 3,600만원 중 46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을 이월, 1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자체경쟁력 지원	5,311	30	△505	-	4,836	4,635	55	146	6,410
중앙지방협력 회의 운영	1,297		△505	-	792	792	-	-	1,297

※ 자료: 행정안전부

나. 법정 개최 기준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적극 운영 필요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지방자치 발전,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4 회계연도에는 12억 9,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24년도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 장소 임차료로 1억 6,000만원(연 4회 개최, 회당 4,000만원 기준)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4회 개최를 전제로 책정되었음.[71)]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일반수용비(210-01)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자료인쇄 등(6,000천원)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4회 × 1,500천원)
임차료(210-07)	중앙지방협력회의 장소 임차비용(160,000천원) (중앙지방협력회의 장소 임차료 4회 × 40,000천원)
일반용역비(210-14)	중앙지방협력회의 행사대행 용역(1,100,000천원) (중앙지방협력회의 행사대행 용역 4회 × 275,000천원)
국내여비(220-01)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출장 비용(16,000천원) (협력회의 참석 등 4회×100명×40천원)
사업추진비(240-01)	중앙지방협력회의 간담회 비용(4,000천원) (간담회 등 4회×100명×37,500원)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실제 개최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2022년 2회, 2023년·2024년 각 3회) 연 4회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에

7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①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는 2억 2,600만원이 불용되고, 2023년에는 일부 예산이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전국 시·도 참여 자원봉사 행사' 추진 재원으로 전용되었음.

[최근 3년간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현황]

구 분	안건 목록	상정 기관
제1회 ('22.1.13. 청와대 영빈관)	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행정안전부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③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무조정실
	④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자치분권委
제2회 ('22.10.7. 울산시청)	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행정안전부
	②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법제처
	③「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행정안전부
	④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고용노동부
제3회 ('23.2.10. 전북도청)	①「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행정안전부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시군구協
	③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④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4대協
제4회 ('23.4.6. 부산 벡스코)	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	산업통상부
제5회 ('23.10.27. 경북도청)	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행정안전부
	②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산업통상부
	③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법제처
	④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교육부
	⑤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시도지사協
제6회 ('24.2.27. 청와대 영빈관)	① 의사 집단행동 대응	보건복지부
	②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	교육부
제7회 ('24.7.25. 충남도청)	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②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저출산고령委
	③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지방4대協
제8회 ('24.11.6. 강원도청)	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委
	②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중소벤처부
	③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지방4대協
	④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법제처 등
	⑤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 2024회계연도의 경우, 집행액은 7억 9,200만원으로 집행률이 61%에 불과하였고, 이 중 임차료 및 일반용역비 5억 500만원은 2024년 11월 대설에 따른 재난대책비로 긴급 전용되었음. 다만, 세 번째 회의가 11월 초에 개최됨에 따라 연내 네 번째 회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 상황이 없었더라도 일부 불용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임.

[2024회계연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편성 내역		집행 내역	
1,297		792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자료 인쇄 등	6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비용 및 임차료	11
중앙지방협력회의 장소 임차	160		
중앙지방협력회의 행사대행 용역	1,100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용역비	750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출장 비용	16	중앙지방협력회의 출장여비 및 간담회 비용	31
중앙지방협력회의 간담회 비용	15		

※ 자료: 행정안전부

□ 최근 3년간 중앙지방협력회의 예산 집행률은 35~61%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임차료 집행률은 2022년 12.5%, 2023년 37.5%, 2024년 3.1%로 매우 저조하여,[72] 예산편성 규모가 실제 회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72) 최근 3년간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16	-	16	2	-	14
2023년	16	-	16	6	-	10
2024년	160	△155	5	5	-	-

[최근 3년간 중앙지방협력회의 예산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2년	839	△320	293	226	34.9%
2023년	959	△346	592	21	61.7%
2024년	1,297	△505	792	-	61.1%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회의 장소로 청와대 영빈관이나 시·도청사를 활용하여 임차료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임차료는 실제 회의 개최 여건을 반영하여 과다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산의 불용이나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조속히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지방협력회의 예산은 매년 이·전용 및 불용이 반복되어, 사업계획과 집행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발전과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법령상 연 4회 개최 기준에 맞추어 적극 운영하고, 예산이 목적에 따라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치분권국】

12.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1131-315)

○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결과와 관련하여 ‘존치대상’ 사무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 결과와 연계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활동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 사업은 주민등록, 인감·본인서명 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통해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억 6,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	161	-	-	-	161	161	-	-	161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	161	-	-	-	161	161	-	-	161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감도장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73]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 인감등록 신고	● 해당 없음	●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 인증서 등 사전발급 필요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신청방법	● 발급기관 방문 ※ 일부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	● 발급기관 방문	● 발급사이트 접속
발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拇印)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拇印)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 상 확인

7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전자서명
관인	• 발급기관 날인	• 발급기관 날인	• 미날인
발급형태	• 문서형태	• 문서형태	• 전자문서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수요기관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 상 확인

※ 자료: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 (한자)	( )	서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 ] 부동산 매수자, [ ] 자동차 매수자		
용도 매도 용도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용도 매도 용도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용도 일반 용도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위임받은 사람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 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2016년부터는 5~6%대에서 정체되고 있음.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발급현황]

(단위: 건)

구 분	인감증명 (A)	본인서명			본인서명 발급률 (B/(A+B))
		본인서명 계 (B=C+D)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C)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D)	
2013	39,812,281	1,009,109	1,008,603	506	2.47%
2014	40,520,778	1,248,015	1,245,049	2,966	2.99%
2015	43,198,707	1,603,043	1,600,624	2,419	3.58%
2016	40,761,936	2,295,035	2,292,047	2,988	5.33%
2017	38,558,915	2,409,913	2,407,484	2,429	5.88%
2018	36,888,168	2,132,611	2,130,114	2,497	5.47%
2019	35,570,454	2,126,189	2,113,888	12,301	5.64%
2020	36,926,515	2,022,466	2,016,750	5,716	5.19%
2021	35,509,666	2,176,772	2,170,893	5,879	5.78%
2022	30,749,261	1,729,229	1,723,660	5,569	5.32%
2023	29,835,740	1,880,066	1,871,952	8,114	5.93%
2024	29,433,244	1,900,901	1,880,090	20,811	6.07%

※ 자료: 행정안전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저조한 발급실적과 관련하여 2020년 결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수요기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및 근거규정을 정비하도록 협의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2020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실적 개선	○ **[지적사항]** 2020년도 본인서명 발급률은 5.19%로,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도입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수요기관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발급 실적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	○ 수요기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및 근거 규정을 정비**하도록 협의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와 교육을 지속 추진** 중 ○ 인감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행정사, 법무사) 협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협조 요청** ○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과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해 나가고 있음

□ 또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 개선에 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현황 및 행정안전부의 홍보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제도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2012년과 2018년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계획한 정비 건수 대비 57%의 사무를 정비하는데 그쳤고, 2018년도에도 85%의 사무만이 정비되었음.

[2012년 및 2018년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실적]

(단위: 건, %)

연도	정비계획(A)	정비실적(B)	정비비율(B/A)
2012	1,732	1,002	57
2018	952	810	85

자료 : 행정안전부

□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2년과 2018년 정비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의 정비를 수행하면서, 계획수립 당시 '존치대상'으로 결정했던 사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황조사 및 감축대상 전환 여부에 대한 사후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친 바 있으며, 정비된 인감증명 요구사무가 실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으로 연계되는지 대한 점검이 미흡하여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었음.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기준]

정 비 기 준
①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폐지 원칙** ※필요시 근거규정 마련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병기
② 근거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정비
③ 신분확인을 위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 자료: 행정안전부

□ 최근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6월까지 2,145건의 사무(중앙행정기관 51건, 지방자치단체 2,094건)의 단계적 정비를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2,153건의 인감요구 사무 정비를 완료하였음.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

□ 추진배경

○ 1914년 도입 이래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에 따른 국민불편** 발생

* ('23.12.) 연간 인감증명서 2,984만통 발급 : 부동산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

⇨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25년까지 정비**

□ 주요내용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23. 4. ~ 9.)**

- 국가법령·자치법규 분석('23.4.~6.) 및 부처·지자체 의견수렴('23. 7.~9.) 결과 총 2,608건(부처 428, 지자체 2,180) 발굴

○ **요구사무 정비기준**

-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는 원칙적 폐지
- **기 폐지된 인감증명 요구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는 원칙적 폐지
-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
-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 가능토록 근거규정 정비**

○ **요구사무 정비일정**

- 근거규정 없는 **관행적 요구사무(295건) 조속 정비**(~'24.12.)
- 근거규정 있으나 **요구 필요성 낮은 사무 단계적 정비**
  - (1단계) 기관 자체 폐지의견 사무(765건) 정비(~'24.6.)
  - (2단계) '18~'21년 기 폐지사무와 동일·유사 사무(495건) 정비(~'24.12.)
  - (3단계) 1단계 폐지사무와 유사한 사무(590건) 정비(~'25.6.)

□ 인감사무 감축 실적

○ 전체 2,145건 중 **2,153건(100.4%) 감축**

관행적 요구 폐지	관련 제도(사무) 폐지	구비서류 삭제	신분증 사본 대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선택 제출	기타*	합계
295 (13.7%)	242 (11.2%)	381 (17.7%)	313 (14.5%)	822 (38.2%)	100 (4.7%)	2,153 (100%)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 기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는 계획 대비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인감증명서의 관행적 요구 및 활용이 지속되고 있어, 정비 실적의 달성만으로는 제도의 실질적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존치대상'으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비된 사무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실제 대체·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홍보가 특정 시기(주로 하반기, 8~10월) 및 특정 대상(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자에 국한되고, 수요기관에 대한 홍보는 미흡함)에 집중되어 있고, 홍보방식 또한 포스터 배포·전광판 광고 등 일방향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예산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시기	내 역
2021	39	12	8~9월	- 지하철 및 시내버스 영상 광고 실시
2022	39	22	8~9월	- 지하철 및 시내버스 영상 광고 실시
2023	39	39	8~12월	-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실시
2024	20	20	10~12월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홍보 실시

자료: 행정안전부

13. 지방시대위원회 운영(1132-302)

○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간 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충분한 용역기간을 확보하여 용역계약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기준시점에 공개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핵심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6억 3,600만원 중 12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1,636	-	-	-	1,636	1,291	83	262	1,836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1,636	-	-	-	1,636	1,291	83	262	1,836

나. 효율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집행 관리 강화 필요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74]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②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③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 ④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⑤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⑥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75],

---

7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7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76].

□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도에는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 등, ②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③ 사무이양에 따른 비용평가 방안의 3가지 연구주제에 대해 각 1억원의 예산을 일반연구비(260-01)비목으로 편성하였음.

[2024년도 지방시대위원회 일반연구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일반연구비 (260-01)	○ 지방시대위원회 연구용역 : 300,000천원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 등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다. 사무이양에 따른 비용평가 방안 연구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 다만, 실제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다시 선정한 후, 정책연구심의위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원회의 심의를 거쳐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2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연구용역 중 3건은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도 지방시대위원회 연구용역 집행내역]

(단위: 천원)

수요조사	계약명	공고기간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유형
상반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5.14~5.24	54,000	한국법제연구원	'24.7.1~'24.12.27	경쟁
	대도시(특례시) 지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1차 6.6~6.18 2차 7.15~7.22	35,909	한국정책학회	'24.9.2~'25.3.28	경쟁
하반기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확대 및 특화 발전 방안 연구	10.30~11.11	**34,540**	한국행정학회	'24.12.18~'25.5.16	경쟁
	지방이양 비용평가 산정 방안 연구	1차 11.6~11.19 2차 11.19~12.2 3차 12.3~12.16	**45,454**	한국행정학회	**'24.12.30~'25.9.28***	수의

* '지방이양 비용평가 산정 방안 연구'는 당초 '25.4.28.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해 '25.9.28.로 종료기간이 연장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 용역계약이 늦어진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간의 지연이 있었으며, 용역계약이 유찰되어 2·3차에 걸친 재공고가 있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일정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편성 당시부터 소요기간 및 용역계약 절차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연구과제 선정 및 계약일정 등을 계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 및 용역계약 일정 등을 지체하여 연내에 연구과제 수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충분한 용역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5년간(2023.7.10.~2028.7.9.)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조직인 만큼, 한정된 운영기간 내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 또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77]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① 계약체결 내용, ②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③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편람」은

7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 내용,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의 공개내용별 공개시점]

공개 내용	공개 시점
·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직후 (1개월 이내)
· 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 1개월 이내(연구보고서) · 평가직후(평가결과서)
·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 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위원회 심의 거친 직후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필요시

자료: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 그러나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가 수행한 4건의 연구용역은 계약체결 정보, 연구결과, 활용사항 등에 대한 공개 시점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함으로써 정보 공개 시점이 지연되어 정책연구의 신뢰성이 저해되고 연구성과의 공유·확산에도 제약이 발생하였음.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연구 공개시점]

연구명	공개사항	완료시점	공개시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계약체결	’24. 6.	’24.10.
	연구보고서	’24.12.	’25. 2.
	평가결과	’24.12.	’25. 2.
	활용결과	’25. 2.	’25. 2.
대도시(특례시) 지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계약체결	’24. 9.	’25. 7.
	연구보고서	’25. 3.	’25. 7.
	평가결과	’25. 8. 예정	’25. 8. 예정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확대 및 특화 발전 방안 연구	계약체결	’24.12.	’25. 7.
	연구보고서	’25. 6.	’25. 7.
	평가결과	’25. 8. 예정	’25. 8. 예정
지방이양 비용평가 산정 방안 연구	계약체결	’24.12	’25. 7. 예정
	연구보고서	’25. 9. 예정	’25. 9. 예정
	평가결과	’25.10. 예정	’25.10. 예정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의 제한된 존속기간 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충분한 용역기간을 확보하여 용역계약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기준에 따라 공개할 필요가 있음.

14.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1132-300)

○ 국가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지원업무가 공동으로 수행되어 해당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동시선거 시 국비와 지방비 분담기준을 마련해 국가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사업은 공직선거추진, 주민참여제도 확대 및 공정한 관리지원, 지방의회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80억 8,700만원 중 76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8,739	-	△652	-	8,087	7,631	184	272	1,524
공직선거추진	7,184	-	△652	-	6,532	6,303	-	229	525
주민참여제도 확대 및 공정한 관리지원	55	-	-	-	55	48	-	7	55
지방의회 역량강화	76	-	-	-	76	69	-	7	76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	1,384	-	-	-	1.384	1,173	184	27	828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활성화 추진	20	-	-	-	20	19	-	1	20
법령적합성 자치법규 지원	20	-	-	-	20	19	-	-	20

나. 국가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경우 사무 지원경비 분담기준 마련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공직선거추진’ 사업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65억 3,200만원 중 63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공직선거추진’ 내역사업 예산 편성·집행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선거업무 보조 상용임금 및 일용임금	892,068	886,437	5,630
업무편람 매뉴얼, 선거인명부 작성 등	2,848,650	2,787,724	60,925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물 제작	150,000	84,491	65,509
선거업무 유공자 표창	21,000	16,574	4,425
선거상황실 운영·임차	62,000	20,578	41,421
거소투표신고 등기우편료 및 책자발송	533,689	531,912	1,776
선거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224,021	1,211,462	12,558
선거사무 추진 지도점검 및 교육	326,600	312,062	14,537
지자체·유관기관 회의·간담회·워크숍	473,500	451,900	21,599
계	6,531,528	6,303,144	228,383

자료: 행정안전부

□ 동 내역사업은 행정안전부 몫과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각각 나누어 편성·집행되며, 행정안전부 몫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몫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한 다음 행정안전부에 정산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공직선거추진' 사업 관련 예산 집행 과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예산과목에 따라 집행	▶ 행정안전부 → 17개 시도로 재배정 - 예산 항목별로 인구, 기관비율에 따라 정액 또는 정율 배분 ▶ 17개 시도 → 260개 시군구*로 재재배정 * 행정시·구 포함 - 예산 항목별로 인구, 기관비율에 따라 정액 또는 정율 재배분 ▶ 260개 시군구 → 읍면동 (약3,500여 개) 배분 - 읍면동에서 예산과목에 따라 집행

자료: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78],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가 선거 및 국민투표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79].

[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업무]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 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거소투표 신고업무 지도·지원 -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지도	- 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 선거운동 관리 - 불법선거운동 단속,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선거벽보 첩부·철거 및 투표 안내문 등

78)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79)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대비 주민등록 정비,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 선거지원업무자료 발간 - 투·개표사무 등 선관위 업무지원 - 공직선거지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의견개진 등	- 각종 홍보물 제작·발송 - 투·개표 관리 - 정치관계 제도개선, 정당관리 - 선거관계법령의 유권해석 등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공직선거법」 제277조[80]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국가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선거[81]로 실시되어 국가의 공직

80)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후단 생략)

1. ~ 7. (생 략)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후단 생략)

1. ~ 3. (생 략)

81) **「공직선거법」**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① 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선거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분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선거 실시 구역의 전부가 겹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 실시 구역이 큰 부담주체가 경비를 부담함[82].

---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8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5조(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선거관리경비의 부담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의 규정에 의하되, 국가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분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3조(부담범위)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6.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7. 선거결과 정리,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정비 및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관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비
8.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9.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② 동일선거 및 동시선거에 있어서 공통경비(제1항의 경비는 제외한다)의 해당경비부담단체별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선거 또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안에서 경비부담단체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의 전부가 서로 겹치는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경비부담단체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2. 제1호외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경비부담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이에 따라 ① 대통령선거 및 ② 지방선거와 동시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 등 절차사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과 행정안전부 소관예산으로 집행되며, ③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분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 구역이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경비를 부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의 주체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국가선거 종류별 경비부담 주체]

<table>
<tr><th colspan="3">국가선거종류</th><th>경비부담 주체</th></tr>
<tr><td colspan="3">대통령선거</td><td>국가</td></tr>
<tr><td rowspan="3">국회의원 선거</td><td colspan="2">단독선거</td><td>국가</td></tr>
<tr><td rowspan="2">지방선거와 동시선거*</td><td>선거구역 전부가 겹치는 경우</td><td>국가 및 지자체 균분</td></tr>
<tr><td>그 외의 경우</td><td>선거 구역이 큰 주체가 부담</td></tr>
</table>

* 선거 관련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되어 그 구분·분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임

□ 2024년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24. 4. 10.) 및 상·하반기 재보궐선거(상반기: '24. 4. 10. 및 하반기: '24. 10. 16.)가 실시되었으며, 상반기 재보궐 선거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17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25인에 대해 실시

제12조(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경비의 부담은 제3조(부담범위) 및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되었는데, 해당 재보궐 선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선거로 실시되었으므로,

해당 선거의 선거구역 전부가 겹치는 경우인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재보궐 선거와 대전광역시 중구 국회의원선거, ② 경남 밀양시장 재보궐 선거와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선거, ③ 강원도의원(양구군 선거구) 재보궐 선거와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선거, ④ 충남도의원(청양군 선거구) 재보궐 선거와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선거, ⑤ 경북도의원(영양군 선거구) 재보궐 선거와 영주·영양·봉화 국회의원선거, ⑥ 경북도의원(울진군선거구) 재보궐 선거와 의성·청송·영덕·울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사무의 구분·분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함.

[제22대 국회의원 및 상반기 재보궐 동시선거 지역별 비용부담주체]

상반기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선거	비용부담주체
기초 지자체장	**대전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지자체 균분**
	경남 밀양시장 (밀양시)	**밀양·의령·함안·창녕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전역)**	**국가·지자체 균분**
광역의원	서울노원 제2선거구 (공릉1·2동)	노원 갑 (월계1·2·3동, 공릉1·2동, 하계1·1동, 중계본동, 중계2·3동)	국가
	부산사하구 제2선거구 (당리동, 하단1동, 하단2동)	사하 갑 (당리동, 괴정1동, 괴정2동, 괴정3동, 괴정4동, 하단1동, 하단2동, 신평2동)	국가

상반기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선거	비용부담주체
	울산북구 제1선거구 (농소1동, 송정동)	울산 북구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국가
	경기안산 제8선거구 (단원구 중앙동, 호수동, 대부동)	안산 을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국가
	경기오산 제1선거구 (중앙동, 신장1동, 신장2동, 세마동)	오산 (오산시 전역)	국가
	경기화성 제7선거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화성 병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기배동, 화산동)	국가
	강원양구군 선거구 (양구군)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춘천시 일부 및 철원군·화천군·양구군 전역)**	**국가·지자체 균분**
	충북청주 제9선거구 (흥덕구 복대1동, 봉명1동)	청주 흥덕구 (강서1동, 강서2동, 운천·신봉동, 가경동, 복대1동, 복대2동, 봉명1동, 봉명2·송정동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	국가
	충남당진 제3선거구 (당진1동, 당진3동, 고대면, 석문면)	충남 당진 (당진시 전역)	국가
	충남 청양군 선거구 (청양군)	**공주·부여·청양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전역)**	**국가·지자체 균분**
	전북전주 제3선거구 (완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 갑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국가
	전북남원 제2선거구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남원·장수·임실·순창 (남원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역)	국가
	경북 영양 선거구 (영양군)	**영주·영양·봉화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전역)**	**국가·지자체 균분**

상반기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선거	비용부담주체
	경북 울진 선거구 (울진군)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전역)**	**국가·지자체 균분**
	경남창원 제15선거구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창원 진해구 (석동, 이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국가
	경남밀양 제2선거구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가곡동)	밀양·의령·함안·창녕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전역)	국가
	제주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아라동)	제주 을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국가
기초의원	서울 서대문구 나선거구 (연희동)	서대문 갑 (홍제1동, 홍제2동, 북아현동, 천연동, 충현동, 신촌동, 연희동)	국가
	서울 강남구 라선거구 (개포1·2·4동)	강남 을 (일원1동, 일원본동, 수서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3동, 개포4동, 세곡동)	국가
	대구중구 가선거구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대구 중구·남구 (중구·남구 전역)	국가
	대구 수성구 라선거구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 갑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국가
	인천남동구 나선거구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남동 갑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국가
	대전유성구 나선거구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유성 갑 (진잠동, 원신흥동, 상대동, 학하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국가

상반기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선거	비용부담주체
	부천시 마선거구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부천 을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국가
	광명시 라선거구 (소하1·2동, 일직동)	광명 을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국가
	김포시 라선거구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김포 을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국가
	화성시 가선거구 (봉담갑,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화성 갑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국가
	동해시 나선거구 (망상동, 묵호동, 동호동, 발한동, 부곡동, 천곡동)	동해·태백·삼척·정선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전역)	국가
	양구군 나선거구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춘천시 일부 및 철원군·화천군·양구군 전역)	국가
	청주시 자선거구 (흥덕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청주 흥덕구 (흥덕구 전역)	국가
	청주시 타선거구 (청원구 오창읍)	청주 청원구 (청원구 전역)	국가
	제천시 마선거구 (교동, 남현동, 신백동)	제천·단양 (제천시·단양군 전역)	국가
	괴산군 나선거구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	보은·옥천·영동·괴산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전역)	국가
	천안시 아선거구 (서북구 백석동)	천안 을 (백석동, 부성1동, 부성2동, 성거읍,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국가
	부여군 가선거구 (부여읍, 규암면)	공주·부여·청양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전역)	국가

상반기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선거	비용부담주체
	부여군 다선거구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석성면, 초촌면)	공주·부여·청양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전역)	국가
	장수군 가선거구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남원·장수·임실·순창 (남원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역)	국가
	김천시 나선거구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김천 (김천시 전역)	국가
	의성군 다선거구 (단촌면, 봉양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전역)	국가
	김해시 아선거구 (장유3동)	김해 을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주촌면, 진례면)	국가
	밀양시 마선거구 (하남읍,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밀양·의령·함안·창녕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전역)	국가
	함안군 다선거구 (칠원읍,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산인면)	밀양·의령·함안·창녕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전역)	국가

※ 괄호 안의 지역은 선거구역의 범위임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재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의 균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단독으로 실시된다는 가정하에 시·도별 재배정을 하였는데, 이는 동시선거 시의 경비 분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시·도별 재배정 내역]

시.도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서울	961,034,000	903,877,400	57,156,600
부산	400,877,000	388,093,850	12,783,150
대구	286,025,000	267,408,410	18,616,590
인천	324,668,000	293,004,380	31,663,620
광주	176,848,000	167,144,400	9,703,600
대전	164,680,000	155,072,990	9,607,010
울산	121,398,000	115,145,680	6,252,320
세종	42,116,000	35,570,530	6,545,470
경기	1,358,129,000	1,226,635,580	131,493,420
강원	295,475,000	202,698,670	92,776,330
충북	255,448,000	217,489,470	37,958,530
충남	338,501,000	252,094,470	86,406,530
전북	351,044,000	343,513,500	7,530,500
전남	413,846,000	342,884,390	70,961,610
경북	481,977,000	405,806,390	76,170,610
경남	499,063,000	428,114,820	70,948,180
제주	81,563,000	60,501,010	21,061,990
계	6,552,692,000	5,805,055,940	747,636,060

자료: 행정안전부

□ 대전 중구, 밀양시, 양구군, 청양군, 영양군 및 울진군의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같은 날 함께 실시되어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등의 사무가 공동으로 수행되고, 선거의 종류에 따른 사무의 구분·분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기 보다는 「지방

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방비와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동시 실시 지역별 재배정액]

(단위: 천원)

지방자치단체	재배정액
대전광역시 중구	26,167
경상남도 밀양시	22,656
충청남도 청양군	6,979
강원도 양구군	3,015
경상북도 영양군	5,952
경상북도 울진군	10,586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실시되는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등 공직선거 지원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국비(재배정된 예산)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부담하는 지방비 사이의 분담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음.

15.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1131-300)

○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이 기한 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집행 지연이나 이월 누적에 따른 사업 효과 저해를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정책적 효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83]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84]인 경상남도 창원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에 보통교부세와 별도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시·군·구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17억 9,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8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53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59조제4호 및 제61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실시한다.

③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1년에는 100분의 6, 2022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5년에는 100분의 6, 2026년에는 100분의 5, 2027년에는 100분의 4, 2028년에는 100분의 2, 2029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8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11,797	-	-	-	11,797	11,797	-	-	10,575
창원시자율 통합지원금	2,444	-	-	-	2,444	2,444	-	-	1,222
청주시자율 통합지원금	9,353	-	-	-	9,353	9,353	-	-	9,353

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의 반복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액과는 별도로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창원시는 2020년, 청주시는 2024년에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창원시 및 청주시에 대한 지원이 각각 5년간 연장되었으며, 연장된 기간 동안 1년 차에는 폐지된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 2년 차에는 100분의 5, 3년 차에는 100분의 4, 4년 차에는 100분의 2, 5년 차에는 100분의 1의 차등적인 비율로 지원금이 교부됨.

□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 50%는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국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85],

창원시에 대해서는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3억 3,2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22년 61억 1,000만원, 2023년 48억 8,800만원, 2024년 24억 4,400만원, 2025년 12억 2,20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으며,

청주시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93억 5,3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26년에는 77억 9,500만원, 2027년에는 62억 3,600만원, 2028년에는 31억 1,800만원, 2029년에는 15억 5,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임.

[지자체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11~'20	'21	'22	'23	'24	'25	총 계
창원시	73,320	7,332	6,110	4,888	2,444	1,222	95,316
	'15~'24	'25	'26	'27	'28	'29	총 계
청주시	93,530	9,353	7,795	6,236	3,118	1,559	121,591

자료: 행정안전부

8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목으로 창원시와 청주시에 직접 교부되고 있어 행정안전부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4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창원시의 실집행률은 약 77.4%, 청주시의 실집행률은 약 84.7%로 나타나고 있음.

[자율통합지원금 실집행 내역]

(단위:백만원)

지자체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B)			
창원시	2,444	1,800	4,244	3,667	2,444	1,892	574	2	77.4
청주시	9,353	5,675	15,028	13,372	9,353	7,921	1,655	-	84.7

자료: 행정안전부

□ 이 중 창원시의 구체적인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총 이월액 5억 7,400만원 중 계약체결지연·설계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4억 3,070만원이고, 사전영향조사 등에 따라 사고이월된 금액이 530만원이며, 사업 집행잔액을 이월한 금액이 1억 3,800만원임.

또한, 청주시의 경우 총 이월액 16억 5,540만원 중 명시이월된 금액이 4억 420만이고, 계속비에 따른 이월액이 9억 5,990만원이며, 집행잔액을 이월한 금액이 2억 9,130만원임[86].

86)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4년도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이월사유 및 이월액]

(단위: 원)

사업명	이월 사유	이월액
마산합포구 농업용 지하수 관정시설 정비공사	사고이월	5,310,000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어린이 테마체험존 조성	명시이월	200,000,000
웅동초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00
진해청소년전당 시설 환경 리모델링		130,680,980
동읍주민운동장 LED등 교체공사	집행잔액	185,420
북면 양촌마을회관 앞 구거정비공사		8,288,160
용지공원 주변 보도정비공사		2,724,520
창이대로(퇴촌삼거리~창원대삼거리)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		13,858,100
마산합포구 농업용 지하수 관정시설 정비공사		33,217,000
문화공원(덴소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830
해안대로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5,783,440
마산구항 방재언덕 일원 시설정비공사		1,416,220
양덕 메트로시티 앞 교통단속장비 설치		5,287,630
노후 재래식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7,390,490
석동 냉천로107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8,937,130
용원시가지 일원 노후 보도정비공사		8,998,310
용원 완충녹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8,260,680
냉천근린공원 야외광장 쿨링포그 설치사업		1,340,710
자은지구 외 4개소 공원 시설물 및 가로녹지 정비사업		423,380
석동 완충녹지 리모델링사업		9,558,730
석동해뜰광장 그린생태문화숲 정비사업		76,080

자료: 행정안전부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4년도 청주시 자율통합지원금 이월사유 및 이월액]

(단위: 원)

사업명	이월 사유	이월액
옥산 오산리 724-8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명시이월	63,675,970
북이 옥수~석성 가로수길 조성사업		340,528,500
죽전~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속비	386,599,120
구룡~화산간 도로확포장공사		66,303,990
낭성 삼산리 도로확포장공사		133,876,940
미원 중리 도로확포장공사		4,254,180
문의 도원리(2공구) 도로확포장공사		300,000,000
문의 미천1리 409-4번지 일원 농로 확장공사	집행잔액	14,928,550
남이 팔봉2리 농로 포장공사		458,420
남이 대련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4,778,610
남이 산막리 농로포장 공사		27,000,000
옥산 오산리 724-8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6,763,520
옥산 사정2리 제방도로 정비공사		2,253,870
내수 묵방리 759번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0,364,050
오창 농어촌도로(면도103호선)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공사		4,862,080
북이 영하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54,220
북이 서당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11,660
석곡동 아스콘 포장공사		1,505,300
공항로 일원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		55,512,960
상신동 205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7,228,600

자료: 행정안전부

□ 자율통합지원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회계연도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87]에서 2회계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88],

87) 다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해당 이월범위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명시·사고이월 사유 등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임.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유사한 목적의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89].

□ 그러나, 법령에서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예외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은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고,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음.

[2020년~2024년 자율통합지원급 연도별 집행액 내역(창원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연도별 집행액					집행잔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년	7,332	5,477	1,025	829	-	-	1.4
2021년	7,332	-	2,949	4,133	248	-	-
2022년	6,110	-	-	2,996	1,951	1,161	2
2023년	4,888	-	-	-	4,249	615	22
2024년	2,444	-	-	-	-	1,892	574

자료: 행정안전부

8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8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2020~2024 자율통합지원금 연도별 집행액 내역(청주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연도별 집행액					집행 잔액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년	9,353	7,370	1,427	554	-	-	-
2021년	9,353	-	5,928	2,206	1,218	-	-
2022년	9,353	-	-	6,959	2,393	-	-
2023년	9,353	-	-	-	4,449	4,678	224
2024년	9,353	-	-	-	-	7,921	1,431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2024년도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의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설계 지연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사유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관 간 조정 및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절차 지연 사업별 세부 사유]

사업명	이월 사유
마산합포구 농업용 지하수 관정시설 정비공사	※ (계약체결 지연)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 완료일 미도래 - '24. 3.~5. :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 - '24. 7.~8. : 정비요청지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12. :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 - '25. 2.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

사업명	이월 사유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어린이 테마체험존 조성	※ (계약체결 지연) ①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공정 발생하여 실시설계 변경 ② 선행 공정인 토목·건축·조경공사가 '24.12월 준공되어 자율통합지원금 지원사업인 내부 전시·체험시설 계약체결이 불가피하게 지연 - '23. 8.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23.11. :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23.12. : 어린이 테마체험존 조성사업(토목·건축·조경) 착공 - '24.12. : 어린이 테마체험존 조성사업(토목·건축·조경) 준공 - '25. 1. : 어린이 테마체험존 전시체험시설 설치공사 착공 - '25. 8. : 어린이 테마체험존 전시체험시설 설치공사 준공
웅동초 주변 도시계획도로(소로3-256호선) 개설사업	※ (부지매입 지연)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기간 소요 - '24. 2.~4. : 보상계획 통지 및 감정평가 실시 - '24. 4.~6. : 손실보상 협의 요청*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4차례 공문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지장물 보상금액 불만 등의 사유로 협의 불가 - '24. 6.~8. : 수용재결 신청 및 완료 - '24. 9.~10. : 경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평가 보상금 재협의 - '24. 10. : 토지 협의 취득 완료 - '25. 4.~5. :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확인서 작성 용역 - '25. 5.~ : 지장 가옥 철거공사, 폐기물 철거 등 사전공사 이행 - '25. 8. : 웅동초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착공 - '25.11. : 웅동초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준공예정
진해청소년전당 시설 환경 리모델링	※ (설계 지연)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소요 - '24. 2. : 기본계획 수립 - '24. 7. : 설계용역 착수 - '24. 9. : 설계용역 완료 - '24. 10. : 관급자재 심의 및 계약 의뢰 - '24. 11. : 공사 착공(건축・전기) - '24. 12. : 1차 설계변경 - '25. 2. : 2차 설계변경 - '25. 3. : 공사 준공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이 기한 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집행 지연이나 이월 누적에 따른 사업 효과 저해를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정책적 효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균형발전지원국】

16.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1237-50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4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2차)’ 사업을 위탁 수행하면서 지방비로 집행해야 하는 ‘상용 SW 도입’에 국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수탁기관의 집행·정산시 국비-지방비 비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부적절한 정산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은 지역별로 분산되고 노후화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20억 6,000만원(국비 119억 2,400만원, 지방비 201억 3,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4회계연도에는 국비 예산현액 28억 6,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주소체계구축 (정보화)	2,865	-	-	-	2,865	2,865	-	-	2,358

나. 국비-지방비 비율을 고려한 사업 정산 필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와 전국 17개 시·도 등으로부터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응용 SW 개발, 데이터 통합, HW 도입 등을 위한 ‘시스템 통합 구축’과 클라우드 SW 등 상용 SW 직접 구매를 위한 ‘SW 분리구매’ 2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시스템 통합 구축’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90]되는 것과 달리 ‘상용 SW 도입’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될 계획임.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계	비고
국비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6,701	2,865	2,358	11,924	시스템 통합 구축 (통합발주)
지방비	클라우드 HW 도입	2,190	3,803	2,495	8,488	
	데이터 통합 및 전환	443	3,132	403	3,978	
	상용 SW 도입	2,359	1,986	3,325	7,670	SW 분리구매
합계		11,693	11,786	8,581	32,060	-

자료 : 행정안전부

90) 시스템 통합 구축은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SW개발 사업, 국비)과 클라우드 HW 도입(지방비), 데이터 통합 및 전환(지방비) 등 세가지 사업으로 구성됨.

□ 그런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4년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2차) 사업을 집행하면서 위탁협약을 위반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외주용역비 정산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음.

□ 구체적으로 지방비로만 집행해야 하는 '상용 SW 도입'에 국비 약 1억 7,416만원을 지출하고, '시스템 통합 구축'에는 국비 약 2억 253만원을 덜 지출하여, 결과적으로 국비로 집행해야 할 2,837만원을 지방비로 지출하도록 정산하였음.

[2024년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사업(2차) 정산보고]

(단위: 천원)

구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산 결과			재계산시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외주용역비	**10,531,341 (100%)**	2,327,110 (22.4%)	8,061,765 (77.6%)	**10,388,874 (100%)**	2,355,484 (22.7%)	8,033,390 (77.3%)
통합발주 (시스템 통합 구축)	**9,611,386 (100%)**	2,152,952 (22.4%)	7,458,434 (77.6%)	**9,611,386 (100%)**	2,355,484 (24.5%)	7,255,902 (75.5%)
분리발주 (상용 SW 구매)	**904,661 (100%)**	174,157 (22.4%)	603,331 (77.6%)	**777,488 (100%)**	-	777,488 (100%)

자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2차) 업무수행결과 및 정산보고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위탁사업비를 재정산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국비-지방비 비율을 고려하여 위탁사업비를 집행·정산할 수 있도록 정산 과정 및 결과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며, 빠른 시일 내에 위탁사업비 재정산 절차 등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17. 접경권발전지원(1232-300)

○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집행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접경권발전지원’ 사업은 강원·인천·경기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98억 4,900만원 중 478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억 1,300만원이 불용[91]되었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접경권발전지원	49,849	-	-	-	49,849	47.836 [37,568]	-	2.013	45,627
DMZ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14	-	-	-	114	101 [101]	-	13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25~)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25,085	-	857	-	25,942	25,942	-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	857	-	△857	-	-	-	-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LPG) 조성	10,780	-	-	-	10,780	10,780	-	-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4,838	-	-	-	4,838	4,838	-	-	

91) 불용사유 :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타당성재조사 미완료로 보조금 미교부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	1,050	-	-	-	1,050	1,050	-	-	
평화빌리지 조성	2,050	-	-	-	2,050	2,050	-	-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	1,675	-	-	-	1,675	1,675	-	-	
회암IC 연결나들목 지하차도 건설	1,000	-	-	-	1,000	-	-	1,000	
춘천 소양8교 건설사업	1,000	-	-	-	1,000	-	-	1,000	
동서고속화철도 연계지원사업	1,400	-	-	-	1,400	1,400	-	-	

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사업 실집행 저조

□ 접경지역이란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7개 시·군[92]으로, 인천광역시

9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이하 생략)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2개 군과 경기도 8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됨.

[접경지역 범위]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2개 - 군 : 강화군, 옹진군	8개 - 시 :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 군 : 연천군, 가평군	7개 - 시 : 춘천시, 속초시 - 군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접경권발전지원' 사업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93]에 따라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에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2019년 사업 1차 변경을 거쳐, 2024년 추진 불가능한 55건 사업을 제외하고 57건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전체 사업비 2.7조원이 감소하는 내용으로 2차 변경을 확정하였음.[94]

---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9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94)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2024년) 주요 내용
- 제외 사업(55개 사업)
  - 민자투자 어려움 :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조성, 풍력발전단지 조성, 알프스쎄븐리조트, 석모도 해양 헬스케어 힐링섬 조성 등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접경권발전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478억 3,6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지자체별로 보조금 실집행률이 크게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사업’,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사업’, ‘평화빌리지 조성’,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원사업’ 등 4개 내역사업의 집행 지연에서 기인함.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국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합 계	47,735	2,400	50,117	38,707	77%
인천광역시	25,942	72	26,014	25,133	97%
옹진군	11,830	341	12,171	11,459	94%
포천시	100	-	100	-	0%
연천군	100	-	100	72	72%
춘천시	688	256	944	201	21%
양구군	2,763	290	3,053	1,040	34%
인제군	2,800	605	3,405	493	14%
화천군	1,750	472	2,222	278	13%
철원군	1,762	364	2,108	31	1%

- 지방이양 :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 삼부연폭포 명소화 등
- 신규 사업(57개 사업)
  - 광덕터널 도로건설, 방천~월명간 도로개설, 방축~비암간 도로건설(초광역권 동서 연결도로), 소양8교 도로건설(도로 인프라 확충),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안보관광 활성화), 임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등
  - 참고 - 조건부 반영사업 : 방천~월명간 도로개설(화천) 및 방축~월명간 도로건설사업(양주)은 ’26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필요, 미완료시 계획에서 제외 예정

□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4개 사업은 모두 사업 초기단계로 토지 보상 협의, 실시설계, 관련 사업과의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으로 새롭게 추가된 57개 신규사업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5개 사업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사업의 집행률 개선을 통한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이 필수적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내용]

구분	당초	1차 변경 (2011년)	2차 변경 (2024년)
기간	2011년 ~ 2030년 (20년)		
사업수	165개	225개	227개
총 사업비	18.8조원	13.2조원	10.5조원
국비	5.4조원	5.4조원	5.3조원
지방비	1.4조원	2.2조원	2.5조원
민자	12조원	5.6조원	2.6조원

□ 또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차 변경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접경지역의 관광객 증가나 지역내 총생산(GRDP) 상승 등 접경지역의 발전이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집행

관리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5년부터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편성 주체가 행정안전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고 포괄보조금의 사업 형태로 전환되었는데,

지역자율계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탄력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세부적으로 집행관리를 하기에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국가가 수립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의 실집행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며,

보조금의 배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는 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행정안전부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단계에서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은 집행 가능한 금액만 분기별로 교부하는 등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적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18.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1938-301)

○ 행정안전부는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추진시 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본래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향후 유사 사업 추진시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은 ① 데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②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 조성(청년마을), ③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④ 과학기술 기반 현안해결, ⑤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92억 7,500만원 중 192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고, 6,300만원이 불용[95]되었음.

95) 불용사유 : 낙찰 차액, 지자체 보조금 미교부 등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9,275	-	±5,000	-	19,275	19,212	-	63	8,915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1,400	-	-	-	1,400	1,386 [1,386]	-	14	1,400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 조성	7.515	-	-	-	7.515	7,513 [7,513]	-	2	7,515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1.160	-	-	-	1.160	1,145 [1,097]	-	15	-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운영	4,200	-	-	-	4,200	4,199 [4,199]	-	1	-
빈집정비등 경관개선사업 지원	5,000	-	±5,000	-	5,000	4,969 [1,330]	-	31	10,000

나. 빈집정비등 경관개선사업 : 체계적인 사전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집행 필요

□ ‘빈집정비등 경관개선사업’은 도시나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공용주차장, 임대주택, 기숙사,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음.[96]

96) 당초 예산 편성시 2024년부터 3년간 매년 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50억원 및 2025년 1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개별 부처에서 빈집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 그러나 동 사업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본래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첫째,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이후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지연되었음. 동 사업은 당초 일반용역비(210-14) 비목으로 전액 편성되어 전문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회의시 정책 수행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획재정부 예산전용 승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비목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2020년 「농어촌정비법」 개정[97]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행정지도 등 빈집 관리업무가 기존 중앙정부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예산 전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집행이 지연되어, 2024년 7월 31일이 되어서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이는 2024년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26.6%로 저조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음.

97)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0.8.12.] [법률 제16972호, 2020.2.11., 일부개정]

□ 둘째, 행정안전부는 **정책의 내용**을 변경하여 정책의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음. 당초 지역당 5,000만원을 지원하여 빈집 '활용'을 유도할 것으로 계획한 것과 달리,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빈집 '활용'이 아닌 '철거'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 이는 사업 대상 수를 양적으로 늘리고 방치된 빈집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임대주택, 기숙사, 커뮤니티, 창업공간, 마을쉼터, 마을도서관 등 빈집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구를 유입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려는 당초 정책의 취지는 다소 퇴색된 측면이 있음.

[빈집정비등 경관개선 사업 추진 계획]

구분	예산	결산
사업 대상	100개 시·군·구 - 우선순위 :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 빈집활용 가능지역	11개 시·도 39개 시·군·구 - 선정 : 인구감소지역(24개), 관심지역(4개), 빈집활용 가능지역(11개) - 1개 지역당 1호~100호
지원액	지역당 수리비 5,000만원 이내	지역당 1,000만원 ~ 5억원 - 농촌지역 호수당 500만원 - 도시지역 호수당 1,000만원
사업 내용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사업 추진 (도시 : 공용주차장, 임대주택, 기숙사 등 농촌 : 창업공간, 주말농장, 마을도서관 등)	빈집 철거비용 지원 철거후 부지 공공활용 (공용주차장, 꽃밭 등)
사업 방식	전문기관 선정(용역)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지원 요건	빈집 활용(매도) 동의, 지자체 매입 의향, 특화사업 추진 계획 등	3년간 공공활용 동의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세부사업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4160-448)’의 내역사업으로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빈집 밀집지역을 구역단위로 리모델링하여 창업·업무공간, 주거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개소당 총사업비 21억원(국비 30%, 지방비 50%, 민간 상생협력기금 20%)을 투입하고 있음.

□ 이와 비교할 때,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등 경관개선 사업’은 당초 지역당 지원금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하여 빈집의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빈집 1개소당 지원비는 도시지역 1,000만원 및 농촌지역 500만원에 불과하여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방안은 주차장, 텃밭 등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셋째,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이후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전용 과정에서 **빈집 1개소당 지원비**가 실제 철거 비용보다 낮은 수준(도시지역 1,000만원 및 농촌지역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철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남.

□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 집행을 위하여 지방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충남, 전북, 경남, 세종 등 지방자치단

체에서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 넷째,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시** 빈집 정비의 필요성·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동 사업은 당초 100개 지역을 선정·지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39개 지역만을 선정하여 각 지역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을 지원하였음.

[전국 빈집 현황 및 보조금 교부액]

(단위:개, 백만원)

구분	빈집 수 (빈집 비율)	보조금 편성액(A)	보조금 교부액(B)	실집행액98)(C)	실집행률 (C/B)
전국	**1,599,086 (8.0%)**	**5,000**	**4,969**	1,330.07	26.6%
서울	102,556 (3.2%)	-	-	-	-
부산	122,755 (9.1%)	110	110	90	81.8%
대구	64,325 (7.1%)	65	40	40	61.5%
인천	85,031 (7.4%)	-	-	-	-
광주	44,734 (7.9%)	-	-	-	-
대전	29,491 (5.6%)	40	40	4.17	10.4%
울산	30,694 (7.5%)	-	-	-	-
세종	14,557 (9.2%)	45	45	2.6	5.8%

98) 2024년 12월말 기준

구분	빈집 수 (빈집 비율)	보조금 편성액(A)	보조금 교부액(B)	실집행액[98](C)	실집행률 (C/B)
경기	288,631 (5.8%)	36	30	30	83.3%
강원	85,759 (12.5%)	-	-	-	-
충북	75,648 (11.0%)	100	100	10	10%
충남	116,155 (12.3%)	1,090	1,090	-	0%
전북	95,669 (12.4%)	828	828	13	1.6%
전남	126,605 (15.0%)	501	501	165	32.9%
경북	140,774 (12.5%)	600	600	20.3	3.4%
경남	138,490 (10.3%)	1,585	1,585	955	60.3%
제주	37,212 (14.2%)	-	-	-	-

자료 : 통계청 2024년 주택총조사, 행정안전부

□ 특히 전체 주택 중 빈집 비율이 10% 이상인 8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보조금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고,[99] 경남 하동군은 빈집 정비 대상으로 100개소가 선정되어 2024년 예산 편성액의 10%인 5억원이 교부되는 등 전국적으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산 집행이

99)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가능한 방식을 사전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정책 내용 변경시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 목적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 지역 선정시 지방비 투입 가능성 및 정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준비를 바탕으로 예산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임.

19.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1131-316)

○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홍보영상 제작 대행비용을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으며, 일반지출행위를 거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국고금 관리법」 및 관계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을 별도의 내역사업 없이 전액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다른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홍보 영상물 제작 방식에 따라 예산비목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역사업 없이 구성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5억 9,900만원 중 5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100]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599	599	-	-	-	599	598	-	1	599

100) 불용사유 : 집행잔액

나.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홍보영상 제작 대행비용 지급 주의 필요

□ 행정안전부는 지역청년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하여 정책 홍보영상 제작을 외부 업체에 대행하였으며, 영상 제작 대행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목) 비목에서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 일반수용비(210-01) 비목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 구입비 등을 위한 비목으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 서류를 검토하여 지출관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101]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해당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함)에 대해서는 재무관 및 지출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102]

---

101)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이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운영비가 포함되나, 일반용역비(210-14) 비목은 포함되지 않음.[103]

□ 관서운영경비의 비목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경미하거나 경상적 지출이 아닌 경우에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재무관과 지출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세출예산의 지출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행정안전부는 정책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대행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지출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를 통해 수의계약한 뒤 집행하였는 바 관서운영경비 제도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측면이 있으므로,

---

102)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 ⑤ (생 략)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3)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 · 학교운영비 ·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 특수활동비 · 안보비 · 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향후 「국고금 관리법」 및 관계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홍보비용 전액 일반수용비 편성 관행 개선 필요

□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사업이 도입된 2018년부터 세출예산을 전액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수용비(210-01) 비목에는 팸플릿, 안내책자 등 홍보물이나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료 및 광고료, 홍보대사의 여비·부대비 등 사례금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나,[104] 정책 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대행은 일반용역비(210-14) 비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

□ 특히 행정안전부는 유튜브 채널[105]을 운영하며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SNS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홍보영상을 외부에 대행시킨 후 해당 영상을 자체 채널에 게시하여 홍보하는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됨.

□ 따라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식 유형을 세분화하여 예산 비목을 분리하여, 집행상의 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104) 예를 들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정부광고의뢰를 하는 경우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함.

105) 채널명 : 행정안전부(@withyou3542)

□ 참고로, 행정안전부 대변인실의 ‘국민안전방송 운영 및 재난정책 홍보’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안전방송 영상물 제작 및 운영’ 사업은 방송영상물의 제작을 자체 제작과 외주 제작으로 나누어 자체 제작비는 일반수용비로, 외주 제작비는 일반용역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예산안 행정안전부 홍보 사업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1131-316)		국민안전방송 운영 및 재난정책 홍보 (7036-300)	
예산액	599		804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 (210-001)	599	○ **일반수용비** (210-001)	244
	- 홍보콘텐츠 제작	150	- 재난안전 방송영상물 자체 제작비	60
	- TV 및 신문, 라디오 및 옥외광고	299	- 재난안전 정책홍보 및 계절홍보, 캠페인 등	170
	- 시사프로그램 등 출연	50	- 브로슈어,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11
	- 온라인 홍보 및 기타 참여소통	100	- 출입기자 정책현장 체험	3
			○ **일반용역비** (210-14)	270
			- 재난안전 방송영상물 외주 제작비	270

【지방재정경제실】

20. 지방세정보화 추진(1333-500)

○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 신규로 구축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2단계) 개통초기에 여러 가지 결함과 잦은 오류로 인해 국민과 일선 담당 공무원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서울시와 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 추진시 사전 테스트 및 시범운영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세정보화 추진'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표준 지방세입정보시스템(Wetax)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58억 6,800만원 중 56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106]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세 정보화 추진	5,868	-	△183[107]	-	5,685	5,675	-	10	5,353

106) 불용사유: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107) 대설 피해에 따른 재난대책비(복구비) 마련을 위해 이·전용

□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200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를 전면 시행하며 개통되었고, 이후 시스템 노후화 및 기능개선 요구에 따라 2019년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 행정서비스도 통합 제공하고,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시스템과의 통합도 도모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계획수립을 중심으로 하는 1단계 사업과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음. 당초 동 시스템은 2023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구축이 다소 지연되어 실제로는 2024년 2월부터 개통되었음.

한편, 2024년 2월부터 개통된 동 시스템에 서울시는 미포함된 상태인데, 2025년 6월부터는 동 시스템을 서울시와 연계하여 전국민 대상 지방세입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구축 과정 (각 단계별 일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1차년도	2차년도	
기간 (예정)	'19.8.~'20.4.	'21.1.29.~'22.1.29.	'21.12.31.~'23.2.18.	'25.6~'26.12.
사업자	삼성SDS 등	메타넷디지털 컨소시엄		-
주요 내용	지방세입 업무 및 인프라 분석·설계	지방세입 업무 및 인프라 개발	지방세입 업무 테스트, 데이터 이관, 시스템 개통	서울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체계 구축

자료: 행정안전부

나. 대국민 전산시스템 도입시 사전 테스트 절차의 강화 필요

□ 동 사업에 따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2024년 2월 13일부터 개통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제 때에 발급되지 않거나, 카드 및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일선 담당 공무원들도 증가된 민원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 20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의 동 시스템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들을 수렴하고, 시스템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현안 토론회 개최현황]

○ **(일시/장소)** '24.3.20.(수) 13:30~19:00, 서울(누리꿈스퀘어, KLID회의실) ○ **(참석)** 행안부(단장, 관계 과장 등), KLID(본부장, 부장 등), 지자체(세무공무원[108]) 329명), 구축사업자(PM, PL등) * 3개 분과별 진행 : 공통분야(187명), 재산세(89명), 지방소득세(53명) ○ **(주요내용)** 차세대 추진배경 및 변화내용 개통후 추진사항 전달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자료: 행정안전부

□ 동 토론회에서 일선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제기한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미 취득세 중 납부한 금액이 미납부된 것으로 표출되거나, 결제할 금액으로 표시된 액수가 실제와 불일치하거나, 체납자료 등에 대한 증명발급시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결재 및 수납처리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108) 3개 분과별 진행 : 공통분야(187명), 재산세(89명), 지방소득세(53)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현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및 처리경과]

일선 담당공무원의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 취득세 분할납부 중에 있는 납세자가 잔여분 납부를 위해 카드로 위택스 이용시 기납부분이 납부대상으로 표출되는 오류	- 최종 미납분만 조회되도록 조치 완료
◦ 정리보류[109] 건을 납부를 위한 체납으로 전환 시, 결재 오류 및 금액 불일치 발생	- 결재 시스템 정비 및 오류 데이터 보정을 통해 조치 완료
◦ 압류 자료 일괄 업로드시 500건으로 제한되어 업무 비효율	- 일괄 업로드 시 10,000건까지 확대토록 개선 조치
◦ 일정금액 이상 체납자료(기초에서 광역으로 이관한 자료)의 경우 제증명 발급시 조회 되지 않음	- 전국 조회기능 시스템 개선 조치
◦ 감액 결재 도중에 수납된 경우 결재 및 수납처리 비정상 발생	- 감액 결재 이전에도 처리된 감액 금액이 반영되도록 개선 완료
◦ 정기분 부과 시 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 지원 요청	- 정기분 부과 지원을 위해 콜센터 운영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시, 단체의 경우 로그인 어려움	- 단체의 위택스 로그인 시 세무행정시스템과의 매핑조치로 로그인 정상처리
◦ 기존에 구세대시스템에서 사용했던 질의실행기 기능(각종 통계자료 생성) 필요	- 지자체 요구사항은 사업단에서 직접 자료추출 등 개별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109)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처분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행위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회의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은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나, 매년 법제도 개정 및 개선이 발생하는 지방세 업무의 특성상 법제도 개선 사항의 구체적 시행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110]가 있어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111]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추진 내역]

구분	수행일자	참가대상	수행내용	결과
'22년 1차 통합테스트	'22.6.7. ~6.24.	메타넷	• 화면 단위별 업무흐름 점검	점검 완료
'22년 2차 통합테스트	'22.8.29. ~9.30.	시범 자치단체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 시범 지자체 대상 소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검	점검 완료
'22년 3차 통합테스트	'22.10.24. ~12.2.	전체 자치단체	• 화면 단위별 기능, 세액 검증, 업무흐름 점검	점검 완료
'22년 시범운영	'22.11.28. ~12.9.	부산광역시 등 154개 자치단체	• 이관데이터 점검 및 전체 업무흐름 점검	점검 완료
'23년 1차 통합테스트	'23.6.29. ~7.7.	자치단체, 메타넷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위택스 간 업무처리 흐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점검 완료

110) 79개 기관 88개 시스템의 총 669종의 자료를 연계해야함에도 타 기관의 연계 환경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함

111) 추가적으로 개통초기에 주로 문제가 있었던 수납관련 테스트는 실제 금융거래를 발생시켜 테스트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구분	수행일자	참가대상	수행내용	결과
'23년 2차 통합테스트	'23.7.26. ~8.9.	전체 자치단체	• 기능점검 및 세액 교차 검증	점검 완료
'23년 3차 통합테스트	'23.9.18. ~9.22.	자치단체 메타넷	• 그동안 개발이 미진하여 제외하거나 실패한 기능에 대한 집중 점검	점검 완료
'23년 시험운영	'23.10.10. ~'24.2.8.	전체 자치단체	• 업무처리 기능, 데이터 오류 최소화, 대량자료 처리성능 확보, 이관 데이터 검증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은 모두 조치 완료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일선 담당공무원의 건의사항이 접수된 이후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4년 2월에 1만 건을 초과했던 시스템 개선요청 건수가 9월부터는 월별 1천 건 이하로 축소되는 등 시스템이 안정되었다는 입장임.

[2024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월별 시스템 민원 건수]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0,564	6,044	3,717	2,799	2,544	4,410	1,179	856	649	595	471

주: 일선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온라인상 시스템 운영자에게 개선 요청을 한 건수임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 제기했던 오류는 시스템이 매년 변경되고 있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금액이 미납금액으로 표시되거나, 납부관련

자료의 조회가 곤란하거나, 수납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의 시스템상 기술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특히 동 시스템 구축시 사전에 6회의 사전테스트와 2회의 시범운영 등 충분한 횟수의 사전점검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러한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사전테스트 및 시범운영 절차 중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세납부시스템의 오류는 국민의 지방세 징수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일선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부담을 가중시켜 지방세 징수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납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한편, 2025년부터 동 시스템을 서울시와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동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이러한 시스템상 오류의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통한 시스템 개통 초기에 여러 가지 결함과 잦은 오류로 인해 국민과 일선 담당 공무원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 추진시 사전 테스트 및 시범운영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1336-301)

○ 행정안전부는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장기간 경영개선명령 미이행 지방공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 ○ 행정안전부는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점검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여 신속한 경영개선명령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개 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업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을 개선하고, 주민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34억 1,100만원 중 34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112]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3,411	-	-	-	3,411	3,407	-	4	3,411

112) 불용사유: 국내여비 집행잔액

□ 동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113] 및 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크게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으로 구성됨.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고, ‘경영진단’은 경영평가 결과 건전성 및 경영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는 것임.

2024년에는 167개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7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각각 실시했음.

---

113)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2.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경영진단 불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제3항[114]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115]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등의 인사조치,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2020~2024년)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명령 및 그 이행결과를 살펴보면, 총 108건의 경영개선명령에 대해 76건이 이행 완료되었고, 8건이 미완료되었으며, 24건은 기한이 미도래된 상태임.

이 중, 4건의 미완료된 사안은 이행기한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도과되었음에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114)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1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최근 5년간 경영개선명령 미이행 내역]

연번	연도	기관	경영개선명령 내용	이행 기한	이행 여부
1	2020	영광군 하수도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개선으로 원가절감 및 하수처리효율 제고	'21.12월말	**미완료**
2	2021	영양고추유통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경영여건 개선방안 마련	'22.12월말	**미완료**
3	2021	영양고추유통공사	안정적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	'22.12월말	**미완료**
4	2021	전주시 상수도	중대산업재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교육계획 수립	'22.6월말	**미완료**

주: 2025년 7월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이와 같은 경영개선명령의 미이행으로 인해 해당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및 경영구조의 문제점이 지속된다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및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116]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장기간 경영개선명령 미이행 지방공기업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지원 컨설팅 등의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 볼

116) 현행제도는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시 평가점수 1점을 감점하고 있는데, 이미 전체적인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
- 2024년 경영평가지표 체계 : 총점(100점) → <**경영관리(50점)** = 리더십·전략(12점)+경영시스템(19점)+사회적 책임(19점)> + **경영성과(50점)**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장기간 경영개선명령 미이행 지방공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경영개선명령 이행점검 횟수 확대 필요

□ 2025년 6월 18일 기준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점검 현황을 보면, 이행기한이 1년 가량 또는 그 이상 도과한 사례에서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경영개선명령 이행기한이 1년 이상 도과했음에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

연번	연도	기관	경영개선명령 내용	이행 기한	이행 여부[1)]
1	2022	논산시 하수도	하수도시설 개보수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처리시설 유입변동량 관리 개선	'24.6월말	**점검중**
2	2022	함안 지방공사	지속적인 재난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실효적인 운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	'24.6월말	**점검중**
3	2022	함안 지방공사	기관의 신규 자체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	'24.6월말	**점검중**
4	2022	함안 지방공사	기관의 전반적인 중장기 경영전략 재수립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24.6월말	**점검중**
5	2023	대전 교통공사	철도차량 보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4.6월말	**점검중**
6	2023	거제해양 관광개발 공사	(지자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 등 인사조치	'24.3월말	**점검중**

연번	연도	기관	경영개선명령 내용	이행 기한	이행 여부[1]
7	202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개편 방안 수립 및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24.6월말	**점검중**
8	202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관의 미션 및 경영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경영전략 재수립	'24.6월말	**점검중**
9	202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종합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4.6월말	**점검중**
10	202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약품비 절감 등 대행사업비 관리 강화	'24.6월말	**점검중**

주1) 이행여부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와 같이 이행기한이 1년 또는 그 이상 도과하였음에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행여부의 점검을 경영평가 기간(매년 3~6월)에 실시하고 있고, 과제의 완료 기한이 경영평가 발표시기 (매년 8월초, 잠정)와 맞물리는 경우 결과발표 이전 실적검증이 어려워 차년도에 이행점검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117]

이는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여부가 경영평가의 점수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점검을 경영평가 일정에 연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둔 취지가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및 경영구조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점검을 경영평가의 수단으로만 활용하

117) 실적 검증 → 검증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수용 여부 검토 → 경영평가 반영

는 것을 넘어서 경영개선명령이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확보 및 경영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를 위해서는 이행기한이 도래하면 가능한 조속히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해당 지방공기업에게 그 결과를 환류하고, 미이행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조치를 지원하는 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점검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여 신속한 경영개선명령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배달료 지원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일정을 반영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2024회계연도에 실집행이 부진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비 매칭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지역경제 우수정책을 발굴·확산하고,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지방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생활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56억 700만원 중 44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경제활성화	5,582	5,582	25	-	-	5,607	4,420	-	1,187	3,819
정책추진 보조요원	82	82	-	-	-	82	78	-	5	85
지역경제정책 활성화	233	233	-	-	-	233	182	-	51	183
지방물가안정관리등추진	**4,833**	**4,833**	**25**	**-**	**-**	**4,858**	**3,783**	**-**	**1,075**	**3,117**
지방규제개혁 추진	137	137				137	133	-	4	137
지방규제개혁 공론화과정 지원	297	297	-	-	-	297	244	-	53	297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착한가격업소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요와 추가경정예산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집행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 추진’ 사업은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지방물가를 관리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 **(도입배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사업기간)** 2011년~
- ○ **('24년 예산)** 160억원 (국비 48억, 지방비 112억)
- ○ **(지원현황)** 11,001개소('25.7 기준)

□ **사업방식** ('24년 기준)
- ○ **(선정방식)**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시·군·구)에서 선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선정
- ○ **(지원내용)** 시·도별 착한가격업소 운영비* 및 배달료** 일부 보조(보조율 30%)
  - * 업종별 주방용품, 세탁·청소용품, 미용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85만원 한도)
  - ** 착한가격업소 배달주문 시 배달료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내 설명자료를 재구성

□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

정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운영비 명목의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25년 7월 기준 11,001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외식업 업소가 6,572개소(59.7%), 그 외 업소가 4,429개소(24.1%)를 차지하고 있음.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25.7월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외식업		외식업 外							
	소계	비중	소계	세탁	이용	미용	목욕	숙박	기타	비중
11,001	6,572	59.7%	4,429	210	311	1,599	113	109	315	40.3%

자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 착한가격업소 안내 → 지정현황

□ 특히, 행정안전부는 2024회계연도에 운영비 지원과 별도로 배달앱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건당 2,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 **(도입배경)**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추진
- ○ **('24년 예산)** 총 100억원 (국비 30억, 지방비 70억)
- ○ **(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 **(지원대상)** 민간·공공배달앱으로 착한가격업소 메뉴 주문 · 배달 이용자
- ○ **(추진방식)** 배달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소비자에게 2천원 할인쿠폰 제공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해당 사업의 2024년회계연도 예산현액 30억원 중 9억 6,000만원만 실제로 집행되어(실집행률 32%) 실집행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배달료 지원수요와 추가경정예산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착한가격업소 지원	4,820	4,820	25	-	4,845			-	
운영비 지원	1,785	1,785	-	-	1,785	1,785	1,725	-	-
배달료 지원	**3,000**	**3,000**	**-**	**-**	**3,000**	**1,927**	**960**	**-**	**1,072**
기타 운영경비	35	35	25	-	60			-	

※자료: 행정안전부

□ 첫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배달료 지원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배달료 지원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은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 중 지방자치단체별 착한가격업소 배달앱 이용 현황 및 시·군·구 여건 및 참여의사 등을 조사하여 배달료 지원 예산을 확정하였다는 설명임.

□ 다만, 해당 사업이 국회 증액분으로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외식업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고려하여 시도별 예산을 배분했어

야 하나, 시도별 국고보조금 매칭 금액을 살펴보면 시·도별 외식업소 수와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118].

[시·도별 착한가격업소 외식업소 수 및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외식업소 수 ('24.11기준)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교부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서 울	628	426	304	122	71.4
부 산	507	411	85	326	20.7
대 구	248	201	32	169	15.9
인 천	160	117	74	43	63.2
광 주	146	183	34	149	18.6
대 전	269	285	66	219	23.2
울 산	88	39	13	26	33.3
세 종	33	42	-	-	0.0
경 기	591	408	137	271	33.6
강 원	466	141	38	103	27.0
충 북	256	72	13	59	18.1
충 남	233	96	18	78	18.8
전 북	257	48	18	30	37.5
전 남	327	72	14	58	19.4
경 북	373	213	31	182	14.6
경 남	344	168	51	117	30.4
제 주	199	78	26	52	33.3
합계	5,125	3,000	960	2040	32.0

주) 착한가격업소 외식업소 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했던 시기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내 설명자료를 재구성

118)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예산 교부 시 외식업소 수 뿐만 아니라 시·군·구 여건 및 참여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또한, 일부 군 단위 지역의 경우 배달 플랫폼이 진출해있지 않고 음식점 수가 부족한 등 지방자치단체별 배달 인프라 구축 정도가 상이[119]함에도 이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120][121].

□ 둘째,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사업기간이 40% 이상 도과된 5월에 일괄 교부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국비 우선집행을 위해 사업비 전액을 2024년 5월 7일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6월 이후로 추진됨에 따라 동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6월~11월)하였다는 설명임.

□ 이후 2024년 8월 기준 집행률이 약 10.1%로 저조하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 조정을 건의하였고 사업비 조정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24.09.27.)한 후 9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이미 지급하였던 10억 7,200만원이 반납되었다는 입장임[122].

---

119)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군 단위 지역의 경우 배달 플랫폼이 진출해있지 않고 음식점 수가 부족하여 집행이 저조하였음

120) 특히,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6~11월 배달료 지원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월평균 약 154개임

121)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4회계연도에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제고(7033-301)'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책홍보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홍보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으나, 이를 해를 넘긴 2025년에 공개하였음. 이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에 관한 홍보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함.

122)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 30억 중 반납받은 10억 7,200만원을 2024 회계연도에 불용처리하고, 교부액 19억 2,800만원 중 집행액은 9억 6,0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6,800만원으로, 동

[사업비 조정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금 변경 현황]

(단위: 천원, %)

시도별	당초 국고보조금	변경		
		집행액	국비반납액	반납률
부 산	411,000	100,932	310,068	75.4
인 천	117,000	78,600	38,400	32.8
광 주	183,000	41,106	141,894	77.5
대 전	285,000	73,350	211,650	74.3
세 종	42,000	0	42,000	100.0
충 남	96,000	23,961	72,039	75.0
전 남	72,000	33,411	38,589	53.6
경 북	213,000	37,281	175,719	82.5
제 주	78,000	36,255	41,745	53.5
합 계	1,419,000	388,641	1,030,359	72.6

자료: 행정안전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23]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함)[124]에 의하면, 중

집행잔액은 2025 회계연도 내에 반납 완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12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124) 「집행지침」 p115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125], 자치단체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126].

[관계법령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방식]

(원칙) 2회 이상 분할 교부
(예외) 일괄 교부 가능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 사업
- 자부담분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 매칭사업

□ 행정안전부가 2024년 5월 국고보조금을 일괄로 교부한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지침」 및 「집행지침」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통상적으로 5월과 6월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2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126) 「집행지침」 p118
(3) 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 우선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추후 당해연도에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한다.
- 다만, 전년도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심사하므로, 국비 우선집행을 통해 동 사업의 집행률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면 5월보다 더 빠른 시기에 국고보조금을 일괄로 교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별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

구분	제안일	본회의 의결일	구분	제안일	본회의 의결일
서 울	2024.05.27.	2024.06.25.	경 기	2024.08.22.	2024.09.23.
				2024.11.01.	2024.12.30.
부 산	2024.05.24.	2024.06.18.	강 원	2024.04.26.	2024.05.23.
	2024.11.11.	2024.12.12.		2024.11.11.	2024.12.13.
대 구	2024.05.30.	2024.06.24.	충 북	2024.04.12.	2024.04.30.
	2024.10.25.	2024.11.28.		2024.08.23.	2024.09.11.
인 천	2024.05.21.	2024.06.28.		2024.10.24.	2024.11.25.
	2024.11.08.	2024.12.13.	충 남	2024.04.03.	2024.04.24.
광 주	2024.04.18.	2024.05.13.		2024.11.15.	2024.12.16.
	2024.11.04.	2024.11.27.	전 북	2024.04.25.	2024.05.17.
대 전	2024.04.19.	2024.05.10.		2024.11.06.	2024.12.13.
	2024.11.18.	2024.12.13.	전 남	2024.05.03.	2024.05.23.
울 산	2024.04.08.	2024.04.30.		2024.11.11.	2024.12.05.
	2024.08.20.	2024.09.06.	경 북	2024.04.12.	2024.05.03.
	2024.11.11.	2024.12.11.		2024.11.29.	2024.12.20.
세 종	2024.02.23.	2024.03.21.	경 남	2024.04.29.	2024.05.24.
	2024.08.16.	2024.09.10.		2024.10.18.	2024.11.27.
	2024.09.13.	2024.10.11.	제 주	2024.05.03.	2024.05.24.
	2024.11.01.	2024.11.25.		2024.11.29.	2024.12.16.

자료: 각 도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또한, 해당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실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 일부를 초반에 교부한 뒤 집

행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남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업비를 조정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비 매칭 사업에서 실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정부청사관리본부】

23.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2231-301)

○내역사업인 ‘편의시설 정비’는 타 내역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집행지침」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사업은 정부청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정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안전한 정부청사 조성을 위한 노후 시설물 등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64억 5,200만원 중 160억 5,100만을 집행하고 4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18,041	18,041	80	△1,669	-	16,452	16,051	-	401	16,227
시설점검 및 진단	2,374	2,374	-	△735	-	1,637	1,619	-	18	2,018
노후시설정비	12,121	12,121	-	△932	-	11,008	10,685	-	323	8,904
방호보안시설 보강	2,563	2,563	80	△2	-	2,238	2,236	-	2	4,361
편의시설 정비	983	983	-	-	-	1,568	1,511	-	57	944

※자료: 행정안전부

나. 편의시설 정비 : 낙찰차액을 활용한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신규사업 실시

□ 내역사업인 ‘편의시설 정비’는 정부청사 내 입주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편의시설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5억 6,800만원 중 15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편의시설 정비 내역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편의시설 정비	983	983	-	-	-	1,568	1,511	-	57	944
실시설계비(420-02)	10	10	-	-	-	10	10	-	-	43
공사비(420-03)	180	180	-	-	-	346	291	-	55	206
자산취득비(430-01)	**793**	**793**	**-**	**-**	**-**	**1,213**	**1,210**	**-**	**2**	**695**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24회계연도에 타 내역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내역변경 등의 예산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2023.12.26. 세종청사 내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음향·영상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자 자산취득비(430-01목) 예산현액을 4억 2,000만원 증액하여 ‘국무회의실 음향시스템 개선’을 위한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회의용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교

체[127]하였음.

[2024회계연도 편의시설 정비 자산취득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세목	내내역사업	본예산 (A)	현액 (B)	증감 (B-A)	집행	불용액
자산 취득비	대강당 등 회의실 장비교체	560	980	420	977	3
	국무회의실 음향시스템 개선	-	**420**	**420**	**358**	**62**
	휴게공간 등 공용공간 환경개선	233	233	-	233	-
	합계	793	1,213	420	1,210	3

※자료: 행정안전부

□ 이때,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의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음.

[국무회의실 음향시스템 개선을 위해 활용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세목	본예산 (a)	현액 (b)	증감 (b-a)	비고
노후시설 정비	시설물 보수작업	자산취득비	268	251	△17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방호보안 시설보강	노후 영상설비 (CCTV 등) 관제설비	자산취득비	1,000	917	△83	
	청사 출입통제 장비 등 정비	자산취득비	1,403	1,083	△320	
합 계			**2,671**	**2,251**	**△420**	

※자료: 행정안전부

127)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사비(420-03)목 또한 본예산 대비 1억 6,600만원 증액하여 활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 10월 16일 긴요긴급한 노후시설 보수필요 공사 집행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사비목의 낙찰차액 사용 승인을 얻어 집행한 것임. 한편, 「집행지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시 공사비 비목의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검토하였고, 연초에 기정 예산을 활용하여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뒤 부족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다만, 당초 계약 금액을 4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비용은 3억 5,800만원이 소요되어, 타 내역사업의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국무회의실 음향시스템 개선'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설명임.

[국무회의실 음향시스템 개선 추진 경과]

일 자	경과사항
'23.12.26.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음향·영상시스템 장애 발생
'24.02.16.	'국무회의실' 음향·영상시스템 교체 예산확보 방안 검토
'24.02.21.	부족재원 확보 방안 검토를 위해 행안부 기조실 및 기재부 행정예산과 협의 ⇨ (기재부 의견) 연초이므로 기정 예산을 활용하여 긴급 사업 추진하고, 향후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부족재원 필요시 전용 의견
'24.04.18.	계약의뢰[조달청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4.07.24.	'국무회의실 음향시스템 개선' 계약 완료(계약금액 361백만원)
'24.10.24.	'국무회의실 음향시스템 개선' 준공검사 완료(준공금액 358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함)은 정보화사업 예산, 일반용역비(210-14목), 연구용역비(260목), 건설비(420목)의 낙찰차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취득비(420-03목)

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집행지침」이 자산취득비의 낙찰차액의 활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낙찰차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오히려 행정안전부의 예산 집행 행태는 명확한 법적·지침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음.

□ 또한, 연초에 타 내역사업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사전에 예측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예산을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상 원칙[128]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예산 변경 절차 없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사전에 예측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2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4.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2231-302)

○ 행정안전부는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예산변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사업은 13개 정부청사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관리, 미화 등 8개 분야의 직접고용 인건비·운영비와 승강기, 방역 등 전문분야 위탁용역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275억 6,400만원 중 1,266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35,204	135,204	-	△7,640	-	127,564	126,687	52	825	139,093
청사관리 직접운영 (인건비)	**95,527**	**95,527**	**-**	**△7,640**	**-**	**87,887**	**87,514**	**-**	**373**	**98,525**
청사관리 직접운영 (운영비)	5,044	5,044	-	282	-	5,326	5,047	-	278	5,044
청사관리 위탁용역	7,187	7,187	-	△282	-	6,905	6,788	-	117	7,998
어린이집 운영보조	26,278	26,278	-	-		26,278	26,273	-	5	26,656
정부청사 중대재해예방	1,168	1,168	-	-		1,168	1,065	52	51	870

※자료: 행정안전부

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충족을 위한 노력 필요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임[129].

□ 그런데, 최근 5년간 청사관리본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살펴보면, 공무직 근로자와 청원경찰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3.4~3.8%)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129) **「장애인고용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최근 5년간 정부청사관리본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원 (A)	2666	2590	2545	2618	2679
장애인 정원	74	73	64	64	64
고용실적기준 정원 (B)	84	83	72	76	79
고용률 (B/A)	3.2	3.2	2.8	2.9	2.9
법정 의무고용비율	3.4	3.4	3.6	3.6	3.8
법정 의무고용인원	85	88	92	94	102

주) 고용실적기준 채용인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인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또한, 「장애인고용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인원에 대해서도 동 법에 따른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채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공무원 정원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무채용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130].

□ 최근 5년간 청사관리본부의 공무직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채용인원에 대해서도 2021년을 제외하면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130) **「장애인고용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달성하지 못하였음[131].

[최근 5년간 정부청사관리본부 신규채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채용인원 (A)	300	95	208	400	350
장애인 채용인원	3	7	4	8	8
고용실적기준 채용인원 (B)	4	8	4	11	12
채용률 (B/A)	1.3	8.4	1.9	2.8	3.4
법정 의무채용비율	6.8	6.8	7.2	7.2	7.6
법정 의무채용인원	20	6	15	29	27

주 1) 고용실적기준 채용인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인원

2) 2020~2024년 모두 장애인 공무원 수가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여야 했음.

자료: 행정안전부

□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용·세목조정을 통해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하였는데, 2024회계연도에도 45억 3,700만원의 장애인부담금을 전액 세목조정을 통해 납부하였음.

131) 한편, 2021년의 경우 공무직 장애인 채용인원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은 충족하였으나, 해당 연도 전체 공무직 정원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2배인 6.8%(약 7명)를 채용하였어야 했음.

[최근 5년간 정부청사관리본부 장애인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납입액			납입액에 대한 산출식
		본예산	전용·세목조정	
2020년	36,114	-	36,114	72,226천원(전체부담금)×50% 67명×1,078,000원=72,226,000원
2021년	81,504	-	81,504	163,006천원(전체부담금)×50% 149명×1,094,000원=163,006,000원
2022년	179,324	-	179,324	358,488천원(전체부담금)×50% 312명×1,149,000원=358,488,000원
2023년	384,495	-	384,495	461,947천원(전체부담금)×83% 361명×1,279,631원=461,946,900원
2024년	453,727	-	453,727	606,688천원(전체부담금)×75% 477명×1,272,425원=606,946,900원

주) 부담금 산출 시 인원은 매월 미달 인원의 합임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술직 및 청원경찰은 자격증, 신체 조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부족하여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술직 및 청원경찰 모집 분야의 응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채용공고 홍보 확대, 장애인 고용공단의 고용 컨설팅 프로그램 활용 등 채용 절차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장애인고용법」이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국가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132], 국가기관이 연례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해 장애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32) **「장애인고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25.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2213-303)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연내 집행가능성 및 추가 행정절차에 대해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향후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과 같이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예산이 재이월되고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연내 예산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은 1960년에 준공되어 노후가 심하고 내진성능이 미비한 창성동별관을 철거 후 재건축하여 정부청사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00억 3,400만원 중 125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74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17,644	17,644	2,390	-	-	20,034	12,556	7,452	26	2,953
창성동별관 재건축	17,644	17,644	2,390	-	-	20,034	12,556	7,452	26	2,953

※자료: 행정안전부

나. 사업관리 미흡으로 인한 연례적 사업 지연

□ 행정안전부는 기존 창성동별관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안전성이 D등급, 내진성능이 '붕괴위험'으로 평가[133]되자 2018년 해당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하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였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 개요]

□ **건립개요**
- ○ **(사업목적)** 1960년에 준공되어 노후가 심하고 내진성능이 미비한 창성동 별관을 철거 후 재건축하여 정부청사 시설의 안전 확보
- ○ **(위　　치)**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39 (창성동 117-6번지)
- ○ **(규　　모)** 대지 4,236㎡, 건물 10,590㎡ (지하1층, 지상4층)
- ○ **(사업기간)**
  - (당초) '18.1.1. ~ '22.12.31
  - (변경) '18.1.1. ~ '25.6.30.
- ○ **(총사업비)** 325억 6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4차례의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기간이 종전 대비 2년 6개월 연장되었음.

133)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함.
※ 안전등급(5단계)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성능수준(4단계) : 거주가능(IO), 인명안전(LS), 붕괴방지(CP), 붕괴위험(CO)

[사업기간 변경 관련 총사업비 협의조정 내역]

구분	일자	조정내역	변경사유
1차	2020. 4. 7.	~'22.12.31.→~'23.12.31. (+1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건설현장 주당 근로시간 단축
2차	2022. 7. 21.	~'23.12.31.→~'24.12.31. (+1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계약 및 조사 실시
3차	2023. 9. 20	~'2412.31.→~'25.3.31. (+3개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로 인한 추가 토목공사 및 대지경계선 내 도시가스 배관 간섭에 따른 배관 이설 공사 등 추가
4차	2025. 3. 13.	~'25.3.31.→~'25.6.30. (+3개월)	동절기에 따른 계획공정 지연 및 교통영향평가 이행 관련 추가적인 도로공사 추진에 따른 부족 공사기간 반영, 준공정산 등 행정처리 기간 추가 반영

주) 당초 계획은 '18.1..~'22.12.31.이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2018년 7월「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2021년 공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는데, 2023년 및 2024년에도 추가 공사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당초 예상된 2022년 12월보다 약 2년 4개월이 지연된 2025년 4월에 청사를 준공하였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실시 현황]

구분		당초 계획	실제 실시 현황	지연 기간	지연사유
설계	기본	'18.4.~'19.1.	'18.10.~'19.3.	-	
	실시	'19.2.~'20.2.	'19.4.~'19.12.		
철거공사		'20.7.~'20.9.	'21.4.~'21.8.	11개월	청사경비대 철수 일정('19.12.→'20.7.) 변경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이전시기('20.8.→'21.3.) 조정
문화재	시굴조사	'20.9.~'20.12.	'21.7.~'21.10.	1년 11개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발굴조사 준비·실시
	정밀발굴	-	'21.10.~'22.11.		
건설공사		'21.5.~'22.12. (총 19개월)	'23.2.~'25.4. (총 26개월)	2년 4개월	①근로기준법 개정('18.7월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주당 근로시간 단축(68→52시간)으로 공사기간 재조정 (1년) ②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계약 및 조사실시(1년) ③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따른 추가 작업 발생으로 사업기간 조정(3개월) ④교통영향평가 이행 관련 관할구청 요청에 따른 추가 도로공사 추진 및 동절기에 따른 계획 공정 지연 등 추가 공사기간 반영(3개월)
준공		'22.12.	'25 4.	2년 4개월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연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연내 집행가능성 및 추가 행정절차에 대해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00억 3,400만원 중 125억 5,600만원만 집행하고(집행률 62.7%) 74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이월률 37.2%)[134].

[2024회계연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17,644	17,644	2,390	-	-	20,034	12,556	7,452	26	2,953
- 공사비(420-03)	16,559	16,559	2,280	△22	-	18,817	11,642	7,165	10	2,808
- 감리비(420-04)	1,056	1,056	108	-	-	1,164	860	287	16	84
-시설부대비(420-05)	29	29	2	22	-	54	54	-	-	61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지반보강 공사[135], 외부도로 공사[136] 등 추가공사를 추진하고 폭염·폭설 등으로 공

134) 구체적으로, 공사비(420-03목)의 경우 예산현액은 188억 1,700만원 중 116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61.8%) 71억 6,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감리비(420-04목)의 경우 예산현액 11억 6,400만원 중 8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73.8%) 2억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00만원을 불용하였고, 시설부대비(420-05목)의 경우 예산현액 5,4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음.

135) 행정안전부는 당초 내진 철근을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조달청 품목에 내진 철근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고강도철근을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다는 설명임

136) 행정안전부는 종로구청과의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로공사가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임.

사가 중단되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설명이며, 2025년도에 이월된 예산액 74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10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2025년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 주요 추진경과]

추진 일자		추진 내용
2025	2.15.	건설공사(3차) 준공
	3.26.	2025년 1분기 합동점검(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4.22.	창성동 별관 건립사업 예비 준공검사
	4.30.	창성동 별관 건립사업 준공

※자료: 행정안전부

□ 다만,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2023년 계획 공정률을 43%, 2024년 공정률을 57%로 예상하였는데, 문화재 발굴조사로 공사가 2023년 2월에 시작되었고, 실제 공정률이 매년 34% 이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관적 기대에 근거하여 예산을 과다계상하였던 측면이 있어 보임.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 계획 공정률 및 실제 공정률]

구분	계획 공정률('23.5 기준)	실제 공정률
2023년	43%	34%
2024년	57%(100%)	34%(68%)
2025년	-	32%(100%)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137]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인허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공사 소요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했을 것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조달청의 자재목록에 당초 계획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자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계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138].

□ 이와 관련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행가능한 예산 계상 필요”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행정안전부는 향후 추가적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을 제고하겠다며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

13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용도	용도별 건축물 종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1)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38) 또한, 폭염·폭설 등으로 공사가 중단은 모든 공사에 대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해당 사업에서만 특별히 문제된다고 볼 여지가 적음.

“조치완료”를 보고하였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요구명(유형)	관계기관간 협조를 통한 집행가능한 예산 계상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발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의 경우, 문화재 조사에 따른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결과 집행부진이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문화재발굴조사 등 행정절차의 진행경과 및 종료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할 것
조치결과	○ 사업지연의 원인이었던 문화재 조사는 ’22년 11월 완료되었음. ○ 또한, 문화재 조사로 인해 지연된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재수립하였음 - 사업기간 3개월 연장(기획재정부 협의) - 잔여공사분에 대하여 실 집행이 가능하도록 ’24년, ‘25년 연도별 투자계획을 재수립 하였음 ○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없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 제고하겠음 ○ 조치완료 : ’23년 12월 12일

□ 따라서, 사업지연에 대해 국회의 시정조치요구도 제기된 바 있고, 당초 공사가 개시될 예정이었던 2021년 이후 연례적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재 수급 문제에 따른 설계 변경, 인허가 과정에서의 추가공사 실시 등으로 사업이 추가로 지연된 것은 행정안전부의 사업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연도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C)	이월율 (C/A)	불용액
2018	687	-	687	144	21.0	374	54.4	169
2019	843	374	1,217	1,184	97.3	-	0.0	33
2020	4,629	-	4,196	3,765	89.7	284	6.8	147
2021	1,002	284	1,286	927	72.1	318	24.7	41
2022	5,000	318	4,318	2,730	63.2	1,588	36.8	-
2023	7,961	1,588	7,049	4,659	66.1	2,390	33.9	-
2024	17,644	2,390	20,034	12,556	62.7	7,452	37.2	26
2025	2,953	7,452	10,405	10,192	97.9	-	-	213

자료: 행정안전부

□ 향후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과 같이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예산이 이월되고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연내 예산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6. 인건비(2501-10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법의관 결원으로 인해 인건비 미집행 예산을 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외부 촉탁의 부검이 증가하여 부검료 지급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등 연례적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의관 인력의 실효적인 충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인건비’ 사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사 감정수행 인력 및 지원인력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 직원 인건비 지급을 통해 과학수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338억 2,700만원 중 33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	34,976	34,976	-	△1,149	-	33,827	33,650	-	177	37,618
인건비	34,976	34,976	-	△1,149	-	33,827	33,650	-	177	37,618

※자료: 행정안전부

나. 연례적 법의관 정원 미달 해결방안 마련 필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4회계연도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액 349억 7,600만원 중 11억 4,900만원을 타 내역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각 세항(단위사업) 또는 목 사이에서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세출예산전용권 위임범위” 내에서는 부처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함.[139)]

□ 이에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함)은 예산의 전용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등을 구체화하면서 인건비에서 타 비목으로의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140)]하고 있으나, 책임운영기관[141)]인 국

---

139)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140) **「집행지침」** p45
(2) 인건비와 타 비목간 전용 최소화
가) 인건비에서 타 비목으로 전용
○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다음의 경우로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정부업무의 외부 위탁·대행에 따라 관련 인건비를 관리용역비(210-15목),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등 위탁·대행 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고용보험 포함) 및 산재보험 등

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 이·전용의 특례가 적용됨.

- 구체적으로, 「집행지침」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집행지침상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인건비(100목)와 물건비(200목)간 상호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음[142].

□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4회계연도 '인건비' 사업에 편성된 예산액 349억 7,600만원 중 11억 4,900만원을 '국과수기본경비(총액)' 사업으로 전용하였고, 338억 2,700만원으로 감액된 예산현액 중 33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음.

고용부담금(320-09목)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기타 채무상환,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

14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예산의 전용 관련 특례가 적용됨.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142) 「집행지침」 p74

7-5. 예산 이·전용의 특례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상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100목)와 물건비(200목)간 상호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당해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024회계연도 인건비 내역사업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9.12.)	인건비(국과수) (2501-108)	110-01	864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511-200)	210-02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전용 ('24.12.24)			285			

자료: 행정안전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타 내역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결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43]에 따른 2024년도 국립과학수사원 정원은 455명인데 반하여 현원은 417으로 2024회계연도에 총 38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1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43호, 2024.12.31. 시행)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
(제50조제8항 관련)

총계	455
일반직 계	44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1
3급 또는 4급 이하	405
전문직공무원	36
전문경력관	1
경찰공무원 계	9

□ 그런데, 최근 5개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정원 대비 30~40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법의관 직역의 결원율이 타 직역대비 높음.

[2020~2024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원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정원(a)	현원	결원(b)	결원률(b/a)
2020	계	454	416	**38**	**8%**
	법의관	53	33	**20**	**38%**
	연구인력	319	305	13	4%
	행정인력	82	78	4	5%
2021	계	456	417	**38**	**8%**
	법의관	53	34	**19**	**36%**
	연구인력	319	306	12	4%
	행정인력	84	77	7	8%
2022	계	458	412	**45**	**10%**
	법의관	51	33	**18**	**35%**
	연구인력	326	303	22	7%
	행정인력	81	76	5	6%
2023	계	453	410	**42**	**9%**
	법의관	49	33	**16**	**33%**
	연구인력	324	302	22	7%
	행정인력	80	75	4	5%
2024	계	455	417	**38**	**8%**
	법의관	49	33	**16**	**33%**
	연구인력	326	308	18	6%
	행정인력	80	76	4	5%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인건비에 집행하지 못하고 타 내역사업에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매년 11~22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타 내역사업으로 이·전용되고 있음[144].

[2020~2024년 인건비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 (B/A)
2020	31,873	△2,294	29,579	29,510	69	92.6
2021	32,906	△1,872	31,034	30,542	492	92.8
2022	33,201	△1,344	31,857	31,543	314	95.0
2023	34,042	△1,378	32,664	32,285	379	94.8
2024	34,976	△1,149	33,827	33,650	177	96.2

자료: 행정안전부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집행지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사업 예산을 타 내역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편성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연례적으로 운영경비 등으로 전용되어 사실상 인건비의 일부가 기본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의 목적과 상이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매년 법의관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 수준, 민원인 대응, 법정 출석 등의 업무

144) 구체적인 이·전용내역에 대해서는 후단의 참고자료 참조

부담에 따른 재직자의 퇴직과 채용시험 지원자 미달[145]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제 연봉 자율 책정 특례를 활용해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여 우수 인력을 유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의관의 자격, 직무, 법의관 양성 지원 등을 규정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146]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 다만, 그간 국회에서 법의관 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지적[147]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의관 인력의 실효적인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검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수요를 촉탁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 구체적으로, 최근 5개년 촉탁의 집도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여전히 촉탁의 수가 법의관 현원에 비해 많은 상황임.

---

145) 특히, 부검 업무는 감염 및 부상 위험이 상존하는 고난이도 업무이며 대부분의 법의관은 전문의로서 자격시험을 통과하기까지 10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신규 지원자가 없어 결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임.

146) 제22대 국회 기준,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2건(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186호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861호)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147) 이와 관련하여,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 내 법의관 부족으로 인해 부검이 지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마약감정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양성과 인력충원을 위하여 법의학과 운영·전문직 공무원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정원 대비 부족한 법의관 현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최근 5개년 촉탁의 인원 및 촉탁의 부검 집도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의관 인원	33	34	33	33	33
촉탁의 인원	40	45	37	37	38
부검 건수	9,110	8,705	8,428	8,059	8,485
법의관 집도	6,409	6,008	5,668	5,375	5,658
촉탁의 집도	2,701	2,697	2,760	2,684	2,827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촉탁의에게 부검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상근법의관 부검촉탁' 내역사업의 예산액이 매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24회계연도에는 편성된 예산액이 부족하여 4,3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촉탁의에게 부검수당을 지급하였음.

['비상근법의관 부검촉탁' 내역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세목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0	279	-	75	354	354	0
2021	300	-	△4	296	296	0
2022	352	-	31	383	382	1
2023	387	-	15	402	399	3
2024	426	-	43	469	469	0

자료: 행정안전부

[과학수사감정지원 사업의 부검 촉탁비 관련 세목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조정 사유
	내역사업	세목		내역사업	세목	
세목조정 ('24.12.25.)	과학수사 감정지원 (2531-303)	210-03 210-09	33	과학수사 감정지원 (2531-303)	210-01	부검 촉탁비 부족
세목조정 ('24.12.31.)		210-03	10			

자료: 행정안전부

□ 이처럼, 연례적 법의관 정원의 미달에 따른 인건비의 집행부진은 매년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으로 이어져 예산 편성 당시의 목적과 상이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외부 촉탁의 부검 증가에 따른 부검료 지급 부담의 증가로 과학수사감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다른 내역사업들의 내실 있는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등 연례적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법의관 인력의 실효적인 충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참고 최근 5개년 인건비 사업 예산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결원 및 상세내역	예산액	이·전용	불용액 148)	주요 이·전용 사유
2020	- 기준정원 : 454 - 운영정원 : 454 - 현원(휴직포함) : 418 - 결원 : △36	31,873	△2,294	69	①이용(734백만원):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복구비 마련 ②이용(1,560백만원): 재난대책비 마련
2021	- 기준정원 : 456 - 운영정원 : 456 - 현원(휴직포함) : 418 - 결원 : △38	32,906	△1,872	492	①이용(1,453백만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마련 ②이용(47백만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마련 ③전용(23백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비 부족 ④전용(308.4백만원)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 ⑤전용(26백만원) : 시설물 내구성 유지 및 소모성 물품 교체, 공용차량 소모품 교체 ⑥전용(10.7백만원) : 전문직공무원 승진가급 적용 ⑦전용(3.8백만원) : 전문직공무원 승진가급 적용
2022	- 기준정원 : 458 - 운영정원 : 458 - 현원(휴직포함) : 412 - 결원 : △46	33,201	1,344	314	①전용(30백만원): 코로나19 보건소 파견 공무원 주거지원비 지급을 위해 국과수 기본경비(총액)사업의 임차료로 전용 ②전용(76백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마련을 위해 국과수 기본경비(총액)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전용 ③전용(659백만원) : 감정장비 신규구매 및 시설규모 증가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국과수기본경비(총액)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로 전용

(단위: 백만원)

연도	결원 및 상세내역	예산액	이·전용	불용액 148)	주요 이·전용 사유
					④전용(4백만원) : 당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국과수기본경비(총액)사업의 일숙직비로 전용 ⑤이용(559백만원) : 태풍 피해 복구비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이용 ⑥전용(10백만원)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대면회의, 워크숍 증가 등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과수기본경비(총액) 사업의 국내여비로 전용 ⑦전용(2백만원) : 수석전문관 지급단가 상승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마련을 위한 국과수 기본경비(총액) 사업의 직책수행경비로 전용 ⑧전용(3.8백만원) : 총액인건비 직제신설로 인한 국과수기본경비(총액)사업의 직책수행경비로 전용
2023	- 기준정원 : 453 - 운영정원 : 453 - 현원(휴직포함) : 419 - 결원 : △34	34,042	△1,378	379	①전용(605백만원):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②전용(698백만원):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③전용(28백만원) : 안정적인 청사 보안을 위한 일숙직비 부족분 충당 ④전용(31백만원) : 여비 지급단가 상승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⑤이용(12백만원) : 수석전문관 지급단가 변경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 ⑥전용(4백만원) : 총액인건비 제 운영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

(단위: 백만원)

연도	결원 및 상세내역	예산액	이·전용	불용액 148)	주요 이·전용 사유
2024	- 기준정원 : 455 - 운영정원 : 455 - 현원(휴직포함) : 420 - 결원 : △35	34,976	△1,149	177	①전용(864백만원):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②전용(285백만원):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자료: 행정안전부

148) 불용사유는 전부 정원 미달 운영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임.

27.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2531-30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감정장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예산을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연례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향후 「집행지침」 및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적절한 비목에 계상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사업은 지능화·고도화된 최신 범죄에 대응하고, 감정결과 도출의 신속성 및 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감정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93억 6,900만원원 중 9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학수사감정 장비현대화	9,369	9,369	-	-	-	9,369	9,367	-	2	5,163
감정장비유지보수	1,300	1,300	-	-	-	1,300	1,299	-	1	1,300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보강	8,069	8,069	-	-	-	8,069	8,068	-	1	3,863

※자료: 행정안전부

나. 「집행지침」 및 내부 감사 결과에 부합하는 비목 편성 필요

□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감정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현재 감정에 투입되는 감정장비의 오류에 대응하고, 감정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감정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 사업 예산액 13억원 중 12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부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관리용역비(210-15목)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항목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편성하였고, 2024회계연도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초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세목조정하였음.

[감정장비 유지보수 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조정 사유
	내역사업	세목		내역사업	세목	
세목조정 (‘24.1.4)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2531-304)	210-09	946.5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2531-304)	210-15	감정장비 유지보수 계약 건의 감사관실 일상감사 시 권고사항으로 조정

자료: 행정안전부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함)에 의하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반면,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을 의미함[149].

□ 「집행지침」을 참고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는 감정장비 수리 용역은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감정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관리용역비 비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4년 예산안에 모든 용역계약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으로 편성하였고,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이 소요되는 감정장비 수리를 위한 용역계약은 해당 비목 내에서 집행하였으나, 비교적 오랜 기간(약 1년)이 소요되는 감정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의 경우 2024회계연도에 관리용역비 비목으로 세목조정한 뒤 집행하였음[150].

---

149) 「집행지침」 p161
1-13. 관리용역비(210-15목)
가. 적용범위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반면,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150) 한편, 2023회계연도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감정장비 유지보수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소요되는 감정장비 수리 용역을 모두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리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목적	부서명	장비명	용도	집행액	계약기간
감정장비 유지보수	독성화학과	열분해자동주입기 (GC/MS)	미세증거물(고분자 물질 등) 성분 분석	22	'24.1.~12.
	유전자분석과	Biomek3000	감정증거물 (시료)로부터 DNA자동추출 (외부 오염 최소화)	3.8	
		핵산추출기		4.2	
	이공학과	주사형전자현미경	화재 및 안전사고 감정 시 고배율 및 성분 측정	5.5	
	법의학과	MIMICS	부검 시신의 3D화 인체모델 제작 및 계측·분석	19.6	
		MDCT	부검 전 시신 CT 영상 촬영	154.8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2024회계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본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목적	부서명	장비명	용도	집행액	계약기간
감정장비 수리	화학과	MC-ICP-MS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임의의 물질의 화학적 지문(동일성) 판별 및 분석	10	'24.1.11.~ '24.2.10.
		LC-MS	변사 혈액 내 케톤체 감정을 통한 알코올 중독 혹은 기아수출 상태 확인 분석	11	'24.12.17.~ '24.12.27.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음주 사건에서 에틸알코올의 섭취로 인한 생체대사물질의 생성 여부 분석	9.9	'24.11.19.~ '24.12.4.
	마약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생체시료 중 마약류 검색	7	'24.11.15.~ '24.12.6.
	독성학과	HPLC, 1290II	식품 성분 분석	8.4	'24.8.16.~ '24.9.6.

주)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및 5개 연구소 중 본원 집행내역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2년 감정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어떠한 비목으로 편성하여야 할지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청하고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회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151].

- 구체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는 2022년 2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검교정 및 정기정검 용역”에 대해 일상감사[152]를 요청하였고[153],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해 2022년도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여 지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음[154].

□ 이러한 감사결과를 2022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나, 2023년도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151) 한편, 2025년 예산에도 감정장비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시설장비유지비로 함께 편성되었음

152) “일상감사”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것을 의미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②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53) 공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669(2022.02.08.)

154) 공문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947(2022.02.10.)

□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2년 감사관실 일상감사 권고 이후 2023년에 작성한 2024년 세출예산요구서의 세부내역은 감정장비의 유지관리, 보수 및 검·교정 용역 목적과 일반수리 목적으로 나누었지만, 시설장비유지비로 통합하여 제출하여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설명임.

□ 2025년 예산에도 감정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용역계약 예산이 모두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향후 행정안전부는 「집행지침」 및 자체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감정장비의 유지보수 예산을 관리용역비 비목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안전예방정책실】

28. 재난안전산업활성화(2631-303)

○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사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일정을 확정함으로써 이월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 일정을 재검토하여 연례적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요조사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결과를 게시하는 것 외에 별도의 환류체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수요조사 결과 공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수요조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산업 기업의 생산·공급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효과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안전산업활성화’ 사업은 기반구축부터 판로개척 지원까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재난 관리를 과학화·효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29억 1,100만원 중 94.7%인 27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산업활성화	2,981	2,981	49	△119	-	2,911	2,758	105	48	3,124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580	580	-	△58	-	522	522	-	-	580
재난안전신기술 평가 위탁	370	370	-	△40	-	330	330	-	-	370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및 선도 재난안전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500	500	-	△21	-	479	479	-	-	500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350	350	-	-	-	350	323	-	27	350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306	306	-	-	-	306	306	-	-	279
재난안전기업 판로개척 지원	560	560	-	-	-	560	503	56	1	730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175	175	49	-	-	224	165	49	10	175
안전기술 개발·발굴	40	40	-	-	-	40	40	-	-	40
온·오프라인 K-Safety 홍보마케팅	100	100	-	-	-	100	90	-	10	100

나. 사업 추진 일정 재검토를 통한 연례적 이월 방지 필요

□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사업은 재난안전산업에서 수요의 상당 규모를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재난안전분야 제품·기술 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공개하는 사업[155]으로, 2024년 예산액 1억 7,500만원 중 1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15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1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2024년에 이루어진 ‘2025년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결과, 조사대상 1,087개 기관 중 96.4%인 1,048개 기관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참여 기관이 응답한 전체 수요 사례 수는 11,632개로 관련 수요 예산은 5조 1,778억원으로 나타남.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결과 주요 통계]

(단위: 개, %)

조사 기관 현황[156]		
조사대상 모집단(A)	조사 참여 기관(B)	조사 참여율(B/A)
1,087	1,048	96.4

(단위: 개, 억원, %)

사업 유형에 따른 수요 사례 수 및 수요 예산					
구분	전체	물품 구입	용역	공사·설계·감리 등	기타
사례 수	11,632 (100)	4,530 (38.9)	3,616 (31.1)	2,173 (18.7)	1,313 (11.3)
예산	51,778 (100)	10,821 (20.9)	5,856 (11.3)	31,272 (60.4)	3,829 (7.4)

※ ( ) : 전체 대비 해당 유형의 비율

(단위: 개, %)

재난 유형에 따른 수요 사례 수					
전체	산업재해·범죄·보안 등	화재·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재난 대응	재난 관련 서비스	풍수해 관련 자연재난
11,632 (100)	2,803 (24.1)	1,931 (16.6)	1,128 (9.7)	1,117 (9.6)	1,105 (9.5)
감염병·화생방·환경오염 관련 사회재난	재난 복구	황사·대설·폭염 등 자연재난	교통사고 관련 사회재난	지진·화산활동 관련 자연재난	
1,105 (9.5)	849 (7.3)	803 (6.9)	570 (4.9)	221 (1.9)	

※ ( ) : 전체 대비 해당 유형의 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156) 조사 참여 기관 1,048개 기관 중 339개 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에 해당

□ 동 사업의 2024년 추진 계획을 보면, 2024년 3~4월에 수요조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조사 결과 공표를 2025년 1월 말로 예정하였으나, 실제 용역 계약은 2024년 5월 21일에 시작하여 2025년 2월 15일에 종료됨.

[2024년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추진 계획]

추진절차	시행주체	일정
① 수요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행정안전부	2024년 3월 ~ 4월 * 실제 용역계약일 : 2024. 5.21.
⇩		
② 수요조사 수행 및 성과물 제출	용역수행기관	2024년 4~12월 * 실제 성과물 제출일 : 2025. 2.15.
⇩		
③ 수요조사 결과 공표	행정안전부	2025년 1월 * 실제 결과 공표일 : 2025. 2.21.

자료 :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은 직전 연도인 2023년 수요조사의 경우에도 결과를 그 다음연도인 2024년 3월에 공개하였는데, 향후 위와 같은 사업 추진 계획이 유지된다면 동 사업은 매년 배정받은 예산을 연내에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수요조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예산 확정이 12월 말까지 진행되어 수요조사에 대한 응답기간 역시 연

말까지 이어지고, 결과 분석까지의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차년도까지의 과업 수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수요조사의 목적이 재난안전산업의 주요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재난안전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계획적인 생산을 유도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조사 결과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발표되어야 재난안전기업들의 그 다음연도 생산·공급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예를 들어, 현행 수요조사는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확정된 최종 예산(12월)을 기준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공개하고 있어, 결과 공개 일정이 다음 연도 초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9월)을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연내에 보완 가능한 사항을 정리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내 수요조사 결과 공표 등 동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일정을 재검토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 공개 확대 및 환류체계 마련 필요

□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를 기준으로 그 다음연도의 공공부문의 재난안전 제품·기술 수요 및 투자관리 계획을 조사하여 재난안전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판로를 모색하고 생산·공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매년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만 공개하고 있는데, 2025년 2월 21일에 2024년에 진행한 ‘2025년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였으나, 2025년 8월 4일 기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게시물의 조회 수는 534회에 불과함.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결과 공개 현황]

순번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	2025년 공공부문 재난안전 제품·기술 수요조사 결과		2025-02-21	534
2	2024년 공공부문 재난안전 제품·기술 수요조사 결과		2024-03-08	446
3	2023년 공공부문 재난안전 제품·기술 수요조사 결과		2023-01-31	696

자료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검색 (검색일 : 2025. 8. 4.)

□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2024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재난안전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수는 76,429개인데, 해당 사업체 수에 대비하여 보면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공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재난안전산업 업종별 사업체 수 (2023년 말 기준)]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 수	구성비
자연재난 예방산업	8,697	11.4
사회재난 예방산업	17,390	22.8
재난 대응 산업	20,383	26.7
재난 복구 산업	21,284	27.8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8,675	11.4
합 계	**76,429**	**100**

자료 : 2024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 또한, 재난안전산업 기업들이 실제로 수요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해당 기업의 판로 개척과 생산·공급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별도의 환류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수요조사 결과의 실효성도 불명확한 실정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수요조사 결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조사 결과 공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재난안전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해당 결과가 판로개척, 생산·공급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수요조사 결과 활용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157].

157)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향후 재난안전산업협회 등 민간협회와 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공개 채널을 다양화하고,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시 '공공

29. 지역안전개선 컨설팅(2632-303)

○ ‘안전취약지역 시설 개선모델 실증사업’은 20억원의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58.1%에 불과한 문제가 있어,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시점의 설정 및 보조사업의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사업은 지역 안전수준 진단기법 및 지역 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개발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도로교통사고예방여건조성,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35억 7,900만원 중 95.5%인 34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3,460**	**3,460**	**119**	**-**	**-**	**3,579**	**3,419 [2,580.3]**	**-**	**160**	**5,758**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1,082	1,082	-	-	-	1,082	931	-	151	1,18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58	58	-	-	-	58	53	-	5	58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	72	72	35	-	-	107	106	-	1	1,19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33	33	-	-	-	33	33	-	-	2,861

부문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 여부,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재난안전산업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함.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취약계층생활안전 전문가 자문	12	12	-	-	-	12	12	-	-	12
안전취약계층 안전정보 구축	150	150	-	-	-	150	147	-	3	400
기업 재해경감활동 인증체계 운영	53	53	-	-	-	53	53	-	-	53
안전시설개선모델 실증사업(경상보조)	2,000	2,000	-	-	-	2,000	2,000 [1,161.3]	-	-	-
이면도로 보행안전 실태조사	-	-	84	-	-	84	84	-	-	-

나.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안전취약지역 시설 개선모델 실증사업’은 지역의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분석으로 도출된 안전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의 여건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임[158].

□ 2024년 편성된 예산은 20억원으로,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 명목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사업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11억 6,13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약 58%에 불과한 실정임.

15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액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교부 시점 (2024년)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계	2,000	2,000	2,000	-	-	2,000	1,161.3	815.7	23	58.1
부산 사하구	400	400	400	9. 4.	-	400	19.5	380.5	-	4.9
대구 달서구	100	100	100	10.16.	-	100	93.6	-	6.4	93.6
강원 고성군	250	250	200	7.23.	-	250	95.6	154.4	-	38.2
			50	10.16.						
충남 보령시	250	250	200	7.23.	-	250	182.3	67.7	-	72.9
			50	10.16.						
전북 남원시	250	250	200	7.23.	-	250	239.0	11.0	-	95.6
			50	10.16.						
전남 해남군	250	250	200	7.23.	-	250	140.2	109.8	-	56.1
			50	10.16.						
경남 김해시	250	250	200	7.23.	-	250	157.7	92.3	-	63.1
			50	10.16.						
제주특별자치도	250	250	200	7.23.	-	250	233.4	-	16.6	93.4
			50	10.16.						

자료 : 행정안전부

□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정하고 있는데[159], 행정안전부는 보조금을

15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액 하반기인 7월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 편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방비를 자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여 집행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시점이 지연되었으나, 2025년 상반기에 전체 8개 지방자치단체 중 7개가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설명함[160].

□ 그러나, 8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집행률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의 사업 선정단계에서 사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가능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며, 실집행률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시기를 결정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60) 강원도 고성군의 실증사업(교통신호등, 불법주정차 알림 시스템)의 경우 2025. 9.30. 사업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

【자연재난실】

30.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2731-304)

○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최초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민간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사업구조 재설계를 통해 민간경상보조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향후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종합적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24억원 중 99.3%인 23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2,400	2,400	-	-	-	2,400	2,384	-	16	2,110
재난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500	500	-	-	-	500	500 [390]	-	-	450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1,600	1,600	-	-	-	1,600	1,600 [1,227]	-	-	1,440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 위탁	100	100	-	-	-	100	100 [100]	-	-	120
재난관리 분야 표준교재 개발	100	100	-	-	-	100	94	-	6	100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	100	100	-	-	-	100	90	-	10	-

나. 반복적 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 구조 개편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지진방재 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등에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사업비의 최소 6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임[161].

[2024년 사업시행주체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보조 기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합 계	1,600	1,600	-	1,600	346	1,600	1,573	1,600	1,227	372	1	76.7
경북대학교	100	100	100	100	53	153	152	100	99	-	1	99.0
군산대학교	185	185	185	185	46	231	169	185	123	62	-	66.5
세종대학교	215	215	215	215	45	260	217	215	172	43	-	80.0
울산과기원	200	200	200	200	42	242	189	200	147	52	1	73.5
강원대학교	220	220	220	220	21	241	227	220	206	14	-	93.6
고려대학교	200	200	200	200	32	232	194	200	162	38	-	81.0
숭실대학교	180	180	180	180	47	227	161	180	114	66	-	63.3
연세대학교	200	200	200	200	60	260	211	200	151	49	-	75.5
부산대학교	100	100	100	100	-	100	53	100	53	47	-	53.0

161)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2024년 16억원의 예산을 전액 피보조기관에 교부하였는데, 9개 피보조기관에서의 평균 실집행률은 76.7%로 3억 7,2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직전연도인 2023년에도 3억 4,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바 있음.

□ 2017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의 경우, 매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교육기관의 학위기간에 대응하는 2년의 기간 동안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162], 최초 사업 구조를 설계할 당시에 교육기관의 2학기(9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9~12월 간 보조사업자가 집행하지 못한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2024년 선정된 보조사업자 지원 흐름도]

대학교	지원기간					
	2024년		2025년		2026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소계		400				
군산대		100				
부산대		100				
세종대		100				
울산과기원		100				

자료 : 행정안전부

162) 교육기관당 연간 2억원, 총 4억원을 지원하는데,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최하위 교육기관에게 2차년도 예산 차등 지급(사업비의 ±50% 범위 이내)

□ 2024년 보조사업자로 신규 선정 또는 재선정된 4개 교육기관의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면, 2024년 9월에 한 학기(9월~2025년 2월) 분에 대응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다음 해인 2025년 1월에 한 학기(2025년 3~8월) 분에 대응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데,

2024년 9월에 지급받은 한 학기(6개월) 분 중 4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2025년 1~2월에 사용하게 되므로, 예산과정의 관점에서 회계연도와 보조사업자의 학위기간이 불일치함에 따라 이월액의 발생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로 보임.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회계연도 전에 보조사업자를 잠정적으로 선정하는 사전 준비와 동시에 회계연도와 보조금 교부기간을 일치시켜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163]

163)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업 집행 체계 정비를 위해 2024년 및 2025년에 선정된 대학에 한해 사업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에서 2년 4개월로 연장하고, 2027년부터 보조사업자 선정 시점을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11월로 앞당겨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2024년 및 2025년 선정된 대학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보조사업자(대학) 간에 2년 단위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를 한시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진행 중인 사업이 회계연도 말에 종료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31.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2731-307)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 수요 미확보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일몰연도인 2024년 실집행률은 0%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 추진방식을 재검토하여 사업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진방재 교육 및 홍보, 지진방재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지진방재 국제교류, 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보,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53억 8,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00만원, 이용액 8억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45억 9,600만원 중 98.3%인 45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5,382	5,382	14	△800	-	4,596	4,517	-	79	5,511
지진방재 교육 및 홍보	1,250	1,250	14	-	-	1,264	1,205	-	59	1,250
지진방재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95	95	-	-	-	95	95	-	-	95
지진방재 국제교류	24	24	-	-	-	24	23	-	1	24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2,717	2,717	-	-	-	1,917	1,898	-	19	1,550
일반연구비	1,250	1,250	-	-	-	1,250	1,239	-	11	1,550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467	1,467	-	△800	-	667	659 [-]	-	8	-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1,296	1,296	-	-	-	1,296	1,296 [958]	-	-	2,592

나. 사업 수요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 ‘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보’ 내역사업 중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164]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164)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건축 시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미 건축된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은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4년 말 기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율은 약 17.5%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약 80.3%) 대비 저조한 실정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대상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사업내용	내진보강공사(설계 포함) 비용의 일부를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기준	국비 10%(상한액: 5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 민간자부담 80%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은 2024년 14억 6,700만원의 예산액 중 8억원이 대설 피해로 인한 재난대책비를 위해 이용되었고, 예산현액 6억 6,700만원 중 6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집행된 6억 5,900만원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단계에서 전액 미집행되어 집행 실적이 없는 실정임.

[2024년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합계	1,467	1,467	658.6	658.6	33.8	692.4	21	658.6	0	658.6	12.8	0
인천	27.7	27.7	27.7	27.7	33.8	61.5	21	27.7	0	27.7	12.8	0
경기	85.2	85.2	85.2	85.2	0	85.2	0	85.2	0	85.2	0	0
충남	38.7	38.7	38.7	38.7	0	38.7	0	38.7	0	38.7	0	0
전북	7	7	7	7	0	7	0	7	0	7	0	0
경북	500	500	500	500	0	500	0	500	0	500	0	0

자료 : 행정안전부

□ 2022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될 당시에도 행정안전부는 경주·포항 지역의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800개소 중 매년 32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지원신청이 없어 사업예산 15억 6,500만원 전액을 전용하였음.

□ 2023년 또한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사업대상을 전국의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약 500만 개소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수요를 확보하지 못하여 2개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고, 예산현액 12억 3,500만원 중 5억 3,400만원이 보조금 교부로 집행되었으며, 7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 건축물 8개를 선정하여 총 6억 5,9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액은 전혀 없는데, 이는 민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총 내진보강설계·공사 비용의 80%에 달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22-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지역	지원 사례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년	-	-	-	-	-	-	-	-
2023년	서울	KT 광화문west 빌딩	500	500	500	-	-	100
	인천	KT부평사옥	34	34	-	34	-	0
2024년	경기	KT의정부지사(본관)	31	31	-	31	-	0
		KT의정부지사(신관)	41	41	-	41	-	0
		수원 윌스기념병원	13	13	-	13	-	0
	인천	마전어린이집	1	1	-	1	-	0
		내리교회	27	27	-	27	-	0
	충남	연암대학교 학생생활관	39	39	-	39	-	0
	전북	김제 근린생활시설	7	7	-	7	-	0
	경북	㈜풍산 안강사업장	500	500	-	500	-	0

자료 : 행정안전부

[2022-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2022년	1,565	1,565	-	△1,565	-	-	-	-	-	-
2023년	1,467	1,467	-	△232	1,235	534 [500]	1,235	534 [500]	-	701
2024년	1,467	1,467	-	△800	667	659 [-]	667	659 [-]	-	8

□ 행정안전부도 사업수요 미확보 사유에 대해 이미 건축된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환경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인 비용 지원 비율(국비: 10%, 지방비: 10%)이 매우 낮고, 장기간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또한, 유효한 사업수요 확보의 실패로 사업 성과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이·전용 또는 불용한 금액이 3년 간(2022~2024년) 32억 9,800만원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임.

[2022-2024년 예산의 이·전용 또는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 분	금액	사 유
2022년	전용	1,565	이태원 참사 피해 복구비 재원 마련
2023년	이용	23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공요금 부족 재원 마련
	불용	701	지원사업 수요 미확보로 불용
2024년	전용	800	대설피해로 인한 재난대책비 필요에 따른 재원 마련
합 계		3,298	

자료 :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의 경우 2024년 일몰 사업에 해당하여, 2025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행정안전부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재추진할 시 사업 계획단계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의 실수요를 예측하고 민간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165].

32.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2635-301)

○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사업은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함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의무를 더 철저히 수행하여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사업은 기상이변 등으로 단시간에 폭우가 나타나는 경우 빗물을 일시 저류하여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715억 4,400만원 중 703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71,544	71,544	-	-	-	71,544	70,352	-	1,192	60,65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71,511	71,511	-	-	-	71,511	70,320 [48,973]	-	1,191	60,622
우수유출저감시설 설계검토회의 운영 등	33	33	-	-	-	33	32	-	1	33

165)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향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대책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내진보강공사 비용 보조율 강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나.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집행부진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사업[166]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2024년 교부액 703억 2,0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액은 306억 7,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42.9%에 불과하여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2024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1	69,510	69,510	69,510	69,510	12,979	82,489	74,465	69,510	63,331	8,023	1	91.1
2022	69,510	69,510	69,510	69,510	8,023	77,533	65,985	69,510	61,729	11,544	4	88.8
2023	78,464	78,464	78,464	78,464	11,544	90,008	64,625	78,464	57,196	25,050	332	72.9
2024	71,511	71,511	70,320	70,320	24,937	95,257	48,973	70,320	30,670	45,786	498	42.9

□ 2024년 실집행률은 전년 대비 30%p 감소하여, 집행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일부 사업대상지에서 설계(안)의 수

166)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정·보완 사유 등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집행부진이 나타났다고 설명함.

□ 2024년 동 사업의 사업대상지 총 24개소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지 간 실집행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사업대상지의 약 30%에 해당하는 7개소가 실집행 실적이 전혀 없어 실집행률이 0%로 집계됨.

[2024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사업대상지(24개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지구명	국비교부액(A)	실집행액(B)	이월액	실집행률(B/A)
서울	관악구	신림재정비	4,500	-	4,500	-
부산	동래구	수민	3,550	-	3,550	-
인천	남동구	간석	4,334	4,202	132	97.0
	남동구	간석(제3저류조)	993	500	493	50.4
	서구	석남1	5,302	2,593	2,709	48.9
	서구	가좌2	401	-	401	-
광주	북구	북구청	5,020	4,724	296	94.1
	북구	신안교	1,000	795	205	79.5
울산	남구	정골	500	500	-	100.0
강원	삼척시	남양2	4,699	2,531	2,168	53.9
전북	전주시	학소	3,000	-	3,000	-
	정읍시	수성	3,000	-	3,000	-
경북	영덕군	강초구	767	767	-	100.0
	김천시	평화	5,000	-	5,000	-
경남	창원시	신촌	2,500	12	2,488	0.5
	밀양시	명서	1,000	890	110	89.0
	사천시	청널	2,800	2,299	501	82.1
	사천시	향촌	2,000	162	1,838	8.1
	김해시	진영	7,000	-	7,000	-
	양산시	소토	500	500	-	100.0
	합천군	초계	3,500	2,324	1,176	66.4
제주	서귀포	은평1	1,754	1,254	500	71.5
	서귀포	신도2리	2,200	1,988	212	90.4
	서귀포	상하모	5,000	4,629	371	92.6
합 계			70,320	30,670	39.650	43.6

※ : 실집행률 0%인 사업대상지

자료 : 행정안전부

□ 실집행 실적이 없는 사업대상지의 집행 부진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 협의, 사전설계의 수정·보완 등 본격적인 설치사업 시행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사유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집행 부진 사유는 당해 연도 사업대상지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발견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임.

[실집행률 0% 사업대상지(7개소) 집행 부진 사유]

지방자치단체		지구명	집행 부진 사유
서울	관악구	신림재정비	재건축조합 주민이 당초 설계된 유출구(물을 배수하는 구조체) 위치를 변경하기를 요구함에 따라 협의가 지연됨
부산	동래구	수민	예기치 못한 오염토 정화 작업 발생으로 지연
인천	서구	가좌2	전문가 사전설계검토회의 결과 설계(안) 전반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여 재검토 의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전북	전주시	학소	사전설계검토회의 결과, 저류조 1개소 추가 설치 필요하여 관로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지연
전북	정읍시	수성	침수 완전 해소를 위하여 펌프시설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10m 이상 굴착하게 되었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로 설계 지연
경북	김천시	평화	전문가 사전설계검토회의 결과에 따른 설계(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결, 설계(안) 수정, 보완에 따른 지연
경남	김해시	진영	사업 효과가 다소 낮아 설계(안) 변경에 따른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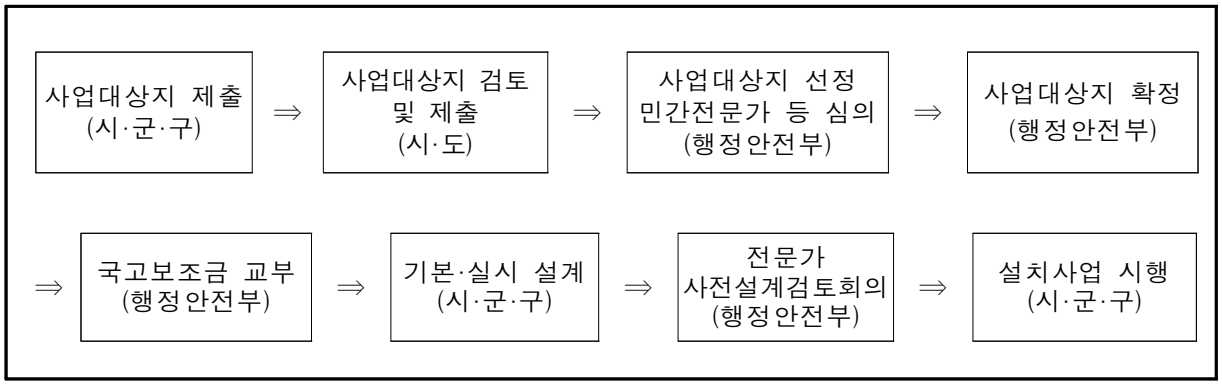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위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전액 연초에 교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에서 규정[167]하는 바와 같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기본·실시 설계 과정 등에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168].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현행 집행 절차]



자료 : 행정안전부

16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68)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수자원·토질 및 구조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사전설계검토회의를 통과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임.

【재난복구지원국】

33. 풍수해보험(2734-302)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4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중 ‘소상공인 가입률’의 성과목표를 25%로 설정한 것에 대비하여 실적은 6.5%에 불과하였는데, 소상공인 가입률 제고와 국가재정부담의 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사업의 집행 환경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장·단기 관점에서 사업목표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다양한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풍수해보험’ 사업은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보험금을 통하여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380억 4,500만원 중 99.9%인 380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예산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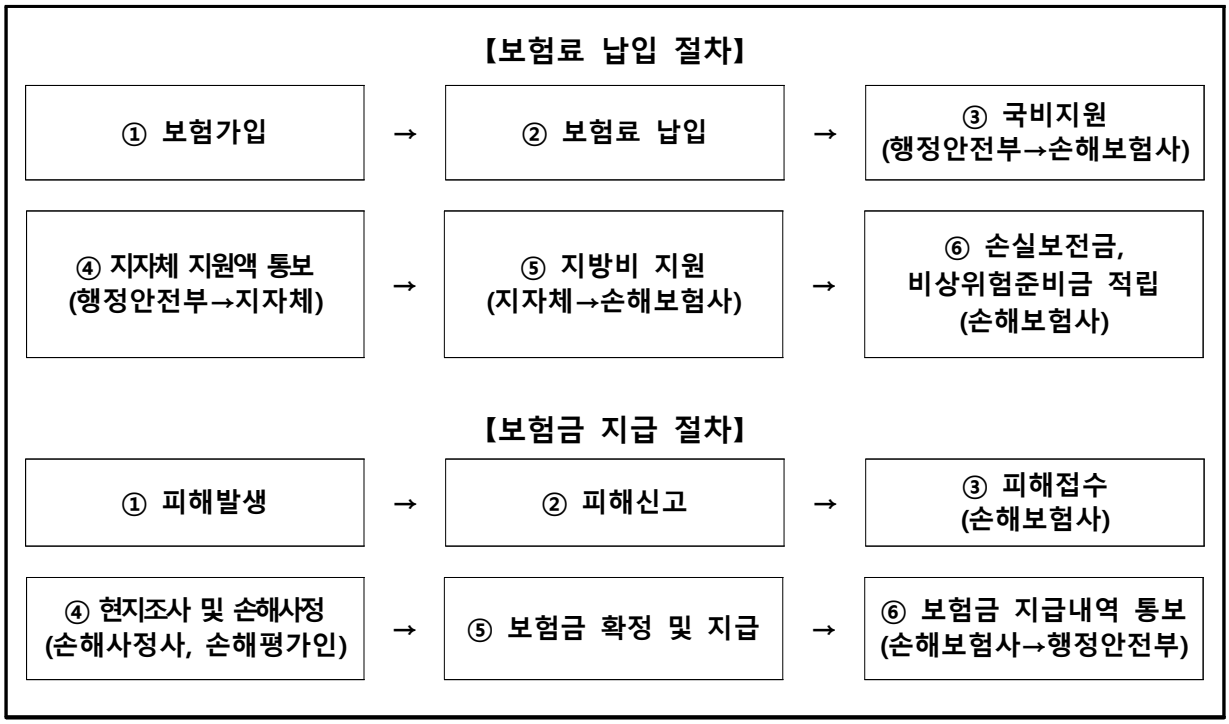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풍수해보험	38,045	38,045	-	-	-	38,045	38,042	-	3	48,994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37,631	37,631	-	-	-	37,631	37,631 [37,631]	-	-	48,580
풍수해보험 등 운영	414	414	-	-	-	414	411	-	3	414

나. 사업 집행 환경을 고려한 정책수단 재검토 필요

□ 풍수해보험 내역사업 중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풍수해·지진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169] 등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보조율 55～100%)으로[170], 2024년 예산 376억 3,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집행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169)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서 시설·집기, 기계, 재고자산도 가입 대상에 포함

170)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동 사업의 2024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중 ‘소상공인 가입률’을 보면, 성과목표는 25%로 설정하였으나, 달성한 실적은 6.5%에 불과하여, 성과 달성도가 26%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2022~2025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주택 가입률 (단위 : %)	목표	20.7	24.7	27.0	28.3	최근 5년간('19~'23) 연평균 가입률 및 가입증가율 반영	(가입가구 수/ 가입대상 수) × 100
	실적	26.9	33.4	33.6			
	달성도	100	100	100			
온실 가입률 (단위 : %)	목표	10.1	13.7	17.0	17.8	최근 5년간('19~'23) 연평균 가입률 및 가입증가율 반영	(가입면적 / 대상면적) × 100
	실적	15.8	18.2	19.6			
	달성도	100	100	100			
소상공인 가입률 (단위 : %)	목표	4.9	18.8	**25.0**	7.5	최근 2년간('22~'23) 연평균 가입률 및 최근 4년간('20~'23) 가입증가율 반영	(가입건수/ 가입대상 수) × 100
	실적	31.9	23.1	**6.5**			
	달성도	100	100	**26**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인지도 (단위 : 점)	목표	69.2	69.2	73.4	73.4	최근 3년간('21~'23) 달성 실적 평균	응답자 점수 합계 / 응답자 수
	실적	73.4	71.6	74.0			
	달성도	100	100	100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3~2024년에 걸쳐 제3자 기부가입 제도 개선[171]과 일반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율 하향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자부담비율이 상향되어 가입 건수가 감소하였고, 2024년 가입모

171) 제3자 기부가입 제도는 기업이 사회환원 취지에서 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료 자부담 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정투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제3자 기부가입 대상을 지하층, 1층 및 전통시장으로 제한, 보험료 자부담 비율(기업의 기부 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

수 재산정[172]으로 가입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실제로 동 사업의 소상공인 보험이 시행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소상공인 보험 가입 실적을 보면, 제3자 기부가입이 없던 2021년에 4.6%에 불과했던 가입률이 기부가입 도입 이후인 2022년에 31.9%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 대비 2024년 기부가입 건수가 약 88,000건 감소하면서 전체 소상공인 가입률이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임.

[2021~2024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입 건수	가입률	가입 건수	가입률	가입 건수	가입률	가입 건수	가입률
소상공인	28,655	4.6%	195,792	31.9%	142,112	23.1%	55,323	6.5%
일반가입	28,655	4.6%	69,430	11.3%	34,549	5.6%	36,540	4.3%
기부가입	-	-	126,362	20.6%	107,563	17.5%	18,783*	2.2%

※ 가입률 : 가입건수 / 가입대상
* 가입대상 : 614,367개소(2021~2023년), 850,348개소(2024년)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일반가입자와 기부가입자에게 동일하게 70%로 적용되었던 보험료 정부지원율이 각각 55%(일반가입자)와 50%(기부가입자)로

172) 소상공인(상가·공장) 가입대상이 약 61만 개소(2021년~2023년)에서 약 85만 개소(2024년)로 증가.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사실·예측 범위 내 인·허가 된 업체 수를 기준으로 가입모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의 누적 시기를 고려하여 3년 주기로 재산정 추진(2021년, 2024년 실시)

하향 조정되었는데, 2024년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년 대비 가입건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증가율이 약 5.8%에 그쳤고, 기부가입자 가입건수는 전년 대비 약 82.5%에 감소함에 따라 목표한 25% 수준의 가입률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변화]

일반가입

~ 2024. 6월

정부지원		자부담 (연1회)
국비	지방비	
70%		30%
56.5%	13.5%	

2024. 7월 ~

정부지원		자부담 (연1회)
국비	지방비	
55%		**45%**
46%	9%	

기부가입

~ 2023. 7월

정부지원		자부담 (기업)
국비	지방비	
70%		30%
56.5%	13.5%	

2023. 8월 ~

정부지원		자부담 (기업)
국비	지방비	
50%		**50%**
35%	15%	

□ 이러한 정부지원율 하향 조정을 통한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확대는 보험료 지원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음.

[2021~2024년 손해보험사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미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698	24,427	43,595	**51,568**

자료 : 행정안전부

□ 특히, 최근 4년 간 풍수해보험의 손해율을 살펴보면, 모두 50%에 미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정책보험 대비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상황으로 국가의 재정분담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173].

[2021~2024년 풍수해보험 손해율 현황]

구분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	농작물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해양수산부)
2021년	47.5	67.6	78.9	54.9
2022년	44.3	58.7	93.0	40.4
2023년	37.2	96.8	94.2	37.1
2024년	46.4	90.1	111.1	215.0

자료 : 행정안전부

□ 다만, 동 사업이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재해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확대·장려하고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료 지원으로 국가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소상공인 가입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173) 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반대로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사의 수익성은 개선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현행 제도 하에서 손해율 50%와 보험료 100억원을 가정하면 보험사의 수익 총액은 50억원이 됨. (단, 순수익은 수익에서 납입된 보험료로 적립하는 손실보전준비금(위험보험료의 9%)과 비상위험준비금(보험료 합계액 x 5% x (35~100% 범위))을 공제한 금액임)

□ 따라서,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면서도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 등의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급격한 정부지원율 하향 조정보다는 보험상품의 개선을 통해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174].

174) 행정안전부는 홍보 다양화를 통한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향후 풍수해보험을 현행 초과손해율 방식에서 손익분담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손해율 구간별로 국가와 보험사 간 적정한 손익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임. 손익분담방식이란 손익을 1차적으로 보험사와 국가가 일정 비율(70%:30%)로 분담하고, 1차적으로 보험사에 배분된 손익에 대해서도 손해율 구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보험사와 국가가 다시 손익을 2차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의미함.

【비상대비정책국】

34.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내역사업 중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매년 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 지연 요소들을 파악하고, 집행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사업은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대피시설 및 필요 장비 확충,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07억 9,400만원 중 40억 이용을 반영한 예산현액 67억 8,400만원 중 67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10,794	-	-		-	6,794	6,728 [6,274]	-	66	6,736
민방위교육훈련	2,211	-	-	±6	-	2,211	2,183 (1,896)	-	28	2,050
민방위시설장비확충	6,614	-	-	△4,000	-	2,614	2,614 (2,458)	-	-	3,834
민방위경보시설운영	1,969	-	-	-	-	1,969	1,931 (1,920)	-	38	852

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집행 지연 요소 최소화 노력 필요

□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내역사업[175] 중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국지도발 등 적의 침공에 대비하여 지하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대피시설 신규 구축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2024년 예산 6억 4,000만원이 전액 교부됨.

□ 2024년의 경우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44.3% 수준이며, 이러한 실집행 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2020~2024년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대상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0	6개소 (인천3, 경기2, 강원1)	2,240	2,969	5,209	3,848	962	399	73.9
2021	5개소 (인천3, 경기2)	1,600	962	2,562	1,954	460	148	76.3
2022	3개소 (인천3)	960	460	1,420	493	925	2	34.7
2023	3개소 (인천1, 경기1, 강원1)	960	925	1,885	1,369	496	20	72.6
2024	2개소 (인천1, 경기1)	640	496	1,136	504	619	13	44.3

자료: 행정안전부

175)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내역사업(5개 사업): 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② 비상급수시설 확충, ③ 화생방방독면 보급, ④화생방성능검사, ⑤민방위 경보사각지역 해소

□ 2024년의 예산 집행 현황을 사업대상지역별로 살펴보면, 2개 사업대상지역에 3억 2,000만원씩 총 6억 4,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집행액은 인천지역에서의 2,000만원이 전부임.

[2024년 사업대상지역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대상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이월사유
인천	320	20	300	-	6.25	**① 사유지 매입절차 진행에 따른 시간소요(3개월)** - 주민의견 청취(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2월), 사업부지 측량·감정평가(3월), 토지보상 협의·매입(4월) **②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내용 보완(실시설계 소요기간 : 6개월)** - 2017년 이후 8년간 6.4억원으로 구축단가는 동결되었으나, 노무비·재료비 물가상승으로 실시설계에서 산출된 공사비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계획 변경(면적재산정 130㎡→119㎡) 및 실시설계 내용보완으로 실시설계 지연
경기	320	0	320	-	0	**① 사업대상지 변경 2회에 따른 지연(옥계 3리→백의1리→고문리)** - 마을 주민 동의 미확보에 따라 대체 사업대상지 발굴 및 주민 설명에 상당 기간 소요, 최종 사업대상지 2024년 10월에 확정 **② 실시설계 연장** - BF예비인증 심사 기간 추가(4개월)로 실시설계 연장
울릉	4,000	△4,000	-	-	-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25. 1.17.)으로 국고보조금 특례 지원비율(80%)을 적용받고자 2024년 사업을 포기하고 불용 예정액을 재난대책비로 이용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 사업이 건축사업으로 단년도에 부지를 매입(2~3개월)하고, 실시설계 계약 입찰 및 설계(3~4개월), BF인증[176] 절차(1~2개월), 건축공사 입찰 및 시공(5~6개월), 준공검사(1개월) 등 물리적으로 1년 내에 완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사업대상지역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약 3개월)이 길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 다만,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집행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기간과 BF인증 절차 등 행정적 절차의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4개소)의 경우 사전에 마을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완료된 마을을 선정하고, 주기적인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재 모든 사업개소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으로, 2024년 대비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2025년 7월 말 기준 사업대상지역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176) BF(Barrier Free) 인증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2024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평가하여 인증

바,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집행 절차를 개선하거나 재설계하는 등 집행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5년 7월 말 기준 대피시설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국비	집행액	집행률	집행내역
인천 (2개소)	930	21	2.2	실시설계 선급금 BF 예비인증
경기 (1개소)	465	21	4.4	실시설계 선급금 실시설계 준공금
강원 (1개소)	465	52	11.1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계 (4개소)	1,860	94	5.0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35. 재난안전교육원운영(2633-300)

○ ‘재난안전교육원운영’ 사업은 매년 유사한 사유로 집행 단계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한 비목별 예산 변동이 2021년 2,500만원, 2022년 2,200만원, 2023년 1억 7,200만원, 2024년 1억 6,000만원으로 반복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전 사업연도의 실제 소요 및 집행실적을 비목별로 검토하여 비목별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세목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안전교육원운영’ 사업은 재난안전 및 민방위·비상대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관련 직무능력과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33억 400만원 중 31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교육원운영	3,304	3,304	-	±160	-	3,304	3,141	-	162	3,354

나. 반복적인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한 집행방식 개선 필요

□ ‘재난안전교육원운영’ 사업은 국외업무여비 마련,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조정 등을 위해 2024년 1억 6,000만원을 전용 또는 세목조정하였음.

[2024년 재난안전교육원운영 전용 및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명 (목-세목코드)		금액	조정 후 집행내역		조정 사유
	조정 전	조정 후		집행액	불용액	
전용 ('24.3.26.)	일반수용비 (210-01)	국외업무여비 (220-02)	14	14	0	국외연수과정 추진에 따른 전용
세목조정 ('24.5.14.)	관리용역비 (210-1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6	167	2	시설관리 수요증가에 따른 조정
세목조정 ('24.7.15.)	관리용역비 (210-1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0			노후화된 시설 정비에 따른 조정
세목조정 ('24.11.11.)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0	409	6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조정
합 계			160	590	8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의 경우, 이전 3년(2021~2023년) 간 전용 및 세목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과 유사하게 국외연수과정 추진, 공공요금 인상, 시설장비 유지비 확보 등의 반복적인 사유로 2021년 2,100만원, 2022년 2,400만원, 2023년 1억 7,200만원의 전용 및 세목조정이 있었음.

[2021~2023년 재난안전교육원운영 전용 및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명 (목-세목코드)		금액	조정 후 집행내역		조정 사유
	조정 전	조정 후		집행액	불용액	
세목조정 ('21.11.26.)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8	373	0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조정
세목조정 ('21.11.26.)	일반수용비 (210-0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	159	2	시설관리 수요증가에 따른 조정
세목조정 ('21.12.22.)	일반수용비 (210-0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			코로19 생활치료센터 확장에 따른 부족분 조정
세목조정 ('22.11.15.)	관리용역비 (210-1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2	373	0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조정
세목조정 ('22.12.27.)	관리용역비 (210-15)	일반수용비 (210-01)	2	1,039	1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분 조정
전용 ('23.3.3.)	일반수용비 (210-01)	국외업무여비 (220-02)	12	8	0	국외연수과정 추진에 따른 전용
세목조정 ('23.6.14.)	관리용역비 (210-1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0	176	0	시설관리 수요증가에 따른 조정
세목조정 ('23.11.13.)	관리용역비 (210-1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7		0	노후된 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따른 조정
세목조정 ('23.12.20.)	일반수용비 (210-0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		0	안전훈련센터 전기시설 보수공사 등에 따른 조정
세목조정 ('23.11.14.)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3	416	2	코로나19 후 교육생 합숙 인원 증가 및 공공용금 인상에 따른 조정
세목조정 ('23.12.20.)	국외업무여비 (220-02)	국내여비 (220-01)	3	21	0	종합대책에 따른 고위관리자 과정 확대 등 대면교육 증가에 따른 조정
전용 ('23.12.19.)	일반수용비 (210-01)	국내여비 (220-01)	1		0	직원 출장 소요 증가에 따른 조정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2021~2024년 중 전용 및 세목조정 총 16건 중 조정 전 세목이 일반수용비(210-01)인 경우가 9건으로, 이 중에서 2건 2023년 및 2024년에 해당 비목에 배정된 예산이 없었던 국외업무여비(220-02)로 조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3~2024년 국외업무여비(220-01)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전용내역	변경 후 예산현액	집행 내역
2023년	0	+12	12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과정 추진
2024년	0	+14	14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과정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국외업무여비가 필요하여 본예산 편성에 요구하였으나, 해당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전용을 통해 국외업무여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예산은 편성목적, 내용 및 비목별 구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의 예산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다한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집행은 지양하여야 함.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비목별 실수요를 면밀하게 추계하여 특정 비목이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집행 단계에서 부적절한 예산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과거사업무관련지원단】

36.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이후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로 인해 예산 이월 및 사업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연 없이 잔여 과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을 위한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유족 숙원사업 추진, 4·3전국민 바로알리기,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61억 2,100만원 중 160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16,121	16,121	-	-	-	16,121	16,009	-	112	11,792

자료: 행정안전부

나.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의 내역사업인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부지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4·3트라우마치유센터 및 국제평화문화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신규등록되어 추진되고 있음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5년)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 일원(제주4·3평화공원) ○ 사업내용 : 4·3트라우마치유센터 및 국제평화문화센터 구축 ○ 총사업비 : 291억원(국비 254억원, 지방비 37억원)

주: 2025년 6월말 현재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은 당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2024년 100억원, 2025년 119억 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2024년 예산편성 당시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총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29,500	3,700	1,100	2,740	10,000	11,960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2024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이 65억 4,000만원만 반영되어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었는바,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3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4년 정부안 및 국회확정 예산]

(단위:백만원)

사업명	2024년		증감(B-A)
	정부안(A)	국회확정(B)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6,540	10,000	3,460

자료: 행정안전부

□ 이후 동 사업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4년도 본예산 100억원에 2023년도 이월금액 26억 2,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26억 2,500만원 중 60억 9,400만원만 집행되고, 65억 3,1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전년도 이월금액을 제외할 경우 예산현액 100억원 중 34억 6,9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실집행률은 34.7%에 그치고 있음.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백만원, %)

부처(행정안전부)		사업시행주체(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10,000	10,000	10,000	2,625	12,625	6,094	10,000	3,469	6,531	-	34.7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와 같은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및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이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실제로 2024년 기본계획 수립(2021년) 대비 물가상승 및 규모 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소요(2,673백만원)를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조정되었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도 연장되었음.

[총사업비 변경내역]

구분	최초(2022년)	협의조정(2024.11월)	자율조정(2025.1~5월)
소요 예산	29,500백만원 (국비 25,800, 지방비 3,700)	32,173백만원(+2,673) (국비 28,473, 지방비 3,700)	29,136백만원(△3,037) (국비 25,436, 지방비 3,700)
규모	연면적 5,500㎡, 연장 L=80m, 폭 B=5m, 높이 H=3.5m	연면적 5,120㎡	
	4·3국제평화문화센터 4,000㎡, 4·3트라우마치유센터 1,500㎡, 빛의 터널 960㎡	4·3국제평화문화센터 3,728㎡, 4·3트라우마치유센터 1,392㎡	
사업 기간	2022.~2025.	2022.~2026.(+1년)	
변경 사유	- (협의조정) 기본계획 수립(2021년) 대비 물가상승분 반영 및 규모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2,673백만원),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 (자율조정) 건축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비 등 낙찰차액 감액(△3,037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증액은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특별히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의 국회 증액분 이상의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되었고, 총 사업기간도 연장되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이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177] 잔여 과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77)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경제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 12월 계약 체결 후 공사에 착수하여 2026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37. 제주4·3 피해보상(보상금 등)(2431-306)

○ 제주4·3사건 피해보상금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및 타 사업으로의 과다한 이·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적정예산 편성 및 보상금 지급 업무 처리 활성화를 통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제주4·3 피해보상(보상금 등)'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명예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액 2,261억 9,800만원 중 288억원을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였고, 예산현액 1,973억 9,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주4·3 피해보상 (보상금 등)	226,198	226,198	-	△28,800	-	197,398	197,398	-	-	241,877

자료: 행정안전부

나. 보상금 지급속도 제고 및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연례적인 집행부진 방지 필요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제16조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178] 이에 근거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보상금 지

17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3(지연 이자) ①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위원회가 결정한 순서로 접수함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시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

급신청 접수 및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주4·3사건 보상금 사업 개요]

○ 보상금 지급 대상자: 제주4·3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 14,935명 ○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2022.6.1.~2026.12.31.): 6차로 나누어 신청 - 신청접수: 10,326명(보상금 신청대상 14,935명의 69.1%, 2024.12.31.기준) ○ 보상금 지급 결정: 6,037명 / 5,220억원(2024.12.31.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470억원, 100억원, 288억원의 보상금 예산이 미집행되어 타 사업으로 이·전용되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2~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22년	181,010	-	△47,000	134,010	62,560	-	71,450
	○ (이용) 제11호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부족에 따른 이용 ○ (불용) 4·3사건법 시행('22.4.12.), 신청 및 사실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심의기간이 부족하여 불용액 발생						
2023년	193,554	-	△10,000	183,554	183,548	-	6
	○ (이용) 6.27~7.27 호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부족에 따른 이용						
2024년	226,198	-	△28,800	197,398	197,398	-	-
	○ (이용) 7.8~7.19, 9.19~9.21 호우피해복구비 부족에 따른 이용						

자료: 행정안전부

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2022년의 경우 현행법 개정(2022.4.12.)에 따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신청 접수가 늦어져 집행시간이 부족하였고,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호우피해 복구비 부족에 따라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으로 미집행 금액을 이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100억원 이상의 금액이 3년 연속으로 이·전용된 것은 예산요구 시 위원회의 업무처리 속도 등을 고려한 예산집행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상금 예산산출내역을 보면 보상금 최대 지급액인 9,000만원을 기준으로 연내 지급 대상자의 수를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에는 지급계획 2,150명 대비 2,039명, 2024년에는 지급계획 2,496명 대비 2,178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실제 지급 인원이 계획인원보다 적어 예산 미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2023~2024년도 보상금 예산산출내역 및 지급인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비고
	보상금 예산산출내역		집행내역		
	금액	산출근거	지급인원	집행액	
2023년	193,554	보상금 90백만원 × 2,150명 + 지연이자 90백만원 × 0.012 × 1/12 × 600명	2,039명	183,548	
2024년	226,198	보상금 90백만원 × 2,496명 + 지연이자 90백만원 × 0.012 × 7/12 × 2,500명	2,178명	197,398	

주: 0.012는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시중은행이자율을, 1/12, 7/12는 지급 지연이 예상되는 개월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행정안전부는 보상금 지급속도 신속성 제고를 위한 지급심의 인력을 보강하고, 지급결정 후 보상금 청구권자에게 우편발송을 실시(2024년 4회)하여 신속한 청구를 독려하는 등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 편성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 문제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 행정안전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보상금 지급 업무처리 속도를 고려하여 연내 지급인원 수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179] 연례적인 예산의 불용 및 이·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179)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2024.7.31. 시행)으로 보상금 지급기간이 연장된 점과 기존 집행실적을 고려한 연내 지급 가능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중기예산계획(2024년~2028년)을 수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1,930억원)을 요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3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2434-300)

○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부족이 예상되어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재차 타 사업으로 공사비 예산을 전용하였는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면밀한 추계를 통해 불필요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34억 6,600만원 중 233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16,787	16,787	6,880	△201	-	23,466	23,324	-	142	8,033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7,685	7,685	-	-	-	7,685	7,685	-	-	8,033
기념관 기반 조성	7,445	7,445	4,632	△159	-	11,918	11,863	-	55	-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	1,657	1,657	2,248	△42	-	3,863	3,776	-	87	-

자료: 행정안전부

나. 면밀한 추계를 통한 불필요한 이·전용 방지 필요

□ 동 사업 중 기념관 기반 조성 및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 내역사업은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공사비(420-03목)로 총 86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별도 추진 예정이던 전시공사를 기존 건립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공사현장 감독을 위한 감리비용의 추가 소요 등이 발생하여 2024년 상반기에 공사비 4억 4,300만원을 감리비(420-04목)로, 6,400만원을 시설부대비(420-05목)로 각각 세목조정하였음.

□ 이후 공사비 물가상승 및 관급자재 단가상승으로 공사비 부족이 예상되어 2024년 8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사업 내 상용임금(110-03목),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보상금) 사업 내 기타보전금(310-04목),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사업 내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에서 총 5억 3,100만원을 동 사업의 공사비로 전용하였으나, 2024년 12월 다시 동 사업의 공사비 집행잔액 8억원을 재난대책비 사업으로 이용하였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내 공사비 이·전용등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이·전용등		공사비	이·전용등 사유
	증	감		
본예산	-	-	8,628	-
세목조정(1.16.)	-	△443	8,185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
세목조정(3.7.)	-	△64	8,12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부대비 부족
전용(8.8.)	531	-	8,652	물가상승 및 관급자재 단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
이용(12.27.)	-	△800	7,852	11.26.~28. 대설, 강풍, 풍랑 피해 복구비 재원 확보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그런데, 2024년 동 사업에서 집행된 공사비 예산은 총 78억 800만원이므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으로 세목조정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 불필요한 공사비의 이·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공사 준공 이후 산재·고용·건강·연금 등 4대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내역서에 반영된 간접비용을 실제 발생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재난대책비로 이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원칙의 예외로서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접비용을 사전에 예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물론 준공 이후 실비정산 금액은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야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예산을 면밀히 예측하여 불필요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9.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2437-300)

○ 위원회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위원회의 접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54억 2,600만원 중 49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5,365	5,365	197	△136	-	5,426	4,901	241	284	4,804

자료: 행정안전부

나. 위원회 접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 및 부적절한 국외출장 자제 필요

□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여수·순천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22년 1월 출범하였음.

□ 그런데, 당초 2024년 10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던 위원회의 처리율이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11.9%(신고건수 7,465건 중 886건 처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2024년 6월말 기준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및 처리 현황]

<신고> <실무위원회> <여순사건위원회>

합계	→	희생자 신고		진상규명 (조사중)	→	합계	희생자 결정			취하 등
		조사완료	조사중				소계	인용	기각	
7,465		2,741	4,533	191		886	708	696	12	178

주: 2024년 6월말 현재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6박 7일간 위원회 지원단장을 포함한 5인이 여순사건 추모공간 조성방안 모

색 국외 사례조사를 위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을 방문하였음.

□ 출장단은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의 뚜얼슬랭 대학살박물관, 청아익 대량학살센터, 베트남의 호아로 수용소, 중국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여순사건 추모공간 조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해당 국외출장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 또한 캄보디아 뚜얼슬랭 대학살박물관, 청아익 대량학살센터, 베트남의 호아로 수용소 등은 다크투어리즘[180]의 대표적 관광지로 국내에서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직접 방문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2023년에도 위령사업 관련 선진지역 방문을 위해 위원회 지원단장을 포함한 출장팀이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보스니아·크로아티아를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지적이 2024년 국정감사 시 제기된 바 있음.[181]

□ 한편, 2025년 1월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여순사건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위원회의 처리율은 36.5%(신고건수

180) 전쟁과 학살 등으로 인한 죽음과 재난·재해 등과 관련한 고통이 깃든 장소를 여행하며 과거의 참담했던 역사와 사건·사고들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이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 박경옥, “부산관광의 새로운 기획,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BDI 정책포커스 제355호, 2019. p.2.

181)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7.)

7,908건 중 2,887건 처리)를 기록하고 있음.

[2025년 6월말 기준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및 처리 현황]

▸ 제13차 위원회까지 신고 7,908건 중 2,887건(36.5%) 처리

<신고> → <道 실무위원회> → <여순사건위원회>

합계	희생자·유족신고			진상규명 (조사중)
	조사 완료	조사중	추가 접수	
7,908*	5,019	2,446	443	-

합계	결정					취하 등 종결처리
	소계	인정**		기각		
		희생자	유족	희생자	유족	
2,887	2,414	2,308	14	89	3	473

* (1·2차) 7,465건+(추가) 443건(2025.6.30.현재)

** 희생자 인정 2,308건+유족 추가 인정 14건

▸ (처리율) 4.6%(2023.9.) → 11.8%(2024.7.) → 27.9%(2024.12.) → 36.5%(2025.6.)

▸ (인정결정) 11,029명(희생자 2,308명*, 유족 8,721명)

* 사망 1,716명, 행불 547명, 수형자 37명, 후유장애 8명

자료: 여순사건위원회

□ 따라서 위원회는 남은 조사기간 내 접수된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진상규명 조사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위령사업·추모공간 등을 명목으로 한 외유성 국외출장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5년 6월말 기준 실무위원회 조사완료 건수(5,019건) 대비 위원회 처리건수(2,887건)가 적은데, 이는 위원회 실무조사인력 부

○용혜인 위원 … 여순사건위원회가 사건 처리는 안 하고 뭐 하느라 바쁜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증인, 작년 말에 7박 9일로 해외 출장 다녀오셨더라고요. 심사·조사팀이 다녀온 건데 출장지가 프랑스·보스니아·크로아티아예요. 프랑스 말할 것도 없고 크로아티아는 신혼여행으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스니아는 동유럽의 에메랄드라고 불리지요. 사건 처리율이 9.5%인데 심사·조사팀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이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심지어 이 추모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유사한 명목으로 올해도 6박 7일 출장 또 다녀오셨어요. 사건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불과 9.5% 처리됐는데 위령사업 운운하면서 2년 연속 해외 출장을 간다?

족 및 검증 강화 등으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음.

[2025년 6월말 기준 신고·실무위원회 조사완료 및 위원회 처리 건수]

(2025.6.30.기준)

구분	신고	실무위원회 조사완료	위원회 처리
건수	7,908	5,019	2,887

자료: 여순사건위원회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위원회 전문조사인력 2인을 충원하여 현재 5인이 관련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1인당 월 30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음.[182)]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조사관 증원을 위한 예산요구 및 전라남도청 실무인력 파견 협의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82) 제주4·3위원회 조사관은 총 7인으로, 1인당 월 7건을 처리하고 있음.